

월간
재정포럼 4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4월호 제142호

현안분석 ·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김 진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명호

정책토론포트 ·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정책흐름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 오연천
현안분석	06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 김진수 27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 김 진 52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 박명호
정책토론포트	72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99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정책흐름	108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114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발간 120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125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131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136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재정통계	140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슈 & 포커스	153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외
신간안내	158 노벨 경제학 강의 외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혁이 새 정부 주요 정책의제로서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역대정권치고 집권 초기에 공공부문 개혁을 부르짖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잉여인력을 수용하는데 공기업을 천혜(天惠)의 공공시장으로 간주해 왔고, 행정 각 부처는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공기업의 인사와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고유의 관료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기업 임직원들은 정치적 선임과 행정부의 관여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존립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권·주무부처·공기업 임직원이 소위 철의 삼각구도(Iron Triangle)를 형성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표류케 해왔기 때문에 공기업을 둘러싼 자기이익 추구적 연립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정권에서만은 분명 명확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시장 중시의 효율적 정부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정책기조가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추진하는 데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은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공공부문 개혁은 새 정부의 선택이 아니고 정권 존립의 도덕적 책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정부부처 통폐합이 단행되었고 전 부처가 시장의 자율적 기반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를 다짐하고 나섰다. 따라서 두뇌기능에 해당하는 정부부처의 기능 조정에 발맞추어 정부부처의 정책목표를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각종 공공서비스를 대리 전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개혁구도가 초입기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 출범 초기에 기본 골격이 가시화되지 않고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년 미만 남은 지방선거, 4년 후의 총선

등 일련의 정치일정은 공공부문 개혁의 동력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정치적 장애요인인 데다 정권 중반에 들어서면서 행정부는 물론 대통령마저도 스스로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유용성(?)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나머지 존속의 방어논리에 순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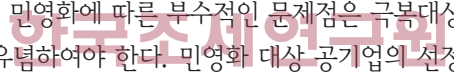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민영화와 자율경영체제 확립

공기업(공공기관 포함) 개혁의 요체는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민영화와 인사 쇄신에 초점을 맞춘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에 있다. 우선, 시장기반을 가지면서 독자적 수익모델을 가진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기관의 존립 필요성이 소멸된 공기업은 폐지 또는 청산하고, 민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공기업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여야 한다. 민영화가 만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점이 현 체제의 유지를 능가한다면 민영화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은 극복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선정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진행하되, 일단 선정된 후에는 즉각 입법화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POSCO,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KT, SKT 등이 모두 민영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은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를 가름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GDP의 10%를 차지하는 공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민영화 성공신화가 창출될수록 국민경제의 활력을 복원하는 과업은 속도를 받게 된다는 점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공기업의 경우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룡조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사실상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목표 구현에 기여한다는 실타래 같은 주무부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관료이익의 극대화에 효자노릇을 해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이나 구성원들의 준(準)조세에 의존하여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대적 정비가 절실하다. 만일 주인이 있다면 “이러한 공적 조직의 유지를 방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는 조직을 제외하고는 정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머지 존재하게 될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

.....
 민영화가 만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점이 현 체제의 유지를 능가한다면 민영화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은 극복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공신이나 가신
 들을 옥석 구분 없이 공기
 업에 배치한다면, 정치
 권은 물론 관료제가 이에
 편승하여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면서 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

.....

해서는 철저한 인사 쇄신과 엄정한 평가가 보장되는 자율경영체계가 확립되
 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의 CEO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경우 「적재적소 배치」, 「최고의 경쟁력 보
 유 인사 영입」등을 강조하곤 했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집권층이 그러한 원
 칙을 먼저 어기는 사례를 수없이 목도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
 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신이나 가신들을 옥석 구분
 없이 공기업에 배치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관료제가 이에 편승하여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면서 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 최적
 의 인사를 선임하고, 완벽한 자율경영의 토대를 보장해 주면서 일정기간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CEO는 연임은 물론 삼연임(三連任)도
 가능하다는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 케네디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
 낸 맥나마라(R. S. McNamara)가 세계은행 총재직을 13년간 수행했던 사례나
 수년전까지 10년 이상을 정권과 무관하게 미국 연방은행 총재를 지낸 그린스
 편의 신화를 우리도 가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 미국 PBGC(연금자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김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inskim@kipf.re.kr)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했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도입된 제도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I. 서론

한국조세연구원

법정 기업복지제도로 1961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된 것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경험 및 세계화의 진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연수가 짧아지고 중간정산 등이 확산되면서 퇴직금의 역할이 퇴색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 후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근로자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했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퇴직금제도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이라는 퇴직금 고유의 기능이 취약해서 예기치 않게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도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둘째,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전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퇴직금은 잦은 직장이동이나 중간정산 등에 의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당장 실생활에서 필요한 용도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퇴직 이후 노후소득 보전 수단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퇴직금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고 전 사업장은 퇴직급여(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전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

그러나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제도 원래의 도입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 100%를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반면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는 퇴직급여추계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추계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사용자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제도 즉,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²⁾,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연금지급 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PBGC)와 같은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PBGC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그리고 재정위기를 살펴보고 제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PBGC의 개편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PBGC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문제

1.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는 배경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설계 목적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³⁾.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의 부담금⁴⁾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의 100%가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수급권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전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노동부(2005) p. 30.
 2) 류건식·이태열(2004), 노동부(2006), 이봉주(2007) 등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됨.
 3) 이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음.
 4) 사용자는 최소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설계
목적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⁵⁾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확정급여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추계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며⁶⁾, 이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의 최대 40%⁷⁾를 사내에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사외적립금을 제외한 사내적립금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추계액의 60% 적립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이 도산하여 연금급여액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권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투자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저조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험자산 투자 등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은 필요하다.

〈표 1〉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요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급여부담대상액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사용자 부담금의 100%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 복잡	-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자료: 금융감독원

5)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 9조

7) 2006년은 40%, 2007년과 2008년은 35%, 2009년 이후는 30%만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손급산입 허용됨.



2.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방안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방안을 논하기 전에 수급권 보장의 의미를 우선 살펴 보면,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정부)이 수탁자인 사용자를 감시하고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란 크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 정보로 인해 초래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과 규제유예, 감시능력 부족, 제도의 미비 등으로 수급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최근 이러한 ‘수급권 보장’의 개념하에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방안으로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때 근로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Bodie and Merton(1993)은 기업 파산에 대비하는 추가적인 보장을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보상하고 동시에 시장실패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면 만일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높고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기업의 연금지급이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 중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미래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기업주에 비해 기업의 파산 확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대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기업의 파산이 촉발되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⁹⁾. 근로자는 기업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연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봉주(2007)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확정기여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설치 및 운영상 엄격한 요건과 감독체계를 마련하여도 연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지급보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하였다.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때 근로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8) 이민환(2005),
9) 노동부(2006).



PBG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국영 연금보험기관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연금지급 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PBGC)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III.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재정위기

1. PBGC의 설립 배경

미국은 1800년대에 철도산업에 의해 사적연금제도(private-sector pension plan)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시행된 다양한 연금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실패하였다. 특히 1963년에 자동차회사인 스투드베이크사(Studebaker Company)의 파산으로 11,000여명의 근로자가 연금제도 청산에 영향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¹⁰⁾하게 되자, 미 정부는 연방법(federal law)에서 연금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을 제정하였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plans)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최소 출연요건을 규정하고, 이들 기업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지급보증 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동법에 의해 연금 지급보증 업무수행을 위해 1974년 9월 노동부 산하에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2. PBGC의 기능

PBG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국영 연금보험기관이다. PBGC는 확정기여형(DC형)은 보증하지 않고 확정급여형(DB형)에 대해서만 지급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확정기여형은 개인별로 퇴직연금이 적립·운영되고 있어 기업 파산으로 인한 지급 불능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연금을 집단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고 기업주가

10)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금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으며,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근로자는 연금급여의 15%를 수령하였고, 40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http://www.erisalawfirm.com>.



연금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 파산으로 근로자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BGC의 연금 지급보증 방식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Single-employers program: SEP)과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Multi-employers program: MEP)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SEP)은 단일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는 가장 보편적인 퇴직연금 형태로, 기업이 스스로 종업원에 대한 연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PBGC가 퇴직연금 급여를 대지급하게 된다.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MEP)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노조와의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이 파산할 경우 산업 내 나머지 기업들이 연대해서 파산 기업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위기 직면 가능성은 물론 PBGC의 연금지급 보증 수준도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보다 낮다.

PBGC의 연금 지급보증 방식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SEP)과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MEP)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PBGC는 퇴직연금 지급보증시 수행해야 할 3가지 주요 임무(mission)가 있다¹¹⁾. 첫째, 자발적 사적연금플랜의 운영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둘째, 기업 파산시 퇴직연금제도가 재직 및 퇴직근로자에게 당초 약속한 연금급여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PBGC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조세연구원

3. PBGC의 운영현황

가. 가입자 및 연금프로그램 현황

PBGC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말 기준으로 총 31,176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약 4,411만명의 근로자 및 퇴직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중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에 가입된 연금플랜의 수는 29,605개, 가입자는 약 3,423만명이고,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에 가입한 연금플랜 수는 1,571개이고 가입자는 약 989만명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가입연금플랜 수와 가입자에 있어서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이 복수 기업주 연금플랜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1) ERISA에 규정



PBGC 가입 연금플랜 수와 가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입 연금플랜 수는 1990년대에 급격히 감소한 후 정체상태인 데 비해, 가입자 수는 1990년대에 꾸준히 증가한 후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PBGC 보험가입 연금플랜 및 가입자 추이

(단위: 개,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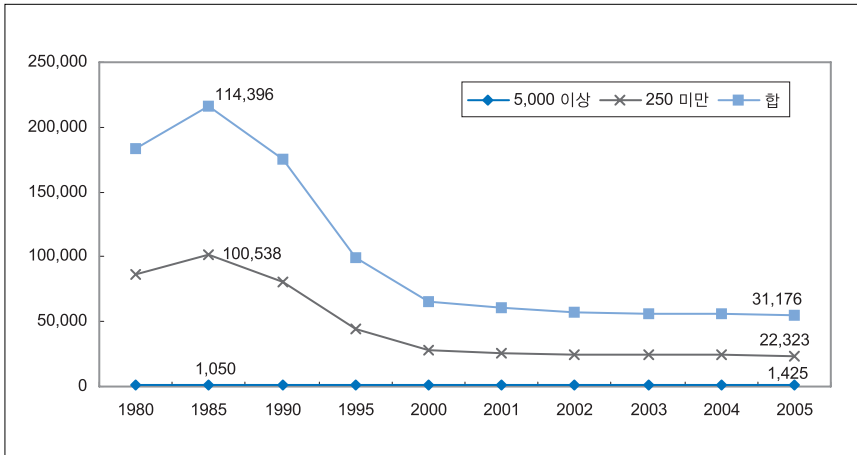
	보험가입 연금플랜			가입자		
	단일 기업주 연금 프로그램	복수 기업주 연금 프로그램	합 계	단일 기업주 연금 프로그램	복수 기업주 연금 프로그램	합 계
1980	95,439	2,244	97,683	27,518	7,997	35,515
1985	112,208	2,188	114,396	29,809	8,209	38,018
1990	91,899	1,983	93,882	31,633	8,534	40,167
1995	53,589	1,879	55,468	32,634	8,632	41,266
2000	35,373	1,744	37,117	34,108	9,132	43,240
2001	32,954	1,707	34,661	34,342	9,423	43,765
2002	31,229	1,671	32,900	34,248	9,630	43,878
2003	30,611	1,612	32,223	34,407	9,699	44,106
2004	30,148	1,586	31,734	34,523	9,829	44,352
2005	29,605	1,571	31,176	34,232	9,887	44,109
2006 ¹⁾	28,784	1,544	30,328	34,042	9,916	43,958

주: 1) 2006년은 추정치임
 자료: PBGC(2007a), p. 79, p. 80, p. 110.

PBGC 가입 연금플랜 수와 가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입 연금플랜 수는 1990년대에 급격히 감소한 후 정체상태인 데 비해, 가입자 수는 1990년대에 꾸준히 증가한 후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PBGC에 가입한 연금플랜의 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1985년 대비 72.7%가 감소한 반면, 가입자의 수는 동년 대비 21.9%가 증가였다. 이처럼 연금플랜 수와 가입자 추이가 반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가 250명 미만인 소형 연금플랜 수는 급감하는 데 비해 가입자가 5,000명 이상인 대형 연금플랜 수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5,000명 이상 가입자를 가진 대형 연금플랜은 숫적 측면에서 최고치를 보인 1985년 대비 약 35.7%가 증가한 반면, 250명 미만 가입자를 가진 연금플랜은 그 수가 1985년보다 약 77.8%가 급감하였다.

[그림 1] 가입자규모별 연금플랜 수 추이

(단위: 개)



2007년 현재는 PBGC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변동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고정보험료를 대폭 높여 가입자 1인당 31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나. 보험료를 체계

한국조세연구원

PBGC의 보험료율은 이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던 1974년만 해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은 가입자 1인당 1달러,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입자 1인당 0.5달러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의 경우 1988년부터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 이외에도 미적립연금부채를 계산하여 미적립연금부채 1,000달러당 6달러의 변동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료체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88~1990년까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은 가입자 1인당 16달러의 고정보험료와 6달러의 변동보험료가 부과되었으며, 1991년~2005년 동안에는 이보다 각각 3달러씩 상승한 고정보험료 19달러와 변동보험료 9달러가 적용되었다. 2007년 현재는 PBGC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변동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고정보험료를 대폭 높여 가입자 1인당 31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은 보험료율의 구성 체계가 출범 때와 동일하나 이 역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큰 폭으로 높여 2006년부터 1인당 8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표 3〉 PBGC 보험료율(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고정보험료 (가입자 1인당 \$)	변동보험료 (미적립연금부채 \$1,000당 \$)	비 고
1974~1977	1	-	
1978~1985	2.60	-	
1986~1987	8.50	-	
1988~1990	16	6	가입자당 최대 \$34
1991~1994. 6. 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1994. 7. 1~1995. 6. 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및 20% 초과분 한도
1995. 7. 1~1996. 6. 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및 60% 초과분 한도
1996. 7. 1~2005	19	9	최대한도 없음
2006	30	9	최대한도 없음 (이 기간내 폐지되는 연금제도는 3년간 가입 자당 매년 1,250달러 부과)
2007	31	9	최대한도 없음 (이 기간내 폐지되는 연금제도는 3년간 가입 자당 매년 1,250달러 부과)

자료: PBGC(2007a), p. 86.

〈표 4〉 PBGC 보험료율(복수기업주 프로그램)

	보험료(가입자 1인당\$)
1974. 9. 2~1979. 8. 31	0.5
1979. 9. 1~1980. 8. 31	0.5
1980. 9. 1~1980. 9. 26	1
1980. 9. 27~1984. 9. 26	1.4
1984. 9. 27~1986. 9. 26	1.8
1986. 9. 27~1988. 9. 26	2.2
1988. 9. 27~2005. 12. 31	2.6
2006. 1. 1~	8.0

자료: PBGC(2007a), p. 120.



다. 지급보증 현황

퇴직연금 지급 중단 사태는 크게 기업 해산·파산 등의 사유로 기업이 PBGC에 연금 프로그램 청산을 신청하는 ‘자발적 청산(voluntary termination)’과 PBGC가 특정 연금프로그램의 적립 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PBGC 직권으로 강제 중단하는 ‘비자발적 청산(involuntary termination)’의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PBGC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 재직 및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프로그램이 당초 약속한 모든 연금 급여액의 지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속한 연금 급부가 고액인 경우 PBGC는 이를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PBGC가 정한 지급 보증 상한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PBGC가 보장하는 연금 지급보증 상한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과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의 경우 PBGC 연금 지급보장 상한이 매년 ERISA법에 의해 전국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인상·조정되며, 이에 따라 2007회계연도에 청산한 연금프로그램에 가입된 65세 퇴직자가 PBGC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월급여 상한은 4,125달러, 연간 상한은 49,500달러이다. 반면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0년 근무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연금 지급보증 상한이 월 최대 1,072.5달러, 연간 12,870달러이다.

PBGC가 보장하는 연금 지급보증 상한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과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퇴직연금 프로그램 유형별 지급보증 상한

(단위: 달러)

연도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월 기준	연 기준	기간	월 기준	연 기준
1990	2,164.77	25,977.24	1980. 9. 27 ~ 2000. 12. 21	487.50	5,850.00
1995	2,573.86	30,886.32			
2000	3,221.59	38,659.08			
2001	3,392.05	40,704.60	2000. 12. 22 ~ 현재	1,072.50	12,870.00
2002	3,579.55	42,954.60			
2003	3,664.77	43,977.24			
2004	3,698.86	44,386.32			
2005	3,801.14	45,613.68			
2006	3,971.59	47,659.08			
2007	4,125.00	49,500.00			

자료: PBGC(2007a), p. 102, p. 119.



퇴직연금 프로그램별
대지급액 구성을 보면,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가입
퇴직자에 대한 지급액의
비중이 99%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 2001회계연도에 10억 4,400만달러이던 PBGC의 대지급액이 2007회계연도에는 이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42억 6,600만달러로 증가하였다. 반면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가입 퇴직자에게는 그동안 100만달러 수준으로 발생해오던 대지급액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퇴직연금 프로그램별 대지급액 구성을 보면,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가입 퇴직자에 대한 지급액의 비중이 99% 이상을 점하고 있다.

〈표 6〉 PBGC의 대지급액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달러)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계
1998	847	1	848
1999	901	1	902
2000	902	1	903
2001	1,043	1	1,044
2002	1,537	1	1,538
2003	2,488	1	2,489
2004	3,006	1	3,007
2005	3,685	1	3,686
2006	4,082	1	4,083
2007	4,266	0	4,266

자료: PBGC(2007b), pp. 76~77.

라. 재정현황

현재 PBGC는 퇴직연금 지급보증을 해준 미국 대기업들의 재정위기 및 파산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까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78억 4,800만달러의 순자산을 기록하던 PBGC의 재정상황은 2002년 이후 2007년 9월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자본잠식 규모가 2004회계연도의 235억 4,100만달러를 정점으로 2005년부터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07년 9월 현재 그 규모는 2003년 대비 약 40% 감소한 140억 6,600만달러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¹²⁾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로 재정이 불안한 상황이다.

12) 2007년 자본잠식액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제정에 힘입은 바 큼.



〈표 7〉 PBGC 재정건전성 추이

(단위: 백만달러)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			전체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순자산
1980	430	524	-95	21	30	-9	-104
1985	1,155	2,480	-1,325	78	52	27	-1,298
1990	2,797	4,710	-1,913	190	58	132	-1,781
1995	10,371	10,686	-315	477	285	192	-123
2000	20,830	11,126	9,704	694	427	267	9,971
2001	21,768	14,036	7,732	807	691	116	7,848
2002	25,430	29,068	-3,638	944	786	158	-3,480
2003	34,016	45,254	-11,238	1,000	1,261	-261	-11,499
2004	38,993	62,298	-23,305	1,070	1,306	-236	-23,541
2005	56,470	79,246	-22,776	1,160	1,495	-335	-23,111
2006	59,972	78,114	-18,142	1,166	1,905	-739	-18,881
2007	67,241	80,352	-13,111	1,197	2,152	-955	-14,066

자료: PBGC(2007a), p. 50, p. 105.
PBGC(2007b), pp. 76~77.

2002회계연도 이후
PBGC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파산
등으로 갑작스럽게 급증한
대지급 청구액 때문이다.

이처럼 2002회계연도 이후 PBGC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파산 등으로 갑작스럽게 급증한 대지급 청구액 때문이다. 〈표 8〉에 의하면 2002년 LTV 철강社, 2003년에는 베들레헴 철강 및 유에스에어 항공과 내셔널 철강社, 2004년 카이저 알루미늄社, 2005년 유나이티드 항공 및 캠퍼 보험社 등의 대형 연금플랜들이 줄줄이 연금지급 중단사태로 최소 5~6억달러에서 최대 7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대지급 청구가 지속되었다. 이들 보험금(대지급) 청구 상위 10대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이 청구한 금액의 규모는 206억 900만달러로 1975년~2006년 동안 PBGC에 청구된 보험금 총액이 326억 2,600만달러의 63.2%에 달한다.

〈표 8〉 PBGC 보험금(대지급) 청구 상위 10대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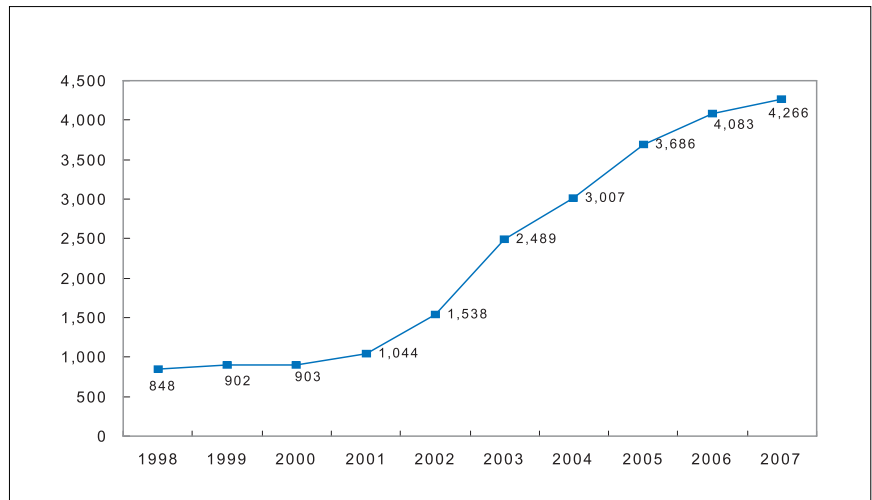
(단위: 달러, 명, %)

기업명	연금 플랜 수	청구 회계연도	청구액	지급 대상	지급대상자 1인당 청구액	총청구액 대비 비중
1. United Airlines	4	2005	7,484,348,482	122,541	61,076	22.90
2. Bethlehem Steel	1	2003	3,654,380,116	97,015	37,668	11.20
3. US Airways	4	2003, 2005	2,690,222,805	59,778	45,004	8.20
4. LTV Steel*	6	2002, 2003, 2004	2,136,698,831	83,879	25,474	6.50
5. National Steel	7	2003	1,275,628,286	35,580	35,852	3.90
6. Pan American Air	3	1991, 1992	841,082,434	37,485	22,438	2.60
7. Weirton Steel	1	2004	690,181,783	9,196	75,052	2.10
8. Trans World Airlines	2	2001	668,377,106	34,257	19,511	2.00
9. Kaiser Aluminum	3	2004	600,009,879	17,591	34,109	1.80
10. Kemper Insurance	2	2005	568,417,151	12,221	46,512	1.70
10대 기업 합계	33		20,609,346,871	509,543	40,447	63.20
10대 기업 제외 합계	3,640		12,017,433,400	1,194,479	10,061	36.80
총 계	3,673		32,626,780,271	1,704,022	19,147	100.00

주: 1975~2006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PBGC(2007a), p. 54.

[그림 2] PBGC의 지급보증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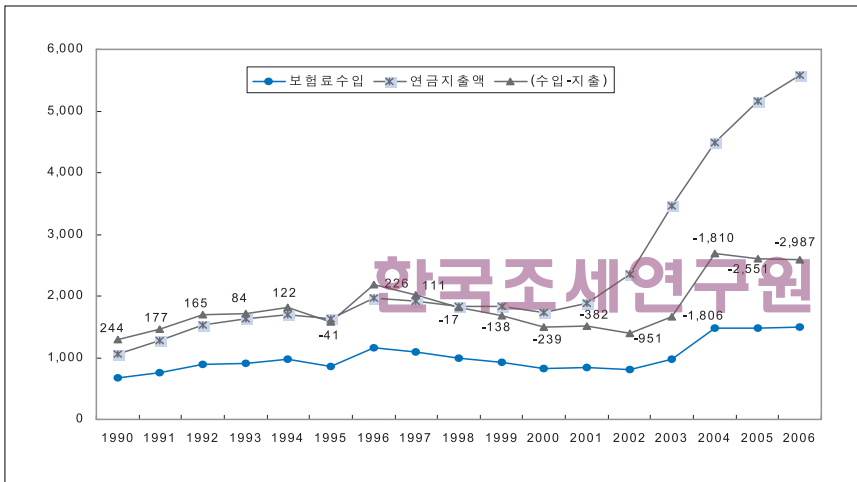


아울러 2002년 이후 연금지출액은 PBGC에 대한 대지급 청구액 급증과 맞물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완만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연금지출액은 2003년에는 전년 대비 약 90%가 증가한 18억 600만달러, 2006년에는 약 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2년 이후 연금지출액은 PBGC에 대한 대지급 청구액 급증과 맞물려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완만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3] PBGC의 보험료수입, 연금지출액 및 초과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주: PBGC의 단일연금플랜과 복수연금플랜을 합산하여 그래프 작성
 자료: PBGC(2007a), p. 51, p. 106.

4. PBGC의 개편

가. 노정된 문제점

PBGC의 재정위기에 따라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³⁾.

첫째, ERISA는 연금플랜의 완전적립 인정비율을 목표 적립액의 100%가 아닌 90%로 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연금채무의 90% 이상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대지급 기관인 PBGC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기업이 목표 적립액 100%를 채우지 못한 채 연금플랜을 청산하는 경우 미적립액은 PBGC의 손실로 고스란히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7).



ERISA의 제도적 약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실화 및 퇴직연금 대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공사(PBGC)의
 재정상태를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ERISA는 미적립 연금부채(unfunded liability)가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상각기간을 5년부터 3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신속하게 연금플랜의 100%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이자율과 추정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손실의 경우는 5년 동안 상각하고, 연금제도 개편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는 30년간 상각한다.

셋째, 기업이 연금플랜의 최저출연금(minimum required contributions: MRC)을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인 'credit balance'는 연금플랜의 추정이자율(assumed interest rate)을 증가시키는 계정(notional accounts)이며, ERISA는 매년 산정되는 연금플랜 출연금(subsequent contributions)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 규정은 연금플랜의 적립률(funding ratios)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대 초반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최저출연금(MRC) 증가로 미적립 연금채무(liabilities)가 증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상당한 'credit balance'가 있는 연금플랜의 경우 장래 납부해야 할 연금출연금을 줄이기 위해 'credit balance'와 상계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연금플랜의 적립률이 급격히 하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넷째, ERISA는 연금플랜 출연금의 최대 한도액인 '연금적립한도(full funding limit)'를 설정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기업이 연금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최대 한도액 설정은 기업이 절세수단으로 공제범위를 초과하여 연금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연금적립한도는 연금플랜의 미불부채(accrued liability)가 연금플랜 자산(plan assets)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적립한도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것을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ERISA의 제도적 약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실화 및 퇴직연금 대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의 재정상태를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2003년 United Airline社가 기업회생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회사의 출연 중단을 선언한 이후 퇴직연금 부실화는 미국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퇴직연금과 연금보험공사(PBGC)의 개혁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나.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의 제정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한 부시 행정부 및 의회 등은 2003년 후반부터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하여 2006년 8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을 제정하였다.

첫째, PPA에서는 퇴직연금 시행 기업의 적립목표 수준(target funding level)을 연금부채의 100%로 의무화하고, '미적립 연금부채가 있는 연금플랜(plans with unfunded liabilities)'의 상각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였다. 적립목표 수준 100% 의무화 규정은 연금부채의 90%로 규정한 ERISA와 비교하여, 단일 기업주 플랜에 대한 최저적립기준(Minimum Funding Standards)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한 미적립 부채채무가 있는 연금플랜의 상각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것은 ERISA가 부채 발생사유에 따라 5~30년의 폭넓은 기간을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상각규정의 단순화 및 미적립 연금플랜을 신속히 축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PPA는 'credit balance'를 장래 각출해야 할 연금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한 ERISA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 대상을 강화하였다. 우선 연금채무를 80% 이상 적립한 기업에 한해 'credit balance'에 의한 상계를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2008년부터는 'credit balance'가 발생할 투자손익에 의해 조정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PPA는 일정수준의 적립 목표(certain funding thresholds)를 달성하지 못한 연금플랜에 대해 연금 급여(benefit limits)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즉 신법에서는 연금플랜의 적립률이 60%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기업이 파산 등으로 연금플랜을 부실 청산하게 되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연금급여(Shutdown benefits) 및 장래 발생할 연금급여(benefit accruals)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발생을 금지하며, 적립률이 80% 이하인 연금플랜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의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 기존 법에서는 연금플랜 자산의 적립률 산정시, 연금플랜 자산가치를 평활화(smoothing)¹⁴⁾하여 지나친 변동 폭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평활화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평활화한 자산가치(smoothed asset values)가 시장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적립 연금플랜 수가 줄어들고 연금플랜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출연금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연금플랜의 미적립률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신법인 PPA에서 '연금자산의 평활화 처

부시 행정부 및 의회 등은 2003년 후반부터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하여 2006년 8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을 제정하였다.

한국주세연구원

14) 일반적으로 평활화는 자산가치 및 출연금의 변동(fluctuation)을 조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매년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퇴직급여추계액 중에서 사외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 이외에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리'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삭제하는 대신 평활화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다섯째, 연금부채의 측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수익률(modified yield curve)에 근거한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존 법에서는 당해 연도 이전 4년의 30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을 이용하였으나, PPA는 보다 정확한 연금부채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¹⁵⁾. 변경 배경은 기업의 연금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미 의회는 한시적으로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회사채수익률을 2004~2005년 동안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에 다시 연금부채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기준 이자율이 국채수익률로 복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연금부채 증가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결국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기회사채수익률(long-term corporate bond rates)로 기준 할인율을 변경하게 되었다.

여섯째, PPA는 PBGC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 보험료(flat rate premiums)를 연금플랜의 유형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하였으며,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 중 미적립 연금플랜의 경우에는 변동보험료(variable-rate premiums: VRP)를 가입자 1인당 2.60달러에서 8달러로 인상하였다. 또한 파산으로 해산된 퇴직연금 플랜에 대해 사용자가 파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가입자 1인당 연간 1,250달러씩 3년에 걸쳐 청산 보험료(Termination Premium)를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IV. 시사점

1.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설립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퇴직급여추계액 중에서 사외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 이외에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60% 이상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때 근로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약

15) 당해 연도 발생 연금 부채와 과거 연도 발생 연금 부채 등 연금플랜이 종업원에게 약속한 연금 혜택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미래의 연금부채를 정확하게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이용할



속하는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PBGC)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는 기업주에 비해 기업의 파산 확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대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연금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만일 우리나라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PBGC와 같은 기관을 도입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60% 이상을 사외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ERISA는 연금플랜의 완전적립 인정비율을 목표 적립액의 90%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PBGC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을 인상하거나 낙관적인 계산기초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부담금을 낮추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소적립규모를 정확히 추산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한 보험료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며, 과소적립규모를 매년 새롭게 추산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PBGC의 경우 보험료율이 의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리스크의 수준에 합당한 수준의 보험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¹⁶⁾.

우리나라에 미국의 PBGC와 같은 기관을 도입하더라도 만일 적립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리스크 수준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현재의 PBGC와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적립인정비율을 100%로 하더라도 연금부채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금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연금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져¹⁷⁾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회계의 정확성 및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연금지급보증공사가 미국의 PBGC와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한다면 결국은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PBGC와 같은 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만일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¹⁸⁾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향후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적연금까지도 정부의 재정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만일 우리나라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PBGC와 같은 기관을 도입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16) 이봉주(2007), P. 60.

17) 예를 들어 10년 후에 지급할 1,000달러의 현재 가치는 기대수익률을 6%로 가정할 때 558,39달러인 반면 기대수익률을 7%로 가정하면 508,35달러가 되며, 또한 20년 후에 지급할 1,000달러의 현재 가치는 기대수익률을 6%로 가정할 때 311,80달러인 반면, 기대수익률을 7%로 가정하면 258,42달러가 된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7)).

18)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주는 제도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안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제도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를 설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35% 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인정해주는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적립금액인 연금자산이 확정연금의 급여액인 연금부채와 일치되도록 연금채무에 적합한 연금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연금수리평가를 받아서 연금자산이 연금부채를 하회하는 경우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존치 여부

한국주세연규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해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중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당시 노조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적립금의 투자위험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대기업 근로자가 선호한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큰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42.2%(60개)가 확정급여형(DB형)을, 26.8%(38개)가 확정기여형(DC형)을 도입한 반면 근로자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16.1%(4,959개)가 확정급여형(DB형)을, 36.0%(11,055개)가 확정기여형(DC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안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제도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상당부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별다른 개선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PBGC의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만들더라도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면서 확정기여형이 급성장을 이루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연금 자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1985년 당시에는 확정급여형은 64.9%인 7,954억달러, 확정기여형은 35.1%인 4,309억달러로 전자를 더 선호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반전되어 확정기여형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며, 2002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은 43.3%인 15,851억달러, 확정기여형은 56.7%인 20,726억달러이다¹⁹⁾. 이처럼 퇴직연금 선호유형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근로자 입장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투자수익의 증대와 이직시 편리성 등으로 인해 확정기여형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부채를 보증하지 않아 미적립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장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단기간 내에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35%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인정해주는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를 우선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확정기여형에 있어서는 적립금의 운용지시 권한 및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근로자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적립금 투자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위험의 제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²⁰⁾. 또한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적립금이 계속 근로자 명의로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KIF

<참고문헌>

김진수·김재진,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합동설명회 자료』, 2005.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II』, 2006.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2004.

장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9) PBGC(2005).

20) 현재 확정기여형(DC형)은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만으로 투자하도록 하면서 간접투자의 주식편입비율을 40% 이내로 한정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7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주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이 문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이민환,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문제와 향후 과제』, 예금보험공사, 2005.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Financial Health of the Pension Guaranty Benefit Corporation*, 2007.

<http://www.erisalawfirm.com>

PBGC, *An Analysis of Frozen Defined Benefit Plans*, 2005.

———, *Pension Insurance Data Book 2006*, 2007a.

———, *Annual Management Report : Fiscal Year 2007*, 2007b.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다중업무(multitask)이론을 중심으로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kim@kipf.re.kr)

I. 서론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업방식 다변화와 차이점을 두면서도 공통의 목적인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선진국을 향하여 경제 각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근의 화두이다. 그 중 하나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및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이다.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자체적인 관리 및 평가를 성과에 연동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역동성을 구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로 인한 내·외부적인 상대적 평가의 제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세련된 방식을 도출하리라 예상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의무화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mission),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의 성과지표 등이 제시되어 하나의 성과목표체계를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하였다. 성과목표체계를 공개하고 또한 이에 준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성과평가를 받음으로써 성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이다.



목표의 모호함, 목적의 다중성,
성과정보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공공부문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모형으로
조직이론의 다중업무이론을
천착할 필요성이 있다.

과관리제도가 정착되었고, 지방 및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도 성과목표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진전은 사업별로 성과정보를 통해 투입과 산출 그리고 성과가 유기적으로 이해되며 조직의 임무가 명료해지고 성과평가의 환류가 제고되는 결과를 얻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05년에 제정된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시행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분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경영공시,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에 대한 일련의 시스템이 완성되어 올해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민간기업과 상이한 조직형태로 인해 정부기관 평가에서 나타나는 임무의 모호함, 그리고 성과지표의 부재 또는 연계성 결여로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정보에 대한 인식이 공공부문 평가에 매우 중요하며 그간 진행되어온 정부기관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축적된 성과정보에 대한 연구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필요하다. 목표의 모호함, 목적의 다중성, 성과정보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공공부문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모형으로 조직이론의 다중업무이론을 천착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¹⁾의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그 의미에 대해 그간 발전하여 온 정보경제학과 조직이론의 틀에서 성과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의 사적기업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인센티브체계에 대한 공공부문에의 적용이 한계에 이르고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즈음에 최근 발달한 조직이론을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투영하여 잘 알려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얻은 성과정보의 내실화가 공공기관의 평가에 매우 필수적임을 지적하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이하에서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공공부문 성과관리 또는 모니터링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정부기관 대상의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공공기관 대상의 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제Ⅲ장은 공공부문 조직이론의 개요와 다중업무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Ⅳ장은 시사점 및 한계를 논하고 있다. 다중업무모형을 통한 이력관리이론이 성과정보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임을 언급하고 있다. 성과정보의

1) 때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합쳐서 공공기관이라 말하기도 한다.



객관성이 민간부문과 거의 동일한 경우에 일반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사용하는 공기업 지배구조가 적절한 분석틀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Ⅳ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하나인 쌍방향모형의 최적성과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최적 적용대상 사업규모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본고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II. 공공부문 성과관리

1. 정부기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거시적 재정운용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대적인 재정혁신의 차원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시행하였다.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4대 재정혁신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 즉,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및 성과보고서 제출 등으로 일종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개별 주요 사업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의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개발 및 그에 대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제고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실적에 토대를 둔 성과평가로 구체화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선별된 사업들에 대해 심층적 평가를 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정부 재정사업 중에서 R&D사업, 정보화사업을 제외²⁾하고 직접사업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4대 재정혁신의 하나인 프로그램예산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 SOC건설사업, 대형시설 장비구매, 기타 직접사업, 출연출자사업, 융자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의 7개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에 걸쳐 전 부처 모든 대상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이루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각각 평가하고 있다.



Wilson은 정부부서와 민간기업과의 세 가지 주요 차이점으로 이력관리, 다중목적성과 불명료함, 그리고 제한된 자치 등을 들고 있다.

어저 정부기관의 사업평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사업평가와 조직평가의 관계 그리고 평가와 예산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단서로서 사업평가 또는 조직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 그리고 사업성과와 부서행위와의 관계로 본 특성에 따라 조직이론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치를 중심으로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목표의 명료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 그리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평가의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처 간 연계사업(cross-cutting) 또는 종합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물음으로는 과연 한 부서가 여러 개의 사업을 담당할 경우 어떠한 성과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기업관리자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정부기관과 사적기업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팽만하다. James Q. Wilson(1997)은 통시적 연구를 통해 관료사회에 ‘관례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고찰하였다. Wilson은 정부부서와 민간기업과의 세 가지 주요 차이점으로 이력관리, 다중목적성과 불명료함, 그리고 제한된 자치 등을 들고 있다. 이력관리(career concerns)의 중요성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화폐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승진 또는 민간부문으로의 고용을 위한 이력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함을 말한다. 목적의 다중성(multiple objectives)과 불명료함은 공공부문 사업들의 일반적 특징으로 공무원은 다중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그 목적들 중에는 명료하지 않고 모호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자치(limited autonomy)는 관리결정에서 제한적인 자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말한다.

Wilson은 조직의 임무에 대한 이해와 임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한 목적들의 집합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양하고 조직의 임무(mission)를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즉, 애매모호한 목적들을 재고하여 주요 사안들이나 작전목표들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의 문화(culture)를, 주요 사안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임무를 조직구성원에 의해 광범위하고 열정적으로 공유된 단일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도 성과관리의 주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사업자율평가방식의 실제적 이득은 사업별로 성과생산함수를 체계화하고 성과와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성과정보를 구축화하는 데 일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의 내재적 한계, 둘째, 공공기관 관리감독시스템의 문제, 셋째, 공공기관 임직원의 형태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방만한 경영 또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의 한 종류로 방만한 경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공공기관의 주요 문제점이라 말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이론으로 엄밀하게 고찰하면, 주어진 목적함수에 대한 최적의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소유자가 알지 못하거나, 관찰하더라도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관리자에 대한 사적인 이득을 렌트(rents)라 한다. 이러한 렌트가 직간접적으로 관찰되면서 도덕적 해이의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자주 열거되는 방만한 경영을 분류하면, 내부적인 기관경영상의 방만함과 외부와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사업 관련 방만함이 지적된다. 기관경영상의 방만함으로는 예산운영, 조직, 인사, 보수, 입찰/구매,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행위들이 포함되며, 사업 관련 방만함으로는 설립목적 외의 사업진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공공기관의 내재적 한계이다. 공공성 추구, 설립법의 존재, 정부재정지원, 독점적 지위, 소유권 다기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달리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관리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성과관리, 경영평가, 공시, 설립통제, 임원 임면, 내부 견제장치 운용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public governance)의 느슨함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임직원의 형태상의 문제점으로 인건비, 예산운용, 조직 및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업관리, 자회사, 이사회 운영, 감사, 목표관리, 경영공시 등에서 공공기관의 목적과 다른 유인을 임직원이 갖게 된다. 과연 어떻게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지배구조와 직원행태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가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정통하고 능동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소유권 행사의 주체로 조정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 왔다.

2005년에 제정된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채택 및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공포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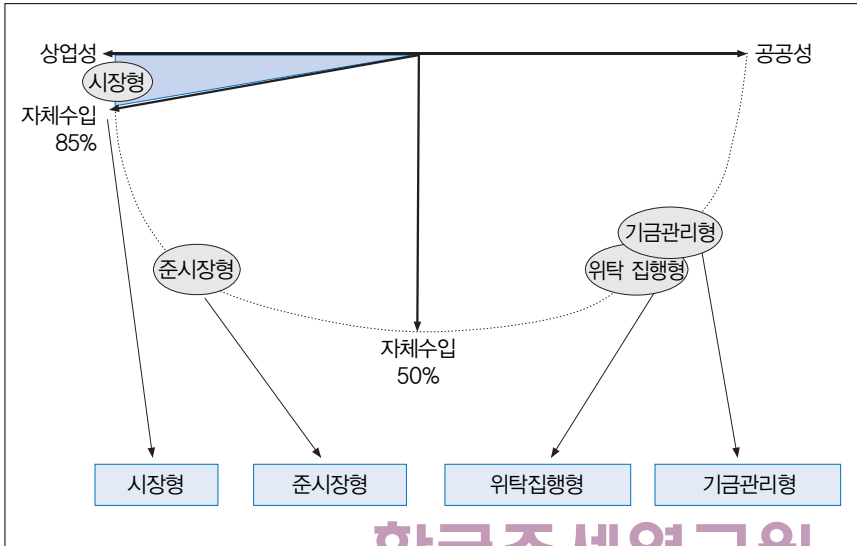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정통(informed)하고 능동적(active)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소유권 행사의 주체로 조정기관(coordination entity)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개입하지 말 것과 공기업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경영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공기업에게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인 소유권자로서 정부가 행사하여야 할 권리 또는 책임 사항으로는 주주권 행사, 이사 임명, 정기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보고체계, 외부감사 및 정부감사기관과의 협의체제 유지, 이사회 이사 보수체계 개발 등을 적시하고 있다.

2006년에 추진된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은 OECD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유권 기능과 규제산업정책 기능의 분리, 조정기관의 설립, 주주(shareholder)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권리 존중, 경영투명성 제고, 이사회 권한 및 능력의 강화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 외부감독평가시스템 강화, 내부견제균형장치 강화, 임원인사시스템 강화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실질적 통제 가능성, 재정지원 여부, 공공성 여부 등을 참고하여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4개의 유형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그림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으로는 2007년 현재 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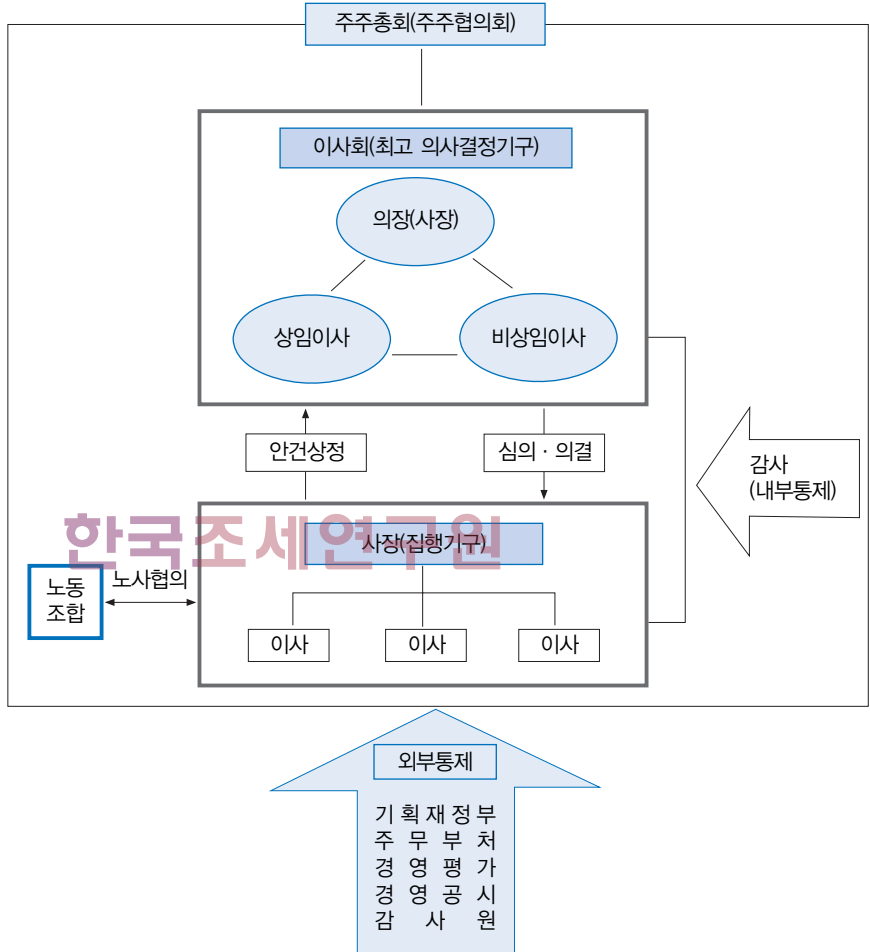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으로는 2007년 현재 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그리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63개가 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 197개가 존재하였는데 200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최근 7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4개 유형에 대해 분류기준을 명시하고, 유형에 따라 외부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 임원인사시스템을 각각 개편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지배구조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모의실험적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를 천명하였다. 이 중에서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주된 내용을 법제화하여 OECD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림 2] 공기업 지배구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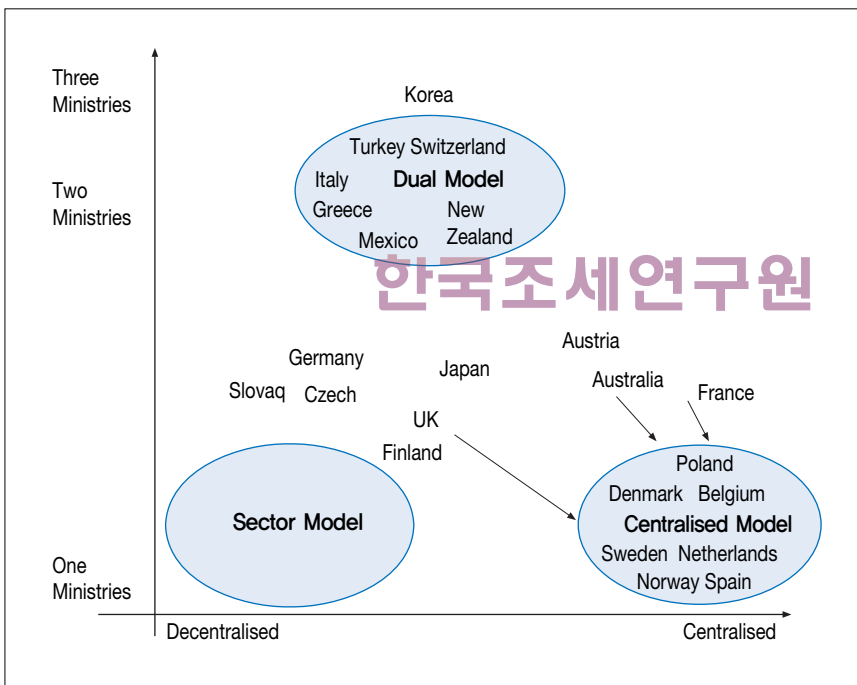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주된 내용을 법제화하여 OECD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지정하는 절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활동 등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을 제시하였다.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의 지배구조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배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분권형 또는 부문

형(sector model), 집권형(centralized model), 쌍방형(dual model)이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부문형인데, 공기업이 관계된 주무기관의 책임하에 있는 형태이다. 가장 빈번한 것은 쌍방형으로 책임이 주무기관과 중앙기관에 나뉘어 있는 형태이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집권형은 하나의 중앙기관에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형태이다. 다음의 [그림 3]은 OECD 주요 국가의 지배구조를 보여준다.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통상적으로 분권형 또는 부문형,
집권형, 쌍방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3] OECD 공기업 지배구조 현황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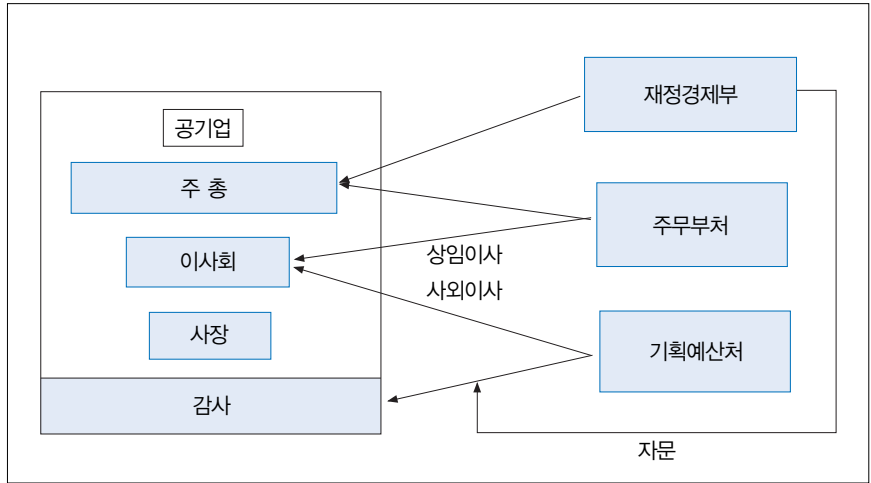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방형(trial model)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공기업에 관계된 주무기관,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적어도 세 개의 기관에 책임성이 나뉘어져 있다. OECD 공기업지배구조 비교분석에 제시된 '한국형 소유권기능' 모형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향후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도 OECD 관례에 따르면 쌍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향의 장점은 규제, 산업적 정책과 재무상황의 균형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한국형 소유권기능 모형



한국 조세 연구원
재정경제부와 주무기관이 주주총회에 소유권자로서 참여한다. 재정경제부는 출자, 회계, 결산 등에 관여한다. 주무기관은 이사장을 제안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기획예산처는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감사를 제안한다. 기획재정부로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도 OECD 관례에 따르면 쌍방향(dual model)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향의 장점은 규제, 산업적 정책과 재무상황의 균형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형의 경우 재무적 이슈에 너무 많은 집중이 이루어져 부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노정되기도 한다. 이후에 조직이론의 한 모형을 통해 쌍방향(dual model) 지배구조가 권리의 견제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하고 그 일반적 특성을 제공하여 시사점을 삼고자 한다.

Ⅲ. 이론적 이해

1. 공공부문 조직이론

시장에서의 거래 대신 조직 안에서 상호작용하여 성과를 내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조직이론의 논점은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이다. 왜냐하면 기업 또는 기관의 단체이익보다



는 궁극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구성원 즉, 경제주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경제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는 공식적인 인센티브, 모니터링, 그리고 커리어 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민간기업 등과 같은 사적조직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완비계약의 경우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인센티브로는 성과급,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묵시적 인센티브로는 선거당선, 승진, 미래의 고용 등과 같은 이력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사적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된 명시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정부 조직에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는다. 우선 공무원의 임금은 성과급 체계가 아주 완만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강력한 보너스 제도나 스톡옵션 등은 민간부문 중에서도 특정한 부문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에 강한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민간부문과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견해와, 질적 차이가 거의 없고 양적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내에 두 가지 견해가 각각 설득력이 있게끔 하는 조직형태가 존재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센티브제도를 잘 적용하여야 하며 그 중심에 성과에 대한 정보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설계에서의 특징은 공공부문의 특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은 다중목적성을 갖고 목적에 대한 성과나 투입에 대한 계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회후생의 비계량 측면을 훼손할 수 없는 경우가 본질적으로 공공부문 존재의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민간부문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경쟁기업과의 비교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선호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으로 다중목적성을 들 수 있겠다.

사적부문에서 활용되는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연구는 조직이론의 주요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비대칭적 정보, 반복적인 동학, 불완비적 계약 등의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조직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완비적 계약을 상정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완비적 계약을 상정한 권리배정을 들 수 있다. 사전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향후 권리소재에 대해 완비적 계약이 가능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설계에서의 특징은 공공부문의 특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은 다중목적성을 갖고 목적에 대한 성과나 투입에 대한 계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부부문 인센티브의 특징으로는 목적의 다중성, 비교의 불가, 소유자 선호의 이질성, 분산 소유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하다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명시적 또는 화폐적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불완비적 계약이론은 '기업이론(the theory of the firm)'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주요 부분을 이루는 거래(transaction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을 통한 기업 간 거래와 기업 내부의 내부자 거래를 들 수 있다. 기업 내부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명하복의 과정은 계약 형태로 미리 결정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와 불확실성,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시점의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축약적 형태의 계약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이 불완비 계약이론의 요체이다. 의사결정의 권리배정이 추가적인 차원으로 더해져 현실 상황을 설명하는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적부문에 대해서는 상기한 완비적 또는 불완비적 계약이론을 통해 화폐적 인센티브, 모니터링, 그리고 권리배정 등의 방식이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또한 개선에 대한 처방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위의 방식들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력관리의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되고 연구되었다. 경력 또는 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경력관리이론인데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노동 경제학, 인사관리 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주요 사실(stylized facts)을 설명하기 위해 인센티브이론을 적용하면서 발전하여 정부의 완만한(low-powered) 인센티브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부문 인센티브의 특징으로는 목적의 다중성, 비교의 불가, 소유자 선호의 이질성, 분산 소유구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 차례로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사적기업의 소유자는 이윤극대화라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측가능한 변수로 수입, 주가 등이 있어 명시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목적은 소비자 순후생, 공해, 개발, 재분배 등으로 다중적이다. 물론 목적의 다중성 자체는 강한(high-powered)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만, 목적이 계측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가중치의 문제도 있다.

둘째, 정부부문은 관리성과의 관측에 오류항이 존재하여 공식적인 인센티브 체계의 유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총체적 위험과 특이적 위험을 구분하여 계측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독과점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규제부문에 활용할 수도 있는 기준경쟁(yardstick competition) 또는 상대성과 평가(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셋째, 정부부서의 소유자들이 갖는 선호가 다양하고 가변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시간일치성의 부재 또한 공공부문의 주요 특징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공공부문의 주요 특징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설계를 매우 어렵게 한다. 그러나 금전적 인센티브가 정부 관청에도 존재하고 다른 완만한 형태의 묵시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부 관리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계측적인 목적과 비계측적인 목적 간의 상충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Holmstrom(1982)에 의해 전개된 이력관리모형의 요체는 현재의 성과를 통해 관리자가 자신의 재능을 나타냄으로써 미래의 고용 또는 승진을 기대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2. 다중업무(multitask) 이론

공무원과 정치가는 현재의 성과가 미래에 이루어질 승진에 대한 평판이나 이미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고용가능성, 그리고 재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현재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이력관리는 내부적 또는 외부적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 호도하려는 작업을 하도록 공무원과 정치가를 유도한다.

Holmstrom(1982)에 의해 전개된 이력관리모형의 요체는 현재의 성과를 통해 관리자가 자신의 재능을 나타냄으로써 미래의 고용 또는 승진을 기대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성과가 관리자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데 재능과 노력이 각각 불완비 정보로 관측불가능하고 증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인(ex ante) 완비적 계약에 의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력관리모형의 일반적인 경우로 업무의 수가 N 인 다중업무상황을 상정하고 재능과 노력의 관계가 가법적인(additive)경우와 승법적인(complementary) 경우를 도입한다. Jean Tirole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된 다중업무 이력관리모형을 소개하고 모형의 균형에서 예측하는 결과물들을 정부 관료에 대한 관례화된 사실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관리자의 현재 성과는 능력과 노력의 합이나 곱으로 표현된다. 능력은 모두에게 불확실한 변수이다. 관리자의 노력은 관리자만 알고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성과는 모두에게 알려지지만 증명할 수는 없어서 사전적으로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기술할 수 없다. 즉, 불완비적 계약 패러다임을 상정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현재 일정급을 받게 되지만 미래임금은 현재 성과가 주어진 상황에서 능력의 기대치이다.

관리자와 미래고용자가 2기에 걸쳐 상호작용한다. 관리자는 N 개의 업무에



성과는 노력, 재능,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해 각각 관측이 불가능한 행위 또는 노력 $a=(a_1, \dots, a_N)$ 를 현재에 기울여 관측가능한 M 개의 성과 $y=(y_1, \dots, y_M)$ 를 달성한다. 성과는 노력, 재능,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이론의 일반적인 가정에 따라 미래의 임금은 현재 성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관리자가 재능의 기대치로 결정된다. 재능 θ 는 관리자와 미래고용자가 공히 모르는 파라미터이다. 재능과 성과의 결합(joint)확률밀도함수는 관리자의 노력에 대한 조건부확률 $f(\theta, y|a)$ 로 주어진다. 그러면 노력이 주어질 때 성과의 한계(marginal)확률밀도함수는

$$\hat{f}(y|a) = \int_{\theta} f(\theta, y|a) d\theta \text{로 주어진다.}$$

미래고용자가 예상하는 관리자의 현재 노력수준을 a^* 라고 하면, 관리자가 미래에 고용될 때 임금인 재능의 기대치는

$$t = E(\theta|y, a^*) = \int_{\theta} \theta \frac{f(\theta, y|a^*)}{\hat{f}(y|a^*)} d\theta \tag{1}$$

로 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은 미래고용자가 예상하는 관리자의 현재 노력에 대해 관리자가 재능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현재 노력을 풀 때, 이 두 개의 노력 수준이 같게 되도록 정의된다. 공공기관 관리자의 극대화문제는

$$\max E_y [E_{\theta}(\theta|y, a^*)] - c(a) \tag{2}$$

로 설정된다. 이 극대화문제 (2)의 일계조건은

$$\frac{d}{da} \left(\int \left(\int \theta \frac{f(\theta, y|a^*)}{\hat{f}(y|a^*)} d\theta \right) \hat{f}(y|a) dy \right) = c_a(a)$$

또는

$$\iint \theta \frac{\hat{f}_a(y|a^*)}{\hat{f}(y|a^*)} f(\theta, y|a^*) dy d\theta = c_a(a^*)$$

로 표기되는데 \hat{f}_a 는 한계확률밀도함수의 노력에 대한 도함수이다. 균형조건의 의미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초래되는 한계이득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노력 수준을 관리자가 기울인다는 것이다. $E[\hat{f}_a/\hat{f}] = 0$ 임을 이용하면 한계이득은 재능과 노력에 대한 우도비율(likelihood ratio)의 공분산이 되어, 궁극적으로 균형조건은



$$\text{cov}\left(\theta, \frac{\hat{f}_a}{\hat{f}}\right) = c_a(a^*) \quad (3)$$

다중업무 정규모형은 다중업무이고, 불확실성을 갖는 파라미터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가지며, 노력과 재능이 가법성과 승법성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이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지되는 식 (3)은 그러나 현실적 설명을 하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한하여 풍부한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것이 다중업무 정규모형(normal model)이다. 다중업무이고, 불확실성을 갖는 파라미터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가지며, 노력과 재능이 가법성(additivity)과 승법성(multiplicity)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다중업무 정규모형은 업무 i 의 성과가

$$y_i = \theta(\mu a_i + b) + \gamma a_i + \epsilon_i \quad (4)$$

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μ , γ 그리고 b 는 양수이고, a_i 는 업무 i 에 기인한 노력이며, θ 와 ϵ_i 는 독립적으로 분포된 변수로 $\theta \sim N(\bar{\theta}, \sigma_\theta^2)$ 그리고 $\epsilon_i \sim N(0, \sigma_\epsilon^2)$ 의 정규분포를 갖는다.

업무가 하나인 경우 식 (3)은

$$\frac{\bar{\theta}\mu + \gamma}{(\mu\hat{a} + b) + \frac{\sigma_\epsilon^2}{(\mu\hat{a} + b)\sigma_\theta^2}} = c_a(\hat{a}) \quad (5)$$

가 된다. 이하에서는 업무가 하나인 경우 가법성과 승법성만을 강조하여 논점을 구체화하여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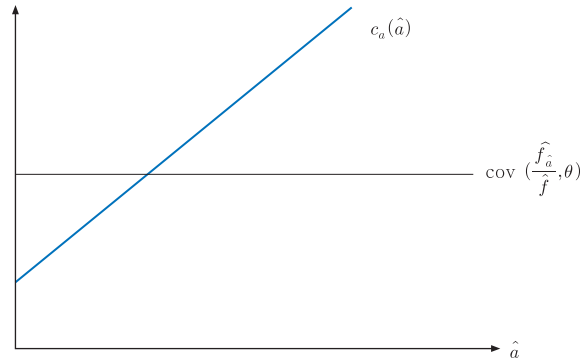
순가법적(pure additive) 모형은 $\mu=0$ 으로 단순하게 $y_i = \theta + a_i + \epsilon_i$ 로 나타나는데 Holmstrom(1982)³⁾와 같게 된다. 이때 노력 수준과 수익 또는 비용의 평면에 식 (5)를 적용하면 다음의 [그림 5]가 된다.

3) Holmstrom(1982)는 다기(multi-period)모형도 포함한다.



다중업무인 경우 주된
관심사는 성과평가를 할 때
과연 과업의 수가
관리자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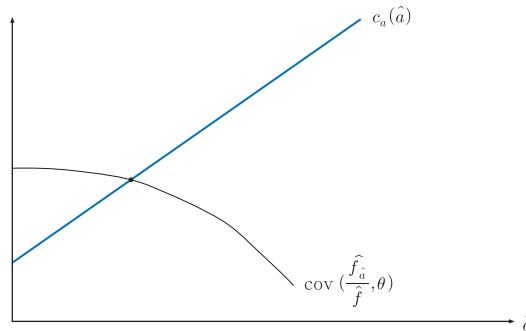
[그림 5] $\mu=0$ (가법적인 경우)



순승법적(pure multiplicative) 모형은 $b=0$ 으로 단순하게 $y_i = a_i \theta + \epsilon_i$ 로 나타나는데 오차항이 없는 경우 $y_i = \theta a$ 로 표기된다. 이때 노력 수준과 수익 또는 비용의 평면에 식 (5)를 적용하면 다음의 [그림 6]이 된다.

한국조세연구원

[그림 6] $\mu > 0$ (승법적인 경우, b가 크고 작은 $\sigma_\epsilon^2/\sigma_\theta^2$ 경우)



다중업무인 경우 주된 관심사는 성과평가를 할 때 과연 과업의 수가 관리자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이다. n 개 업무로 이루어진 사업군 I 의 총성과가 $Y_I = \theta(\mu\hat{a} + nb) + \gamma\hat{a} + \sum_{i=1}^n \epsilon_i$ 로 주어진 경우, 식 (3)은

$$\frac{\bar{\theta}\mu + \gamma}{(\mu\hat{a} + nb) + \frac{n\sigma_\epsilon^2}{(\mu a + nb)\sigma_\theta^2}} = c_a(\hat{a}) \quad (6)$$

이 된다. 이 경우 단일업무모형으로 회귀한 것으로 업무 수 n 의 증가는 능력과

우도비율의 공분산을 낮추어 결국 균형 노력을 줄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과평가를 집행할 때 집중(focus)을 도입하면 노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의 정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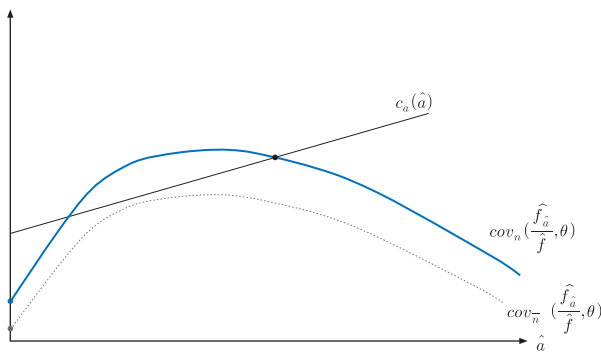
[정리 1] 다중업무 정규모형에서

- (i) 총 성과만이 관측가능한 경우, 업무 수의 증가는 균형 총 노력 수준을 낮춘다.
- (ii) 승법적인 효과가 있다면, 업무 수의 임계치가 존재하여 임계치 이상에서는 양(+)의 노력이 있는 균형이 사라진다.

전체 N 개의 업무 중에서 업무군 I 에 속한 n 개의 업무에 대해 상급자나 평가자 또는 장래고용자가 업무군 I 의 총 성과 y_I 에 대한 정보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상황을 가정하자. 그러면 위의 [정리 1]의 (i)은 다중업무 정규모형에서 n 이 작을수록 노력 수준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많은 수의 과업은 성과와 재능평가의 실질적 관계가 너무 완만하게 되어 관리자의 노력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 1]의 (ii)는 업무수의 임계치 \bar{n} 가 존재하여 그 이상의 업무 수에 대해 양(+)의 노력 수준을 갖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승법적인 경우 균형존재의 임계 업무 수



재능평가를 위한 성과정보가 총 성과의 관측치로 한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성과의 관측치 $S_I = \{y_i | i \in I\}$ 가 이용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수의 과업은 성과와 재능평가의 실질적 관계가 너무 완만하게 되어 관리자의 노력 수준을 감소시킨다.



균형이 혼합균형처럼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 미래고용시장 또는 평가자가 관리자가 실제로 추구하는 임무에 대해 불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균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2] 개별 성과가 관측가능하여 장래고용자가 고려하여 분리된 성과측정을 하는 다중업무 정규모형에서,

- (i) 순가법적인 경우, 유일한 균형에서는 총 성과가 관측되거나 개별 성과가 관측되거나 상관없이 균형 노력 수준이 동일하다.
- (ii) 순승법적인 경우, 개별 정보구조에 대한 균형의 집합은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지는 총 성과 정보구조에 대한 대칭균형의 집합의 합집합이다.

순가법적인 경우 균형의 유일성은 [그림 5]에 의해 나타나며 이때 총 성과에 대하여 개별 성과의 관측 가능성이 추가되어도 노력 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순가법적인 (i)의 경우이다. 그러나 (ii)의 순승법적인 경우에는 [그림 7]과 같이 균형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며 이때 중요한 것이 업무성과의 측정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측정 가능한 성과를 가지는 업무가 늘어나면 균형의 수에 영향을 주고 이는 균형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균형이 혼합균형(mixed equilibrium)처럼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 미래고용시장 또는 평가자가 관리자가 실제로 추구하는 임무에 대해 불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균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예를 들어 임무가 명료한(clear) 경우와 모호한(fuzzy) 경우 관리자의 총 노력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명료임무의 경우, 평가자는 관리자가 하나의 과제에 전무하고 있음을 안다. 반면에 모호임무의 경우, 관리자가 n 개의 과제에 동일한 확률로 업무를 하고 있고 평가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관리자의 성과가 순승법적인 경우로

$$y_i = a_i \theta + \epsilon_i$$

라고 하자. 이때 ϵ_i 는 로그오목(logconcave)하고 i.i.d.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3] 개별 성과가 관측 가능하여 장래고용자가 고려하여 분리된 성과측정을 하는 다중업무 정규모형에서,

- (i) 가법적 정규모형의 경우, 모호임무균형과 명료임무균형에서 관리자의 총 노력 수준은 동일하다.
- (ii) 무노력-무정보 승법적 경우, 관리자의 총 노력 수준은 모호임무균형보다



명료임무균형에서 더 높다.

직관적으로 이를 설명하면, 가법적인 경우 총 성과는 재능에 대한 충분통계량 (sufficient statistics)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평가자가 하는 관리자의 재능에 대한 추정은 업무 간 노력의 배정에 대한 평가자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법적인 경우 재능에 대한 추정이 노력의 배정에 대한 평가자의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호임무균형과 명료임무균형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모호임무균형은 명료임무균형에 비해 총 노력 수준이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공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혁신의 주된 축은 시장감시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IV. 시사점 및 한계

공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혁신의 주된 축은 시장감시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제Ⅲ장에서 살펴본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민간기업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주된 차이점이 성과에 대한 정보와 명시적 인센티브의 유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시장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정보와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산업규제적 측면을 제외하면 민간기업과 동일한 정보대칭성과 명시적 또는 화폐적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가 그러한데, 민간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더라도 최소한의 렌트 (rents)를 치루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거나 성과가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면 명시적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시장감시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명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OECD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표기한 ‘정통(informed)하고 능동적(active)인 소유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정보를 갖는 경우란, 공기업과 같이 관측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성과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이다.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해당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표기한 정통한 정부의



정부가 공기업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쌍방향 지배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능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적절한 투자모형에서 최적 지배구조로 쌍방향 지배구조가 도출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시사점으로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명시적 인센티브, 모니터링, 그리고 이력관리모형의 결과물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정보를 갖지 않는 경우란 관측 가능하지 않거나 관측 가능하여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아 소위 사적부문의 인센티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목적의 명료성과 성과정보의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할 부문이다. 제2절에서는 다중업무이론의 이력관리모형의 결과물들을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사점으로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의 사업평가에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방식과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1. 공공기관 지배구조: 쌍방향(Dual Model)

한국조세연구원

정부가 공기업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쌍방향(dual) 지배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이윤 극대화와 공공부문으로서의 비화폐적 목적함수 극대화를 안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화폐적 또는 비화폐적 이득은 공기업 관리자의 행위와 투자로 인해 발생하며 따라서 투자 결정에 대해 공기업 소유자의 기능이 긴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배구조가 주어진 상황에서 공기업 관리자가 노력하여 초기투자를 만들어 낸다고 하자. 초기투자비용을 보고 지배구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때 쌍방향 지배구조의 요체는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쌍방 중 정책결정자가 결정되어 사업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살펴보자. 관리자의 노력 정도가 성실히 일하는 것 e 와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 l , 두 개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⁴⁾. 관리자의 노력 정도에 따라 초기투자비용이 낮은 I_0 과 높은 I_1 , 두 개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관리자의 노력 정도는 초기투자비용의 결정에 대한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실할 때 저비용투자일 확률 x 은 태만할 때 저비용투자일 확률 y 보다 크다. 성실할 때 관리자에게 초래되는 비효율을 K , 태만할 때 관리자에게 초래되는 비효율을 0이라 가정한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실현될 이득 Δ 도 관리자의 노력에 확률적으로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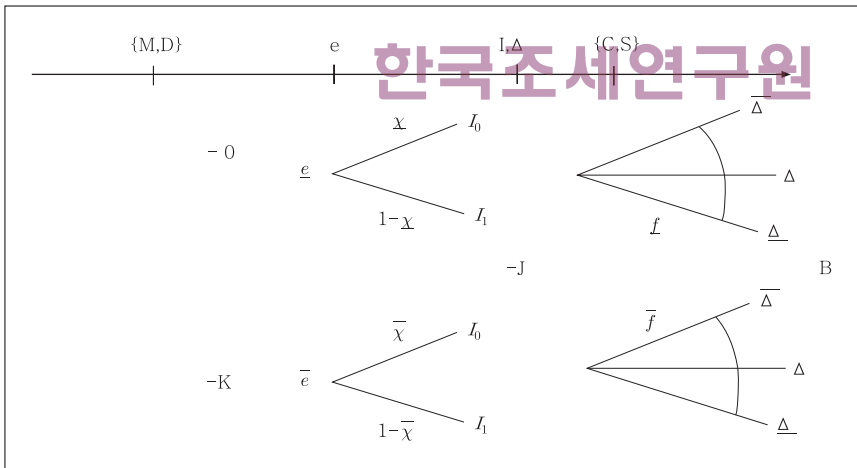
4) 물론 노력 정도가 연속적인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정성적으로 동일하다.

하며 지배구조의 결정 이전에 결정된다. $\Delta \in [\underline{\Delta}, \bar{\Delta}]$ 는 화폐적($\alpha\Delta$) 그리고 비화폐적($(1-\alpha)\Delta$)이득의 합으로, 관리자가 성실할 때는 $\bar{f}(\Delta)$ 의 확률밀도함수를 갖고 태만할 때는 $\underline{f}(\Delta)$ 의 확률밀도함수를 갖는다. 또한 관리자가 성실할 때의 누적분포함수를 $\bar{F}(\Delta)$, 태만할 때는 누적분포함수를 $\underline{F}(\Delta)$ 로 표기한다.

사업의 완성은 완성비용 $J > 0$ 를 초래하고 이득 Δ 를 실현시킨다. 또한 사업의 완성은 관리자에게 사적이득 B 도 실현시킨다고 가정한다. 사업의 중단은 공기업의 이득과 사적이득 그리고 완성비용 모두가 0이 되게 한다. 기술적인 가정으로 초기투자비용과 공기업 이득은 노력 정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건적이라고 하고, 또한 단조우도비율을 가정한다. [그림 8]은 투자모형의 시간순서를 나타낸다.

쌍방향 지배구조의 요체는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쌍방 중 정책결정자가 결정되어 사업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8] 투자모형의 시간순서



관리자가 성실하게 일할 제약하에서 사업완성으로부터의 기대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라면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_{(\Delta_0, \Delta_1)} \left\{ \bar{x} \int_{\Delta_0}^{\bar{\Delta}} (\Delta - J) \bar{f}(\Delta) d\Delta + (1 - \bar{x}) \int_{\Delta_1}^{\bar{\Delta}} (\Delta - J) \bar{f}(\Delta) d\Delta \right\} \quad (7)$$

subject to

$$B[\bar{x}(1 - \bar{F}(\Delta_0)) + (1 - \bar{x})(1 - \bar{F}(\Delta_1))] \geq B[\underline{x}(1 - \underline{F}(\Delta_0)) + (1 - \underline{x})(1 - \underline{F}(\Delta_1))] + K \quad (8)$$



성과정보가 계약에 사용될 정도로 증명 가능하다면 사적부문에서 사용하는 조건부적 지배구조를 공기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Δ_0 와 Δ_1 은 초기투자비용의 낮거나 높은 경우 각각 지배구조가 바뀌는 임계치(critical value)이다. 그러면, 위 극대화문제의 해인 두 개의 임계점은 $\Delta_0^* < J < \Delta_1^*$ 을 만족한다. 따라서 최적인센티브는 비용이 과다할 때 정부가 강성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최적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해 보자. 지배구조가 집권형인 경우, 사업완성의 필요충분조건은 $\Delta \geq J$ 이다. 이때 연성예산(soft budget)문제가 반복된다.

위에서 상정한 소위 쌍방향(dual) 지배구조는 극대화문제의 해인 최적완성 규칙의 시행을 위한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Delta_0 = \Delta$ 와 $\alpha\Delta_1 = J$ 인 경우를 살펴보자. 초기투자비용이 적절하면 통제권을 지출부서인 주무기관이 유지한다. 그러면 사업을 완성시킨다. 이 경우 $\Delta_0 = \Delta$ 가 실행된다. 초기투자비용이 초과하였다면 통제권을 재무부서에 넘긴다. 예산균형을 위해 $\Delta_1 = J/\alpha$ 가 실행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의 실현에 대해 의존적인 지배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최적지배구조임을 알 수 있다. 주무부서와 재무부서의 통제권에 대한 사전적 불완비계약은 일종의 조건부 공식으로 표현되며 쌍방향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성과정보가 계약에 사용될 정도로 증명 가능하다면 사적부문에서 사용하는 조건부적 지배구조를 공기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소위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조건부적 지배구조는 채권자와 주주를 두 소유주로 인식하는 불완비계약에서 파산 관련 조항에 주로 나타난다.

2. 평가대상 사업규모 및 목표 명료성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기관이나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사업이 하나의 성과목표에 해당한다고 하자. 이때 하나의 사업은 재정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은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가정하자. 통상적으로 현재 성과관리제도 환경하에서 재정사업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진행된다.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성과지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진다. 주요 정책사업에도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과목표에도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평가될 예정이다.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통상적으로 두 사업의 성과지표의 합이나 가중치 또는 선형함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과 재능, 그리고 불확실성이 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다중업무 정규모형의 제



가정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환류로 두 사업 모두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고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환류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만이 반영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재무관리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유의미하여 모두 활용가능하고 주요 정책과제 성과지표를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 의존하는 기존 평가체계가 부서 관리자의 총 노력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법적인 경우 [정리 1]의 (i)에 의해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사업의 수가 많을수록 총 노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각 부서에 할당되는 최적사업 수는 1개이어야 한다. 이는 전문성 강화로 이해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업무평가에 대해 적용하면 일종의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가 재정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성과평가를 받는 부서단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모형에서 관리자가 담당하는 사업의 수 n 이 감소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자의 노력과 재능이 가법적인 경우 [정리 1]의 (i)은 평가방식의 변화에 따라 균형노력 수준이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평가방식의 변화가 사업할당의 최적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⁵⁾.

둘째, 최근 재정사업자율평가방식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균형을 유도하여 관리자에게 양(+)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관리자의 노력과 재능이 승법적인 경우 [정리 1]의 (ii) 또는 [그림 7]에 의해 무(無)의 노력을 갖는 균형에서 양(+)의 노력을 갖는 균형으로의 변화를 볼 수도 있다.

셋째, 인사관리 측면에서 두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어떤 것이 성과지표로서 유의미한지에 따라 평가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관측 가능하고 이 지표에 평가의 실익이 의존한다면 부서는 두 사업 모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때 주요 정책과제의 성과지표가 관측 가능하고 이 지표를 통해 평가의 실익이 의존되도록 평가체계를 바꿀 경우를 상정해 보자. 노력과 재능이 가법적인 경우 [정리 2]의 (i)에 의해 균형이 유일하며 총 성과나 개별 성과나 관리자의 총 노력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과정보의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노력과 재능이 승법적인 경우 부서는 주요 정책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때의 총 노력은 평가체계를 바꾸기 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리 2]의 (ii)의 요점이다.

넷째, 임무가 모호한 경우보다 명료한 경우 총 노력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사업의 수가 많을수록 총 노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각 부서에 할당되는 최적사업 수는 1개이어야 한다. 이는 전문성 강화로 이해될 수도 있다.

5)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력 관리모형의 제 가정들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무가 모호한 경우보다
명료한 경우 총 노력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목표체계의
설정 시 임무에 대한
명료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과목표체계의 설정 시 임무에 대한 명료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리자의 노력과 재능이 가법적인 경우 모호성과 명료성의 차이는 [정리 3]의 (i)과 같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관리자의 노력과 재능이 승법적이어서 보완적인 경우 [정리 3]의 (ii)에 의해 명료성의 증가는 노력 수준의 제고를 낳는다. 승법적인 경우 [정리 1]의 (ii)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감소하면서 임계치를 넘기면 균형의 수가 노력이 없는 유일균형에서 노력 정도가 다른 2개 이상의 균형으로 바뀐다. 이때 균형의 다수성에 의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인 상황이 되며 이때 균형노력 수준에 대한 미래고용자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분석의 한계

본고에서는 주로 다중업무이론에서 재능과 노력의 관계가 가법적인 경우와 승법적인 경우 차이가 있음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공공부문 평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차이를 성과정보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에 유의미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KIP**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2006
 OECD 공기업민영화및지배구조 Working Group,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안)』, 2004
 Dewatripont, M., I. Jewitt, and J. Tirole, “The Economics of Career Concerns, Part I: Comparing Information Structu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 1999, pp. 183~198
 Dewatripont, M., I. Jewitt, and J. Tirole, “The Economics of Career Concerns, Part II: Application to Missions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 1999,



pp. 199~217

Holmstrom, B. "Managerial Incentive Problem: A Dynamic Perspective," in *Essays in Economics and Management in Honor of Lars Wahlbeck*, Helsinki: Swedish School of Economics. Reappeared as a paper in 1999 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 1982, pp. 169~182

OECD, Comparative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Tirole, J.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Government," *Oxford Economic Papers* 46: 1994, pp. 1~29

한국조세연구원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ecpmh@kipf.re.kr)

I. 문제의 제기

한국조세연구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소비과세(a general tax on consumption)¹⁾의 한 형태로서, 모든 생산 또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고 동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 즉 판매자는 각 생산 또는 거래단계의 공급자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부과·납부하고, 자신들이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체계의 장점은 부가가치세가 궁극적으로 소비에는 부과되지만, 생산자 사이의 중간거래(intermediate transactions)에 있어서는 완전한 환급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간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서 생산자들이 사고 팔 때 직면하는 생산자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투입물(input)에 대한 선택이 바뀌게 되어 생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77년에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³⁾. 또한 중간 투입물의 구입처럼 투자재(investment goods)의 구입시에 지불한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해 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체계이다. 그리고 수출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수입품은 부가가치세 과

1) 부가가치세는 가능한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일반세(a general tax)이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에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로서 소비세(a tax on consumption)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을 상정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을 사용한다고 전제한다.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명근·나성길(2007)을 참조하라.
3)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제외하더라도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개(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일종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단일세율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면세제도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순수한 소비세(pure consumption tax)’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도입 시점부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과세의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경제·사회 정책적인 배려⁴⁾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폭넓은 분야들에 대해 면세(exemption)를 허용하고 있다⁵⁾. 이러한 분야의 생산자들은 자신의 산출물(output)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자신들이 투입물을 구입할 때 지불하였던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면세제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일부 중간 투입물이 사실상 과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생산의 왜곡을 낳지 않는다는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⁶⁾. 또한 면세제도로 인해 중간 투입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완전히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목 부가가치세율과 유효 부가가치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세부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원칙적으로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분석에서 있어서 계산의 단순성 및 편리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명목세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면세제도로 인한 유효세율과 명목세율간의 괴리를 간과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별 유효세율을 계산하고, 그 유효세율을 바탕으로 가계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분석을 수행한 후 명목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예제를 통해 면세제도로 인하여 법정 부가가치세율과 유효 부가가치세율이 상이해지는 경우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03년도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404개 기본부문들에 대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제Ⅳ장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분석을 유효세율을 통해 수행한다. 또한 세부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을 사용함에 따라 세부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시사점 및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면세제도로 인해
중간 투입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완전히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목 부가가치세율과
유효 부가가치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4) 자연상태에서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와 용역(예: 의료용역)과 도서와 같이 소비가 권장되어야 할 재화(meritorious goods)가 해당된다.
5) 현행 면세허용 범위 및 그에 대한 논의는 김승래 등(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생산의 왜곡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간 투입물을 가급적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려는 면세사업자에 의한 투입물 선택의 왜곡이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중간 투입물의 세함가격이 작은 쪽을 선택할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간투입물을 가급적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려는 일반사업자에 의한 투입물 선택의 왜곡이다. 이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면세상품을 중간 투입물로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상품이 아닌 과세상품을 중간 투입물로 구매하려는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하여
 후속 생산단계 및 소비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된다.

II. 면세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예시

원칙적으로 면세제도가 없는 경우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동일하지만 면세가 도입되면 이 두 세율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속 단계에서 정상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와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한다⁷⁾⁸⁾. 이 두 효과로 인하여 후속 생산단계 및 소비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된다. 또한 최종 생산단계에서 면세된 재화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소비자는 그 부분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⁹⁾.

면세제도가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례를 상정하자. 원목회사가 원목을 채취하고 이를 목재회사가 가공하여 목재를 만들고 가구회사에 제공하여 가구가 만들어지며 이를 최종 소비자가 가구회사로부터 구입한다고 하자. 원목회사는 원목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중간투입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만을 통해 10만원어치의 원목을 생산했다고 하자. 목재회사는 원목을 구입하여 목재를 생산하면서 10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하자. 또한 가구회사는 이렇게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생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0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때 각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들은 조세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유효 부가가치세율은 Gottfried and Wiegard(1991)가 제시한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어느 한 상품에서의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은 다음의 두 가지 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첫 번째 가격은 면세제도를 가진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결정된 세금이 포함된 판매가격, 즉 공급대가이다. 두 번째 가격은 요소가격과 중간 투입물 사용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의 균형 수량(equilibrium quantities)을 부가가치세가 제거되더라도 달성하는 판매가격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균형 수량을 부가가치세가 제거되더라도 달성하는 판매가격이란 바로 그 산업부문 또는 상품의 누적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첫 번째 가격으로부터 두 번째 가격을 차감한 결과인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가격인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유효세율이 도출된다.

아래의 <표 1>은 중간 생산단계인 목재회사가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 각 생산단계별 유효 부가가치세율과 명목 부가가치세율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7) 환수효과란 중간 생산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후속단계에서 정상 과세된다면 면세의 효과, 즉 중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사라지고 국고로 다시 회수됨을 말한다. 이는 후속단계에서 당해 생산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기초한 세액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또한 누적효과란 면세 이전의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이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후속단계에서 다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8)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면세제도의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액, 즉 세수가 면세조치로 인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다.

9) 이 부분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영세율은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지만 여전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생산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최종 소비자는 최종 생산단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각 상품별로 유효세율을 보면, 원목의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은 공급대가 11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인 10만원을 차감한 1만원이며, 이를 매출액 10만원으로 나눠준 것이 유효세율이다. 따라서 유효세율은 10%로서 명목세율이 동일하다.

목재회사의 경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만원이고 매출액은 매입액에 부가가치를 합한 21만원이 된다. 공급대가는 면세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같은 21만원이고 여기에서 누적 부가가치액인 20만원을 빼면 유효 세부담액인 1만원이 도출된다. 이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유효세율이 계산된다. 즉 유효세율은 1만원/21만원×100 = 4.8%가 된다. 따라서 면세로 인하여 명목세율(0%)과 유효세율(4.8%)이 상이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회사의 경우는 면세된 중간 투입물인 목재를 21만원에 구입하고 자신의 부가가치 10만원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매출액 또는 생산자 가격은 31만원이고, 10%의 명목세율을 적용하면 공급대가는 34.1만원이 된다. 따라서 유효 세부담액은 공급대가 34.1만원에서 누적 부가가치 30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이 된다. 이를 매출액 31만원으로 나눠주면 유효세율은 4.1만원/31만원*100 = 13.2%로 계산된다. 비록 가구회사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지만 면세상품을 중간 생산단계에서 사용함에 따라 환수효과(1만원)와 누적효과(1.1만원)로 말미암아 유효세부담이 명목세부담보다 더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효세율(13.2%)이 명목세율(10%)보다 더 높게 되었다.

비록 가구회사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지만 면세상품을 중간 생산단계에서 사용함에 따라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말미암아 유효세부담이 명목세부담보다 더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더 높게 되었다.

〈표 1〉 부가가치세 유효 세율의 계산 예시: 목재회사가 면세인 경우

(단위: 천원)

거래단계	매입액 ①	부가가치 ②	매출액 ③=①+ ②	명목세율 ④	매출세액 ⑤=③× ④	매입세액 ⑥	납부세액 ⑦=⑤- ⑥	공급대가 ⑧=③+ ⑤	유효세율 ⑨=(⑧- ⑦)/③
원목회사	0	100	100	10%	10	0	10	110	10%
목재회사	110	100	210	0%	0	-	0	210	4.8%
가구회사	210	100	310	10%	31	-	31	341	13.2%
계	-	300	-	-	-	-	41	-	

주: 매입액은 원칙적으로 세발가격이나 면세단계와 그 후속단계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함가격이다.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세의 정상과세와 면세를 비교적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분류인 404개 기본분문을 선택하고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Ⅲ.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유효세율 계산

본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개념을 활용하여 면세제도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별로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 재화 또는 용역마다 중간투입물로 무엇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정보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정보는 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분류와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세의 정상과세와 면세를 비교적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분류인 404개 기본분문을 선택하고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¹⁰⁾.

또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에서 논의된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개념은 요소가격과 중간 투입물 사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로부터 도달한 균형을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만 면세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있는 가격을 손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산요소 가격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일반균형모형이 아니라 부분균형의 속성을 지닌 모형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개념에 따른 유효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¹¹⁾. 먼저, 재화 i 의 1단위당 부가가치를 v_i 라고 하자. 이때 부가가치 v_i 는 그 정의에 의해 재화 i 의 1단위당 생산자 가격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중간 투입재 비용의 합과 차이와 같다.

$$v_i = p_i - \sum_{j=1}^n a_{ji} [p_j + (1 - \delta_i) t_j p_j], \quad i = 1, 2, \dots, n \quad (1)$$

여기서 p_i 는 면세제도를 가진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의 재화 i 에 대한 생산자 가격을 나타낸다. a_{ji} 는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로 재화 i 를 1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화 j 의 투입량을 나타낸다. δ_i 는 0과 1을 갖는 더미변수로 재화

10) 산업연관표는 물량단위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액의 평균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분석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2003년 산업연관표의 경우 구매자가 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 가격평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 가격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점의 가격으로서 유통마진이 포함되지만 생산자 가격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생산자 출하가격을 나타낸다. 한편 생산자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간접세가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11) 이는 Marks(2003)의 유효세율 계산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i 가 면세이면 0이고 정상 과세되면 1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t_j 는 재화 j 의 명목세율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화 j 가 면세인 경우 $t_j=0$ 이고 재화 j 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 $t_j=0.1$ 이다. n 은 재화 또는 부문의 숫자로 본 연구에서는 404개 기본부문에 대한 유효세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n=404$ 이다.

위의 식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재화 j 가 정상 과세되고 그 재화를 중간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 i 가 면세인 경우 즉 $t_j > 0$ 이고 $\delta_i = 0$ 인 경우에만 재화 i 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간 투입물 j 의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재화 j 가 면세이거나 재화 i 가 정상과세인 경우 즉 $t_j = 0$ 이거나 $\delta_i = 1$ 인 경우 재화 i 를 생산하는 기업은 그 중간 투입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완전히 환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재화 j 의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제 부가가치세제가 없는 경우¹²⁾의 재화 i 의 1단위당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다.

$$\nu_i = \tilde{p}_i - \sum_{j=1}^n a_{ji} \tilde{p}_j, \quad i=1,2,\dots,n \quad (2)$$

한국조세연구원

여기서 \tilde{p} 는 부가가치세제가 없는 경우에서 재화 i 의 생산자 가격을 나타낸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개념하에서는 요소가격과 중간 투입물 사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식 (2)의 ν_i 와 a_{ji} 는 식 (1)의 그것과 값이 일치한다.

식 (1)과 식 (2)를 모두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nu = (I - A')p - (I - \Delta)A'Tp \quad (3)$$

$$\nu = (I - A')\tilde{p} \quad (4)$$

여기서 ν 는 재화 1단위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I 는 $n \times n$ 항등행렬(identity matrix)이다. A' 은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의 전치행렬이다. 따라서 A' 의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에 있는 원소는 a_{ji} 가 된다. Δ 는 면세여부 더미인 δ 를 주대각선상의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고, T 는 명목세율 t 를 주대각선상의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이다. p 는 면세제도가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의 생산자 가격 벡터이고, \tilde{p} 는 부가가치세제가 없는 가상적인 경제의 생산자 가격 벡터이다.

Gottfried and Wiegard (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개념하에서는 요소가격과 중간 투입물 사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¹²⁾ 면세제도가 없는 부가가치세제를 상정해도 무방하다.



도출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문에서 중간 투입물로 면세된 재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요소가격과 중간 투입물 사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해 식 (3)과 (4)의 좌변에 있는 부가가치 벡터들은 서로 일치하므로 식 (3)에서 식 (4)를 차감하면 정리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0 = (I - A')(p - \tilde{p}) - (I - \Delta)A'Tp \quad (5)$$

위의 식 (5)가 의미하는 바는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로 인하여 p 와 \tilde{p} 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 면세제도로 인한 단위당 부가가치세 부담 벡터를 $\tilde{\tau}$ 라고 하면, $\tilde{\tau} = p - \tilde{p}$ 가 성립한다. $\tilde{\tau}$ 를 계산하기 위해 식 (5)를 조작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tilde{\tau} = p - \tilde{p} = (I - A')^{-1}(I - \Delta)A'Tp \quad (6)$$

또한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단위당 명목 세 부담 벡터를 τ 라고 하면, $\tau = Tp$ 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위당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 벡터를 τ^e 라고 정의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tau^e = \tau + \tilde{\tau} = [I + (I - A')^{-1}(I - \Delta)A']Tp \quad (7)$$

따라서 재화 i 에 대한 단위당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은 $\tau_i^e = \tau_i + \tilde{\tau}_i$ 이다. 그리고 재화 i 의 유효 부가가치세 세율을 t_i^e 라고 정의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t_i^e = \frac{\tau_i^e}{p_i} = \frac{\tau_i + \tilde{\tau}_i}{p_i} \quad (8)$$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연관표는 각주 9)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량단위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되어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위의 식 (8)을 통해 각 재화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계산할 때 $p_i = 1$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404개 기본부문의 유효부가가치세율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도출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의 예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느 부문에서 중간 투입물로 면세된 재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404개 기본부문의 첫 번째 부문인 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명목세율은 0이다. 그러나 벼를 생산함에 있어서 정상 과세대상인 섬유·가죽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을 중간 투입물로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세율은 약 0.8%로 나타났다. 특히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개념하에서는 식 (6)에서 알 수 있듯이 면세제도로 인한 세부담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Gottfried and Wiegard (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개념하에서는 면세제도로 인한 세부담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IV.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본장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3년도 가계조사 자료¹³⁾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산하기 위해 제Ⅲ장에서 구한 산업연관표 404개 기본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활용한다. 개별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각 소비지출항목별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합이며, 소비지출항목별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위의 식 (8)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au_i^e = t_i^e p_i = \frac{t_i^e}{(1+t_i^e)} q_i \quad (9)$$

여기서 q_i 는 소비자 가격으로 $q_i = p_i(1+t_i)$ 이고, 가계조사 자료의 각 소비항목의 지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소비항목이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세율이 0이 아니면 세부담액이 0이 아니며, 그 크기는 지출액(q_i)과 유효세율(t_i^e)을 곱한 값이 된다.

본장에서는 2003년 가계조사 자료에서 12개월 모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¹⁴⁾¹⁵⁾. 아래의 <표 2>는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사용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률 분포를 나타낸다.

한국조세연구원

13) 가계조사는 1942년부터 실시된 법정 국가기본 통계조사로서 1963년부터는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도시 비농가만을 조사하던 도시가계조사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 비농가까지 확대되면서 가계조사로 불리고 있다. 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조사 개요』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이러한 표본선택에 의해 분석에 사용된 가구의 수는 3,205 가구이다. 12개월 모두 응답한 가구를 사용한 이유는 성명재(2002)가 언급한 연간 단위로 소득 및 소비변수들을 전환할 때 계절성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명재(2002)가 주목한 표본선택의 편의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15) 12개월 모두 응답한 가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들, 각 분기당 적어도 한 번 응답한 가구들, 7번 이상 응답한 가구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결과 평균소비성향의 체감 및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주어진 가중치를 고려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즉,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부가가치세 부담률 분포: 유효세율 적용

분 위	평균소비성향 ¹⁾ (%)	세부담액 (만원)	평균 세부담률 ²⁾ (%)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40.3	62.0	9.78	7.17
2	80.1	87.2	5.77	7.39
3	75.4	107.5	5.43	7.49
4	71.4	122.2	5.19	7.43
5	66.5	137.1	4.97	7.39
6	62.7	147.6	4.64	7.39
7	58.9	158.5	4.36	7.30
8	58.3	183.8	4.33	7.36
9	52.9	201.1	3.94	7.32
10	46.7	254.4	3.49	7.43
평균	71.3	146.1	5.19	7.37

주: 1) 평균소비성향은 소득 대비 부가가치 대상 소비지출액이고,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 상소득의 합이며, 소비지출은 비내구재와 내구재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의 합으로 각종 세금, 준조세, 경조사비 및 기타잡비 등은 제외된다.
2)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 대비 세부담률의 역진성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다만 그 정도가 줄어들었다.

먼저 〈표 2〉의 두 번째 열은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평균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즉,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의 전체적인 평균은 약 71%이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집단에서는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그 비율이 낮아져서 10분위 집단에서는 평균적인 평균소비성향이 약 4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세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평균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수준이 늘어나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합치한다.

한편 〈표 2〉의 네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은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나타낸다. 특히 네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률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 열은 소비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여준다. 이는 평균소비성향이 체감하기 때문에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모든 소



비자 구매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체계하에서는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서 역진성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다섯 번째 열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은 역진적이지 않고 거의 모든 분위에서 약 7.2~7.5% 수준으로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연간 소득 대비 소비세 부담률보다 일생소득의 대리변수인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은 덜 역진적이라는 Poterba(1989)의 결과와 부합한다. 이처럼 네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의 결과로부터 세부담률을 계산하는 시계(time horizon)의 길이에 따라 세부담의 분포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액 비율이 왜 역진성을 갖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분위에 속한 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들은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생필품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후생적인 관점에서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비지출 중 면세 관련 소비지출의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최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면세지출의 비중이 약 39%이고, 최상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약 34%로 겨우 5%포인트 정도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소비지출 1만원당 최상위 소득계층은 평균적으로 약 745원의 세부담을 감당하는 데 반하여 최하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은 약 715원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출 대비 세부담은 소득 계층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소득 대비 지출은 저소득층일수록 확연히 큼에 따라 소득 대비 세부담도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의 국내문헌¹⁶⁾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효 부가가치세율이 아니라 명목세율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3>은 명목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 및 부담률 분포이다. 명목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성명재(1993)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면세로 판단되는 소비항목 지출에는 0, 정상과세로 판단되는 소비항목 지출액에는 1/11을 곱하여 도출한다. <표 3>의 두 번째 열은 이러한 세부담액을 나타낸다.

명목세율을 적용할 때의 세부담액 분포는 저소득 분위에서 낮고, 소득이 증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액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여준다.

한국조세연구원

16) 예를 들면 성명재(1993, 2002)를 참조하라.



명목세율을 적용한 경우
세부담률 분포 형태에서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즉, 소득 대비
세부담률은 역진적이지만
소비기준으로 보면 5.0%
수준에서 거의 비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할수록 높아져서 유효세율을 적용할 때의 세부담액 분포의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담액 수준에서는 대체로 유효세율에서의 세부담액이 평균적으로 명목세율에서의 세부담액보다 1.2~1.3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그 배율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약 1.25를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

또한 명목세율을 적용한 경우 세부담률 분포 형태에서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즉, 소득 대비 세부담률은 역진적이지만 소비기준으로 보면 5.0% 수준에서 거의 비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 2>에서 보여준 유효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부담률 분포와 유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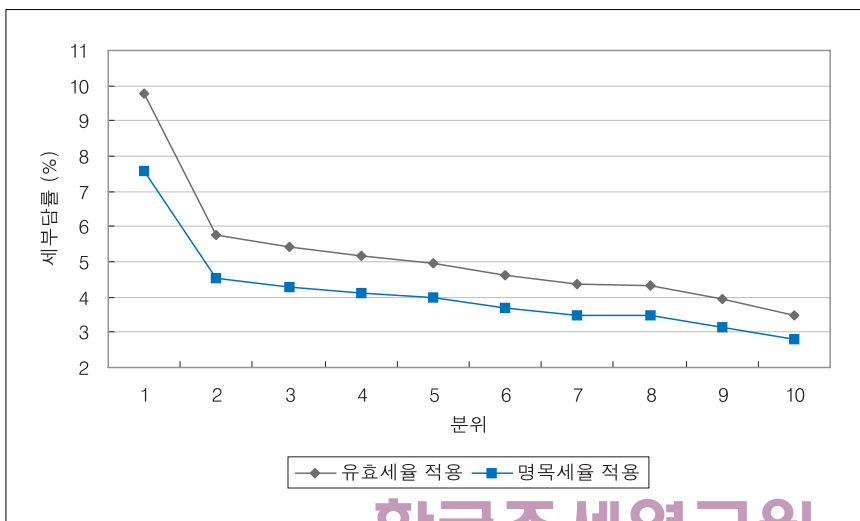
<표 3> 부가가치세 부담률 분포: 명목세율 적용

분위	세부담액 (만원)	세부담률 (%)	
		소득기준	소비기준
1	48.1	7.59	4.81
2	68.6	4.53	5.03
3	84.6	4.29	5.12
4	96.4	4.10	5.05
5	110.1	4.00	5.19
6	117.1	3.68	5.09
7	126.0	3.47	5.06
8	147.2	3.47	5.14
9	160.6	3.15	5.07
10	204.5	2.80	5.02
평균	116.3	4.11	5.06

아래의 [그림 1]은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명목세율을 적용하는 것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명목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부담률 수준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역진적인 모습에서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특히 유효세율을 적용할 때 세부담률의 증가가 저분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일정한 배수(1.2~1.3배)만큼 세부담률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 유효세율 대 명목세율

세부담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효세율 개념이 아닌 명목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득분배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조세연구원

그러나 세부담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효세율 개념이 아닌 명목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득분배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약 0.3084 이지만 역진성을 지닌 부가가치세 부담을 고려한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더 커져서 소득분배가 더 악화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세후 소득을 계산할 때 명목세율을 사용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0.3119로서 유효세율을 사용할 때의 지니계수 0.313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계산할 때 명목세율을 사용하는 경우 세후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V. 결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제도로 인하여 순수한 소비세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즉 면세제도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완전히 환급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법정세율 또는 명목세율과 유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을 서로 다르게 만든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니라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인 2003년도 산업연관표상의 404개 기본부문을 활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가 제시한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각 부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부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유효세율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및 영세율 규정은 산업연관표의 가장 세세분류인 404개 기본 산업분류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면세 및 영세율 규정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사용자 또는 제공자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복잡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구함에서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 부가가치세율 개념은 중간 투입물과 생산요소 가격이 고정되었다는 가정을 사용함에 따라 완전한 일반 균형론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는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을 서로 다르게 만든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니라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유효세율을 2003년도 가계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부담액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세부담률은 감소하는 역진적인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생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소비지출을 사용할 경우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은 그 다지 역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례적인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소비구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생필품보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교육용역의 실효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지출 100원당 세부담액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와 관련된 결과들을 명목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들과 비교·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부담액 및 세부담률 수준의 경우 유효세율을 적용한 것이 훨씬 높게 나왔다. 그리고 세후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할 때 명목세율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담의 크기나 세부담률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보다 유효세율을 사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률이 감소하는 역진적인 현상은 두 계산방식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만을 검토하는 경우 명목세율을 사용해도 무방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계조사의 각 소비지출 항목의 면세, 영세율, 정상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산업연관표의 경우처럼 연구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성명재,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최명근 · 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7.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

Ebrill, L., M. Keen, J. Bodin, and V. Summers, *The Modern VA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1.

Gottfried, P. and W.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 1991.

Marks, S. V., “The Value Added Tax in Indonesia: The Impact of Sectoral Exemptions on Revenue Potential and Effective Tax Rates,” 2003.

Poterba, J. M., “Lifetime Incidence and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Excise Tax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2, 1989, pp. 325~330

〈부록〉 404 기본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단위: %)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0001	벼	0	0.83	0039	모래및자갈	1	10.24
0002	보리	0	1.69	0040	쇄석	1	10.18
0003	밀	0	2.91	0041	기타 건설용석재	1	10.24
0004	잡곡	0	2.03	0042	석회석	1	10.22
0005	채소	0	1.16	0043	요업원료광물	1	10.26
0006	과실	0	1.42	0044	원염	1	10.25
0007	콩류	0	0.76	0045	기타 비금속광물	1	10.41
0008	감자류	0	1.07	0046	도축육	0	7.00
0009	유지작물	0	0.58	0047	가금육	0	7.51
0010	약용작물	0	0.75	0048	육가공품	1	12.21
0011	기타 식용작물	0	0.67	0049	우유	1	14.14
0012	섬유작물	1	10.09	0050	유제품	1	12.26
0013	잎담배	0	1.03	0051	아이스크림	1	10.73
0014	화훼작물	0	1.60	0052	어육 및 어묵	1	12.20
0015	천연고무	1	10.00	0053	수산통조림	1	12.64
0016	증자및묘목	1	10.36	0054	수산냉동품	0	5.15
0017	기타 비식용작물	1	10.46	0055	수산저장품	0	6.24
0018	낙농	0	6.82	0056	기타 수산식품	0	5.60
0019	한육우	0	6.47	0057	정미	0	0.82
0020	양돈	0	8.42	0058	정맥	0	1.63
0021	가금	0	7.80	0059	제분	0	3.70
0022	기타축산	0	3.90	0060	원당	1	10.00
0023	육림	0	1.49	0061	정제당	1	10.19
0024	원목	1	10.74	0062	전분	1	11.49
0025	식용임산물	0	0.45	0063	당류	1	10.96
0026	기타 임산물	0	1.49	0064	빵 및 곡분과자	1	11.10
0027	해면어종	0	4.97	0065	설탕과자	1	10.59
0028	내수면어종	0	3.15	0066	국수류	1	11.15
0029	해면양식어종	0	5.16	0067	정제염	0	7.14
0030	내수면양식어종	0	6.40	0068	발효조미료	1	10.43
0031	무연탄	0	5.10	0069	기타조미료	1	10.91
0032	유연탄	1	10.00	0070	장류	1	10.72
0033	원유	1	10.00	0071	동물성유지	1	13.47
0034	천연가스(LNG)	1	10.00	00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1	10.75
0035	철광석	1	10.28	00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1	10.70
0036	동광석	1	10.00	0074	커피 및 차류	1	10.63
0037	연및아연광석	1	10.00	0075	인삼식품	1	10.52
0038	기타비철금속광석	1	10.40	0076	누룩 및 맥아	1	11.07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0077	두부	0	2.96	0118	제재목	1	10.59
0078	기타 식료품	1	10.94	0119	합판	1	10.47
0079	주정	1	10.65	0120	재생 및 강화목재	1	10.37
0080	소주	1	10.27	0121	건축용목제품	1	10.44
0081	맥주	1	10.23	0122	목제용기	1	10.38
0082	기타주류	1	10.39	0123	기타목제품	1	10.38
0083	청량음료	1	10.57	0124	펄프	1	10.60
0084	생수 및 얼음	1	10.27	0125	신문용지	1	10.43
0085	배합사료	1	11.01	0126	인쇄용지	1	10.40
0086	담배	1	10.21	0127	기타원지및판지	1	10.45
0087	견사	1	10.73	0128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	10.37
0088	모사	1	12.49	0129	종이용기	1	10.35
0089	면사	1	10.21	0130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	10.39
0090	마사	1	10.23	0131	위생용종이제품	1	10.46
0091	재생섬유사	1	10.61	0132	기타종이제품	1	10.42
0092	합성섬유사	1	10.32	0133	신문	0	7.15
0093	재봉사및기타섬유사	1	10.38	0134	출판	0	6.71
0094	견직물	1	10.46	0135	인쇄	1	10.29
0095	모직물	1	11.16	0136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0	7.32
0096	면직물	1	10.23	0137	연탄	0	7.93
0097	마직물	1	10.36	0138	기타석탄제품	1	10.10
0098	재생섬유직물	1	10.42	0139	나프타	1	10.05
0099	합성섬유직물	1	10.36	0140	휘발유	1	10.03
0100	기타섬유직물	1	10.32	0141	제트유	1	10.05
0101	편조원단	1	10.31	0142	등유	1	10.07
0102	섬유표백및염색	1	10.44	0143	경유	1	10.06
0103	편직제의류	1	10.53	0144	중유	1	10.06
0104	편직제장신품	1	10.44	0145	액화석유가스	1	10.07
0105	직물제의류	1	10.48	0146	윤활유제품	1	10.27
0106	기타장신품	1	10.66	0147	기타석유정제품	1	10.15
0107	가죽의류	1	11.86	0148	석유화학기초제품	1	10.12
0108	모피의류	1	11.66	0149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23
0109	직물제품	1	10.34	0150	석탄화합물	1	10.24
0110	기타섬유제품	1	10.26	0151	기타기초유기화합물	1	10.42
0111	끈,로프및어망	1	10.30	0152	산업용가스	1	10.33
0112	가죽	1	13.23	0153	기초무기화합물	1	10.42
0113	모피	1	12.07	0154	합성수지	1	10.26
0114	가방및핸드백	1	10.66	0155	합성고무	1	10.37
0115	가죽신발	1	11.10	0156	재생섬유	1	10.65
0116	운동화 및 기타신발	1	10.64	0157	합성섬유	1	10.32
0117	기타가죽제품	1	11.19	0158	질소화합물	1	10.28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0159	비료	2	0.41	0200	열간압연강재	1	10.38
0160	농약	2	0.48	0201	강관(주철강관제외)	1	10.34
0161	의약품	1	10.75	0202	냉간압연강재	1	10.36
0162	화장품및치약	1	10.61	0203	주철물	1	10.44
0163	비누및세제	1	10.64	0204	단조물	1	10.33
0164	염료, 안료및유연제	1	10.39	0205	표면처리강재	1	10.38
0165	도로	1	10.35	0206	기타철강1차제품	1	10.37
0166	잉크	1	10.39	0207	동괴	1	10.13
0167	접착제및젤라틴	1	10.36	0208	알루미늄괴	1	10.39
0168	화약및불꽃제품	1	10.38	0209	연 및 아연괴	1	10.22
0169	전자기기용기록매체	1	10.41	0210	금은괴	1	10.21
0170	사진용화학제품	1	10.41	0211	기타 비철금속괴	1	10.36
0171	기타화학제품	1	10.36	0212	동1차제품	1	10.19
0172	플라스틱1차제품	1	10.32	0213	알루미늄1차제품	1	10.37
0173	산업용플라스틱제품	1	10.29	0214	기타비철금속1차제품	1	10.33
0174	가정용플라스틱제품	1	10.28	0215	건물용금속제품	1	10.32
0175	타이어및튜브	1	10.29	0216	구조물용 금속제품	1	10.31
0176	산업용고무제품	1	10.28	0217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	1	10.34
0177	기타고무제품	1	10.33	0218	금속포장용기	1	10.32
0178	판유리및1차유리	1	10.36	0219	공구류	1	10.35
0179	산업용유리제품	1	10.31	0220	나사제품	1	10.30
0180	기타유리제품	1	10.43	0221	철선제품	1	10.30
0181	산업용도자기	1	10.42	0222	부착용금속제품	1	10.29
0182	가정용도자기	1	10.59	0223	금속처리	1	10.24
0183	내화요업제품	1	10.35	0224	가정용금속제품	1	10.32
0184	건설용점토제품	1	10.32	0225	기타금속제품	1	10.33
0185	시멘트	1	10.51	0226	내연기관 및 터빈	1	10.41
0186	레미콘	1	10.39	0227	밸브	1	10.26
0187	콘크리트제품	1	10.43	0228	베어링, 기어및전동요소	1	10.29
0188	석회및석고제품	1	10.47	0229	산업용운반기계	1	10.36
0189	석제품	1	10.28	0230	공기조절장치및냉장냉동장비	1	10.34
0190	석면및암면제품	1	10.42	0231	보일러	1	10.40
0191	연마제	1	10.32	0232	난방및조리기기	1	10.41
0192	아스팔트제품	1	10.25	0233	펌프및압축기	1	10.35
0193	기타토석제품	1	10.34	0234	공기및액체여과청정기	1	10.39
0194	선철	1	10.53	0235	기타일반목적용기계	1	10.36
0195	합금철	1	10.36	0236	금속절삭가공기계	1	10.30
0196	조강	1	10.44	0237	금속성형처리기계	1	10.40
0197	철근및봉강	1	10.39	0238	농업용기계	2	0.38
0198	형강	1	10.37	0239	건설및광물처리기계	1	10.43
0199	선재및계조	1	10.38	0240	음식품가공기계	1	10.46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0241	섬유기계	1	10.36	0282	승합차	1	10.42
0242	금형및주형	1	10.30	0283	화물자동차	1	10.38
0243	제지및인쇄용기계	1	10.50	0284	특장차	1	10.34
0244	반도체제조용기계	1	10.37	0285	자동차용엔진	1	10.42
024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	10.38	0286	자동차부분품	1	10.32
0246	발전기및전동기	1	10.37	0287	트레일러및컨테이너	1	10.41
0247	변압기	1	10.32	0288	강철제선박	1	10.30
0248	기타전기변환장치	1	10.31	0289	기타선박	1	10.28
0249	전기공급및제어장치	1	10.28	0290	선박수리및부분품	1	10.35
0250	전선및케이블	1	10.25	0291	철도차량	1	10.37
0251	전지	1	10.42	0292	항공기	1	10.43
0252	전구램프및조명장치	1	10.38	0293	모터사이클	1	10.35
0253	기타 전기장치	1	10.38	0294	자전거및기타운수장비	1	10.36
0254	전자관	1	10.35	0295	목재가구	1	10.41
0255	평면 디지털 표시장치	1	10.36	0296	금속가구	1	10.36
0256	개별소자	1	10.39	0297	기타가구	1	10.48
0257	집적회로(IC)	1	10.39	0298	장난감및오락용품	1	10.32
0258	저항기및축전기	1	10.32	0299	운동및경기용품	1	10.55
0259	전자코일및변성기	1	10.31	0300	악기	1	10.43
0260	인쇄회로기판	1	10.25	0301	문방구	1	10.40
0261	기타전자부품	1	10.42	0302	귀금속및보석	1	10.32
0262	TV	1	10.50	0303	모형및장식용품	1	10.41
0263	VTR	1	10.45	0304	기타제조업제품	1	10.47
0264	음향기기	1	10.45	0305	수력	1	10.24
0265	기타영상·음향기기	1	10.49	0306	화력	1	10.22
0266	유선통신기기	1	10.41	0307	원자력	1	10.18
0267	무선통신단말기	1	10.43	0308	자기발전	1	10.18
0268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1	10.31	0309	도시가스	1	10.10
0269	컴퓨터및주변기기	1	10.44	0310	열공급업	1	10.19
0270	사무용기기	1	10.58	0311	수도	0	3.32
0271	가정용냉장고및냉동고	1	10.41	0312	철근철골조주택	1	10.28
0272	가정용세탁기	1	10.41	0313	기타주택	1	10.35
0273	가정용전열기기	1	10.38	0314	철근철골조비주택	1	10.26
0274	기타가정용전기기기	1	10.46	0315	기타비주택	1	10.33
0275	의료기기	1	10.47	0316	건축보수	1	10.28
0276	자동조정및제어기기	1	10.72	0317	도로시설	2	0.25
0277	측정및분석기기	1	10.46	0318	철도시설	2	0.33
0278	촬영기및영상기	1	10.59	0319	지하철시설	2	0.35
0279	기타광학기	1	10.47	0320	항만시설	2	0.26
0280	시계	1	10.54	0321	공항시설	2	0.25
0281	승용차	1	10.34	0322	하천사방	2	0.24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부문 번호	내 용	면세 여부 (면세=0 과세=1)	유효 세율
0323	상하수도시설	2	0.29	036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	10.35
0324	농림수산토목	2	0.25	0365	컴퓨터관련서비스	1	10.40
0325	도시토목	2	0.29	0366	기계장비및용품임대	1	10.30
0326	전력시설	2	0.32	0367	광고	1	13.78
0327	통신시설	2	0.38	0368	정보제공서비스	1	10.48
0328	기타건설	2	0.38	0369	청소및소독서비스	0	2.60
0329	도매	1	10.31	0370	농림어업서비스	0	3.12
0330	소매	1	10.37	0371	기타사업서비스	1	10.29
0331	음식점	1	11.17	0372	중앙정부	0	3.24
0332	숙박	1	10.32	0373	지방정부	0	2.10
0333	철도여객운송	0	4.08	0374	교육기관(국공립)	0	1.61
0334	철도화물운송	0	6.00	0375	교육기관(사립)	0	1.11
0335	도로여객운송	0	4.17	0376	교육기관(산업)	0	3.24
0336	도로화물운송	1	10.23	0377	연구기관(국공립)	0	1.96
0337	연안및내륙수상운송	0	6.19	0378	연구기관(비영리)	0	2.60
0338	외항운송	2	0.34	0379	연구기관(산업)	0	2.64
0339	항공운송	2	0.49	0380	기업내연구개발	0	2.51
0340	육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6	0381	의료및보건(국공립)	0	3.50
0341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	10.17	0382	의료및보건(비영리)	0	4.27
0342	항공운수보조서비스	1	10.25	0383	의료및보건(산업)	0	5.00
0343	하역	1	10.25	0384	사회복지사업(국공립)	0	4.00
0344	보관및창고	1	10.34	0385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	3.58
0345	기타운수관련서비스	1	10.42	0386	위생서비스(국공립)	0	4.24
0346	우편	0	1.44	0387	위생서비스(산업)	0	2.75
0347	전화	1	10.23	0388	문화서비스(국공립)	0	3.81
0348	초고속망서비스	1	10.34	0389	문화서비스(기타)	0	5.38
0349	부가통신	1	10.25	0390	영화	1	10.38
0350	지상파방송	0	4.76	0391	연극,음악및기타예술	1	10.39
0351	유선방송	1	11.03	0392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1	10.31
0352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0	1.51	0393	기타오락서비스	1	10.35
035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	2.42	0394	산업및전문단체	0	4.02
0354	기타금융증개기관	0	2.32	0395	기타사회단체	0	5.14
0355	생명보험	0	2.13	0396	자동차수리서비스	1	10.30
0356	손해보험	0	3.93	0397	기타개인수리서비스	1	10.25
035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	1.99	0398	세탁	1	10.43
0358	주택소유	0	1.36	0399	이용및미용	1	10.32
0359	부동산임대	1	10.31	0400	가사서비스	1	10.23
0360	부동산관련서비스	1	10.04	0401	기타개인서비스	1	10.31
0361	법무및회계서비스	1	10.24	0402	사무용품	1	10.37
0362	건축공학관련서비스	1	10.40	0403	가계외소비지출	1	11.14
0363	기타공학관련서비스	1	10.30	0404	분류불명	1	11.10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투리포트

■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 본 원고는 2008년 4월 10일~11일 한국조세연구원과 중국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가 중국 상하이에서 공동 개최한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 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 4월 10일(목) 오전

▶ 사회자 靳東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09:00~09:30 세미나 개회식

劉 佐 소장 치사

황성현 원장 치사

09:45~10:25 제1부 한·중 부동산 세제 발전 역사 및 개혁 현황

중국측 발표자 : 劉尚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10:40~11:40 한국측 발표자 :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1:40~12:00 토론

• 4월 10일(목) 오후

▶ 사회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00~15:40 제2부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중의 어려움 및 주요 문제

중국측 발표자 : 頂正國 절강성 지방세무국 법규처 처장

한국측 발표자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6:00 토론

16:00~17:40 제3부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의 대책, 목표 및 그 방향

중국측 발표자 : 石 堅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이론정책연구실 부주임

한국측 발표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7:40~18:00 토론

• 4월 11일(금) 오전

▶ 사회자 劉 佐 중국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09:00~10:20 제4부 한·중 부동산 세제 관리의 기본 경험 및 그 비교

중국측 발표자 : 陳 新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사 지방세1처 처장

한국측 발표자 : 김유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국장

10:35~11:00 토론

중국측 발표자 : 石堅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이론정책연구실 부주임

한국측 발표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1:00~11:30 폐막식

* 본 세미나는 2008. 4. 10~4. 11 양일 동안 총 4 Session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정포럼』에는 지면 관계상 'Session 1 한·중 부동산 세제 발전 역사 및 개혁현황'
의 중국측 발표 자료와 한국측 발표 자료만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 부동산 세제 개혁

류상시(劉尙希)¹⁾

1. 부동산세의 발전 맥락

중국의 현행 세제에서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세는 주로 도시 부동산세, 가옥세, 농경지 점용세, 도시/진 토지 사용세, 토지 부가가치세와 계약거래세 등이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후 이 6개 조세를 전부 지방세에 귀속시켰으며 현재 중앙세에는 부동산세가 망라되지 않고 있다.

(1) 가옥세(房產稅)

가옥세는 가옥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가옥의 세금 계산 잔액 또는 임대료 수입을 세금 계산근거로 가옥 소유권자에게 과징하는 부동산세를 말한다. 가옥세는 납세자의 재산 보유량에 과세하는 부동산세의 일종이다.

신 중국이 건립된 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은 1951년에 《도시 부동산세 잠행조례》를 반포하여 도시 가옥에 대해 가옥세(房產稅)와 지산세(地產稅)를 합병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부동산세(房地產稅)'라 한다. 1973년 공상세제 개혁을 진행, 기업에 과징하는 도시 부동산세를 공상세에 귀속시키고 개인, 외국인과 가옥 관리부서에 대한 과세는 보류하였다. 1984년 10월 국무원은 국유 기업에 대해 '이윤을 세금으로 바꾸는(利改稅)' 제도를 일층 추진하여 부동산세를 정식으로 도시 부동산세로부터 독립시켜 가옥세와 도시/진 토지 사용세로 변경

하였다. 1986년 9월 15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행조례》를 정식으로 공포, 당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가옥세를 징수하였다. 단,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 외국 독자경영기업의 보유 가옥에 대해서는 《도시 부동산세 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였다.

가옥세는 도시/현성/편제진/공업/광산 지대에 대해 과징하며 가옥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가옥'은 건축물 형태로 표현하는 재산을 말하며 가옥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한다. 세금 계산근거는 각각 가옥의 역사가치에서 일차적으로 10~30% 차감한 후의 잔액, 세무기관의 평가가치(가치로 계산 징수)와 가옥 임대료 수입(임대료로 계산 징수) 등이다. 가옥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데 가옥 역사가치 또는 세무기관의 평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율은 1.2%,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 세율은 12%로 한다. 현행 가옥세는 지방 세무국이 징세관리를 맡으며 소득은 지방정부의 소유로 귀속된다.

(2) 도시 부동산세(城市房地產稅)

도시 부동산세는 규정된 도시 부동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1951년 8월 정무원은 《도시 부동산세 잠행조례》를 공포, 가옥세와 지산세를 합병하여 '도시 부동산세'로 정하였으며 심사 허가를 받은 도시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1984년 10월 국무원은 국유 기업에 대해 '이윤을 세금으로 바꾸는' 제도를 추진하여 부동산세를 도시 부동산세로부터 독립시켜 가옥세와 도시/진 토지 사용세로 변경하였다. 도시 부동산세 적용 범위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만 한하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화교가 투자한 기업 및 개인도 납세해야 하는데 중국 경내의 가옥에 대해서만 징세한다.

1)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도시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한다. 납세자는 가옥의 소유권자, 저당권자, 대리관리자와 사용자가 망라된다. 도시 부동산세의 계산근거는 두 가지로, 하나는 가옥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가옥의 임대료 수입이다. 세금 계산근거가 부동산에 따라 세율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가옥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 세율은 1.2%, 가옥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 세율은 18%이다. 현행 도시 부동산세는 지방 세무국이 징수관리를 맡으며 소득은 지방정부가 소유한다. 중국 도시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매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도시 부동산세는 실제로 가옥에 대해 징세할 뿐 토지에 대해서는 징세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국적 소유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비를 수취한다.

(3) 농경지 점용세(耕地占用稅)

1987년 4월 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농경지 점용세 집행조례》를 공포, 공포한 날부터 농경지 점용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농경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농경지 자원의 결핍 문제와 토지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2007년 12월 1일에 《농경지 점용세 집행조례》(수정안)를 비준, 국무원 영(승)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농경지 점용세 납세자는 농경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기타 비 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국내 단위와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점용된 농경지, 세금 계산근거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 면적으로 한다. 농경지 점용세는 지역별 변동 세액기준을 실행한다.

(4) 도시/진 토지 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도시/진 토지 사용세는 도시/진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도시/진 토지 등급별 수입 차이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시/진 토지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1984년 국무원은 부동산세를 도시 부동산세로부터 독립시켜 가옥세와 도시/진 토지 사용세로

변경하였다. 1988년 9월 27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진 토지 사용세 집행조례》를 공포, 당해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2006년 12월 30일 국무원은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진 토지 사용세 집행조례》를 공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 주로 도시/진 토지 사용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도시/진 토지 사용세 징수 목적은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을 보호하고 토지 등급별 수입 차이를 조절하며 토지 사용효과를 제고하고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현행 도시/진 토지 사용세는 지방 세무국이 징수관리를 맡으며 소득은 지방정부 소유로 귀속된다.

도시/진 토지 사용세 납세자는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단위와 개인, 토지 대리관리자 또는 실제 사용자, 토지 사용권의 공유자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망라되지 않는다. 도시/진 토지 사용세 과세범위는 도시(도시 구역, 교외 지역 포함), 현성, 편제진, 공업 광산 지역 등이다. 도시/진 토지 사용세는 부동한 지역과 각 지방의 경제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등급별 변동 세액기준을 실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세액기준의 변동폭 이내에서 시정 건설 상황, 경제발전 수준 등에 근거하여 관할지역의 도시/진 토지 사용세 세액기준 변동폭을 확정한다.

(5) 토지 부가가치세(土地增值稅)

토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입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얻은 토지 부가가치액에 대해 징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토지 부가가치세는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부가가치세 집행조례》 규정에 따르며 199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현행 토지 부가가치세는 지방 세무국이 징수관리를 맡으며 소득은 지방정부 소유로 한다.

토지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중국 경내에서 매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 토지 사용권, 지상건물 및 기타 부착물(부동산으로 약칭함)을 유상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여러 유형의 기업 단위와 개인이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부가가치액을 계산근거로 하며 부동산 부가가치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서 규정에 따라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30~60% 범위 내의 4급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6) 계약거래세(契稅)

계약거래세는 토지, 가옥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을 이어 받은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이다. 현행 계약거래세는 1997년 7월 7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행조례》¹⁾ 규정에 따르며 1997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동시에 정무원이 1950년 4월 3일에 공포한 《계약거래세 잠행조례》는 폐지되었다. 계약거래세는 지방 재정/세무기관이 징수관리를 맡으며 소득은 지방정부의 소유로 한다.

계약거래세 납세자는 중국 경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수, 구매, 증여, 교환하는 여러 유형의 기업 단위와 개인이다. 계약거래세의 계산근거는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 사용권의 양도, 매각과 가옥 매매는 거래가격에 의한다. 둘째, 토지 사용권 증여와 가옥의 증여는 징수기관이 토지 사용권 매각, 가옥 매매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셋째, 토지 사용권의 교환과 가옥 교환은 교환한 토지 사용권, 가옥 가격 차액에 의한다. 계약거래세는 3~5%의 변동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변동폭 내에서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2. 부동산세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분석

중국 현행 재산세 종류는 기본적으로 지난 세기 80

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이며 일부는 이보다 더 앞서 설치되었는바, 세제 내용은 경제 발전 상황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1) 세제 설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① 세금 계산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중국 현행 주요 부동산 조세의 계산근거는 각각 가옥 부가가치액, 임대료 수입 또는 실제 점용한 토지면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후 많은 가옥의 실제 가치는 이미 몇 배로 늘었으며 현행 세금 계산근거는 부동산 현재 가격, 토지의 등급별 수입 차이와 토지/가옥의 시간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세율 설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토지제도 개혁과 토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토지 지간의 등급별 수입 차이는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며 세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토지 사용세 조절력이 저하되고 있다.

③ 중복과세 현상이 존재한다. 그 뚜렷한 표현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양적 기준으로 토지 사용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가격 기준으로 가옥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가옥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옥세와 영업세를 징수하는데, 두 가지 조세의 계산근거는 완전히 같은바, 이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2) 내자/외자 세제가 통일되지 않아 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중국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는 내자/외자 두 가지 상이한 세제를 실행하고 있다. 내자 기업 단위와 개인에 대해 가옥세, 도시/진 토지 사용세와 차량/선박 사용세를 징수하고 외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시 부동산세와 토지 사용비를 징수한다.

(3) 거래를 중시하고 보유를 경시, 세수부담이 불공평하다.

중국 부동산은 개발 유통 단계에 영업세, 토지 부가가치세, 농경지 점용세, 계약거래세, 기업 소득세 등 조세 종류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가옥 가격의 30~40%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 기간에는 가옥세, 도시 부동산세와 토지 사용세 등 조세 종류가 설계되었는데 세금부담이 작고 면세범위가 넓은바 통상 일부 기업/사업부서에만 과세하며 개인이 보유한 가옥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뚜렷한 '거래를 중시하고 보유를 경시하는' 세제는 심각한 세금부담 불공평 현상을 초래한다.

(4) 규모가 작아 지방재정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 수입이 조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세 수입 평균 비중은 3.76%(만약 부동산 취득세 성질을 띤 계약거래세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 비중은 더욱 낮다)에 달했는데, 세계 중에서 규모가 작은 조세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이 비중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1995년의 2.85%로부터 2005년에는 5.53%로 제고되었다(〈표1〉 참조).

〈표 1〉 1995~2005년 중국 재산세 조세수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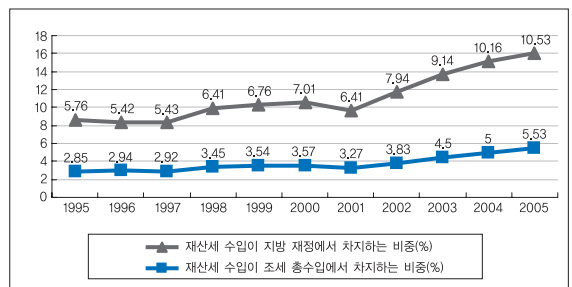
(단위: 억위안)

연도	가옥세	도시/진 토지 사용세	농경지 점용세	토지 부가가치세	계약거래세
1995	81.67	33.65	36.21	0.27	20.19
1996	102.18	39.42	32.79	1.12	27.68
1997	123.93	43.99	33.94	2.53	36.00
1998	159.85	54.21	35.62	4.27	65.35
1999	183.36	59.06	33.03	6.81	95.96
2000	209.38	64.76	35.32	8.39	131.08
2001	228.42	66.15	38.33	10.33	157.08
2002	282.38	76.83	57.34	20.51	239.07
2003	323.86	91.57	89.90	37.28	358.05
2004	366.32	106.23	120.09	75.04	540.10
2005	435.96	137.34	141.85	140.31	735.14

주: 본 표의 가옥세는 도시 부동산세를 포함하였음.
 자료: 연도별 『중국 통계 연감』, 『중국 세무 연감』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으며, 아직도 지방정부의 주체 조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 11년 기간 동안 재산세 수입이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 5.42%, 최고 10.53%에 달했으며 평균 비중은 7.36%에 달한다(〈그림1〉 참조).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 재산세가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으며 아직도 지방정부의 주체 조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만약 지방정부의 예산 외 수입, 특히 토지 양도금 수입을 고려할 경우 재산세의 비중은 더욱 낮다).

〈그림 1〉 중국 재산세가 조세 수입과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995~2005년)



자료: 연도별 『중국 통계 연감』, 『중국 세무 연감』

(5) 조세 외의 명목이 번다한 수금은 세금과 비용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부동산 산업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적게는 몇십 가지, 많을 경우 백여 가지에 달하는데 지방별로 상이하다. 일례로 시설 보상형, 노무 보상형, 생산원가 보상형과 기타 유형의 수많은 수금 종류가 있는바, 세금과 비용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6) 재산세제 입법 차원이 낮다.

지방세로서의 부동산세는 입법 면에서 시중 ‘잠행 조례’라는 비교적 낮은 입법 차원에 머물러 있다.

3. 부동산세 개혁의 목표

(1) 부동산세 기능은 수입 모집을 위주로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세 개혁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 부동산세 조절 역할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보면 부동산세 위주인 재산세를 중앙세에 귀속시키는 현상이 극히 드물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세에는 재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의 재산세도 전부 지방세에 귀속시켰다. 재산세가 국가의 GDP와 재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음바, 이 역시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귀속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재산세가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부터 볼 때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 내원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의 이상적인 조세인 부동산세는 그 기능이 수입 모집을 위주로 확정되어야지 조절을 위주로 확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부동산세 개혁 제안이 있다. 즉,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부동산세를 설

계할 때 1가구가 1주택 또는 일정한 면적을 초과할 경우 더욱 높은 세율로 징세해야 한다는 것이다²⁾. 하지만 부동산 시장 조절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부동산세의 실행은 중국에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 투기에 대한 역할은 한계가 있거나 무시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도 정론이 없다”(딩청르-丁成日, 2006)³⁾. 투기 현상은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조건하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세금부담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재산 등기 등 관련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주민 주택에 대한 정확한 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기준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기준’ 역시 제정하기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임대용 영리성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의 임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탈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설령 세무기관이 주민의 관련 주택정보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흔히 가짜 이혼, 증여 등의 수단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관리를 강화하려면 징수관리 원가가 더욱 높아지므로 이는 실제로 조세 순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동산의 조절기능을 신중하게 대해야 하며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설계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재정 건설의 수요와 결부하여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관련 목표를 확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세제를 완벽/최적화한다.

현행 부동산세는 조세 종류 면에서 내자와 외자, 도시와 향, 기업과 개인 등 이원화 현상이 존재할 뿐

2) 다른 한 가지 제안은 부동산세로 토지 양도금을 대체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뒷 부분의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임대와 세금을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기대를 거품으로 되게 한다.

3) 세무산(謝大鵬): 『중국 부동산 세제 설계』, 중국 발전출판사, 2006년, p. 154.

아니라 조세 종류 자체가 불합리하고 규범적이지 못하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되는 수취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세제의 복잡도가 높으며 징수관리에도 불리하다.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조세/비용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부동산세 체계를 완벽히하고 전체 세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② 지방 정부에 안정된 수입내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세원 안정성 등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의 중요한 수입내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부동산세 수입은 비교적 적은바, 조세 수입 총액의 5% 정도밖에 안 되므로 아직도 매우 큰 발전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 더욱 안정된 수입내원을 마련하는 것은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③ 지방세(정확하게 말한다면 ‘지방세’라 칭해야 함)와 지방재정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중국의 현행 지방재정 체계는 여전히 끊임없는 개혁과 탐색 단계에 있다. 부동산세는 비교적 이상적인 지방세로서 가능하게 유통세(예컨대 영업세, 부가가치세 등)를 대체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주체 조세가 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재정 관계 조절에 세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부동산세 개혁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세 개혁의 초기에는 가능하게 일부 기존 조세 종류에 대한 통합과 규범화 과정으로 표현될 것이며 따라서 세제를 간소화하고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수입으로부터 볼 때 부동산세 수입은 비록 안정적이지만 단시일 내에 지방정부의 주요한 수입내원으로 되고 지방정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직 경제가 일층 발전하고 부동산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부단히 제고되어야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체 조세로 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비교적 완벽한 지방세 체계를 건립하고 안정하

고 확실한 수입내원을 확보해야만 지방재정 체계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두 개 목표는 부동산세 개혁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봐야 한다.

4. 부동산세 개혁의 기본적 구상

상이한 개혁 목표는 상이한 개혁 구상을 결정해 준다. 수입 모집을 주 목표로 하는 부동산세 개혁은 과세표준을 넓히고 세제를 간소화하며 징수관리의 편리를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시장에 대한 왜곡을 줄여야 하며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건설과 결부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중국 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 개혁 구상은 아래와 같다.

(1) 일부 부동산세 조세 종류를 통합하고 부동산 수급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세 조세 종류에 존재하는 ‘3개 이원화’ 및 규범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수급을 정비하는 조건하에 ‘이원화’로 운영되는 부동산세 조세 종류를 통합하여 중복과세를 없애고 세제를 간소화하며 조세 징수관리 효율을 제고시킨다.

첫째, 어떤 조세 종류를 합병할 것인가? 동일한 부동산 보유부분에 속하는 가옥세, 도시 부동산세와 도시/진 토지 사용세를 통합해야 한다. 농경지 점용세와 토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취득부분의 조세 종류로 명확한 조정 목표와 일정한 임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두 조세는 잠시 통합할 필요가 없다. 계약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부분에서 징수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자체 체계를 갖춘 조세로 계속 보류하고 완벽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 양도금을 부동산세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안은 부동산세 징수는 토지 양도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토지 양도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여 얻은 거래가액이며

지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부동산세는 정부가 정권의 강제력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해서 토지 양도금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부동산세 과세범위를 확장하고 과세표준을 넓혀야 한다.

첫째, 부동산세 징수범위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가? 부동산세 과세범위를 설계할 때 될수록 모든 지역, 모든 납세자의 부동산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3개 면에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즉 도시/진으로부터 농촌으로, 비주택형 부동산으로부터 주택형 부동산으로, 기업으로부터 개인 또는 가구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 중국 사회경제의 발전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개혁은 소수 지역이나 도시에서만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과세범위 확장은 일차적으로 완수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장기적인 발전으로부터 볼 때 세제 설계시 과세범위를 될수록 넓게 설정하여 향후 부동산세 발전에 공간을 남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합리적인 감/면세 등 조세 우대를 통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조세 우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사업부서, 종교와 자선 등 사회공익성 조직 및 공공시설의 부동산에 대해 실행하는 기존 면세정책을 유지하는 외, 기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부 납세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특수계층에 일정한 조세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상기 구상에 따라 조세 우대는 주로 농업용지와 농민 자체용 주택 및 도시/주민의 주거용 가옥 등에 설치해야 한다.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농촌 개혁의 배경하에서 현재 농촌에 대해 부동산세를 잠시 면제해야 하며 도시/진 주

민의 주거용 가옥의 경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부동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전국 각지의 경제 수준과 부동산 발전이 불균형한 특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적당한 조세 우대 감면권한을 부여하여 조세 우대 역할을 정확하게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 일부 발달한 지역의 향진과 농촌은 도시와 비교할 때 소득과 주택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향진과 농촌 지역에 대해 면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조세 공평원칙에도 부합된다.

(3) 간단하고 투명한 세제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

간단하고 투명한 세제를 설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 세제 규정과 징납절차를 쉽게 이해 파악하게 하여 위화감을 줄인다. 동시에 부동산세는 기존 조세 종류에 대한 대체일 뿐 새로 설치한 조세가 아님을 표명하고 부동산세 수입은 현지 공공서비스에 쓰인다는 등 조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위화감을 없애고 개혁 초기 추진에도 유리하게 된다.

주요한 문제는 세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부동산세는 도시/진 토지 사용세, 가옥세와 도시 부동산세 등 3개 조세를 통합하므로 만약 부동산세 개혁 초기 수입 중성 유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동산세 평균세율 수준을 대체적으로 추산해낼 수 있다. 부동산세는 수입기능을 위주로 하고 조절기능을 보조로 하므로 누진세율을 설치하지 말고 비례세율을 택해야 한다. 이외에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통일적인 세율을 실행해야 하며 과다한 세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지역별 차이점을 고려하여 세율에 일정한 변동 범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각자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부동산세 수입을 지방정부 소유로 한다.

부동산세 개혁 초기에 수입 규모가 비교적 적고 현재 중국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성급 정부



는 부동산세 분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부동산세를 명확하게 지방정부의 소유로 귀속시키며 시/현과 향진급 정부 간에 속지원칙에 따라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세의 장기적인 발전으로부터 볼 때 만약 부동산세 수입이 급속히 늘어나면 성급 정부의 공유도 가능해진다. 중국의 지역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에 비추어 각 지방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부동산세의 급별 귀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부동산 세제 발전 역사 및 개혁 현황

한상국¹⁾

I.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기도 하고, 기존 세목이 폐지되기도 하고, 세율이 변화되고 감면세의 범위가 조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조세제도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거의 40여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조세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책적인 대응을 해왔지만, 가격억제 효과는 미미했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많았다. 오히려 이러한 대응은 조세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천,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 및 세수에 대해서 고찰한다.

II. 한국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대응해서 수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지만, 그 주안점은 가격 안정 및 투기억제 등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두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에 의해 지가의

상승은 필연적인 현상이었지만,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기적·지역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62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승의 폭은 다르지만 모두 5차례의 지가 상승기가 있었다(〈표 1〉 및 [그림 1] 참조).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의 지가는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5차례의 지가 급등을 경험하였다. 지가 상승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으로 대응을 하였고, 지가 침체기에는 부양정책을 추진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부양과 규제를 반복적으로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정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각 시기별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기별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경제정책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의 내용면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앞 시기의 정책이 뒷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 전국 지가변동을 추이(1975~2006)

(단위: %)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상승률	27.0	26.6	33.6	49.0	16.6	11.7	7.5	5.4	18.5	13.2	7.0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상승률	7.3	14.7	27.5	32.0	20.6	12.8	-1.3	-7.4	-0.6	0.6	1.0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승률	0.3	-13.6	2.9	0.7	1.3	9.0	3.4	3.9	5.0	5.6	

주 : 1. 전년 대비 변동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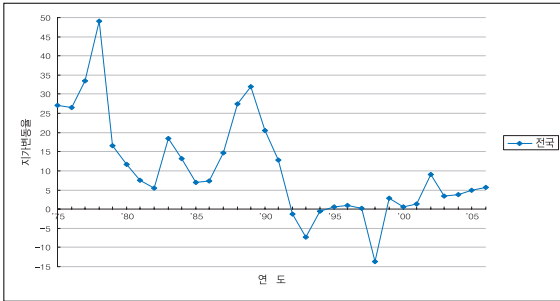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 지가를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된 연도는 1975년부터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림 1] 전국 지가변동률 추이(1975~2006)



부동산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한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金納의 관점에서 보면, 舊韓未인 1895년에 도입된 地稅(이에 대한 지방세 附加稅 포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일제시대에도 地稅와 이에 대한 각종 附加稅 그리고 家屋稅, 林野稅 등이 있었고, 취득세 및 등록세도 부과되었다. 정부 수립 후에는 地稅法이 제정되었고, 1951년에는 物納을 했던 臨時土地收得稅法이 제정되었다. 1960년 토지세법이 제정되어 農地稅와 垡地稅가 부과되었고, 1960년 12월에 土地收得稅는 폐지되었다. 1961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세인 垡地稅와 鑛區稅, 지방세인 家屋稅와 船稅가 市·郡稅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토지보유세가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다. 이후 1989년 종합토지세가 도입될 때까지 토지에는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존치해 왔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율 및 과세대상 등이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계속 부과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따라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투기억제책으로써 1968년에 不動產投機抑制稅가 도입되었다.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1975년에 도입하였다. 1980년 후반에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土地過多保有稅가 1988년 및 1989년 두 해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동 세목의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자 재산세에서 토지분을 분리하고, 여기에도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1989년 綜合土地稅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土地公概念²⁾ 3法の 제정으로 土地超過利得稅도 부과되었다. 최근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綜合不動產稅세를 도입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 1960년대 이전

1949년에 발의된 농지개혁법이 1950년 3월에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유상매입 및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했으며, 戶當 농지소유에 한계를 설정했고, 小作關係를 부인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세웠다. 이로써 토지 국유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에 地籍法이 제정되었다. 1960년에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되어서 비로소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었고, 토지소유권의 사회성이 다소 강화된 방향으로 개념 변화가 일어났다.

2. 1960년대

이 시기는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발과 성장이 우선적으로 추구된 시기로서 토지정책에서도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불균형성장이론에 바탕을 둔 개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보다는 경제적 효

2) 국민생활의 공통적 생활 기반이자 유한한 국토자원인 토지는 전체 국민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어느 특정인의 독점적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 이용과 소유권의 행사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토지정책의 이념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國公有化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추구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울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개발 측면에서 국토공간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토지법제를 정비하였다.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정비,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법제를 마련하였다³⁾. 1963년에 제정된 국토종합계획법이 이러한 산업정책과 공업정책의 기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원하는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구상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실시되었다.

1961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유세의 세목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 세원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⁴⁾가 성립하였다. 이때 지방세로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다.

개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우선 1962년 울산공업단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가 최초 발생하여서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전후하여 대도시와 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지가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1969년을 정점으로 하여 1964~1971년간 연평균 50%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제1차 상승기(1964~1974)이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서울의 강남지역 개발계획의 발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통화팽창과 외자도입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8년부터 서울, 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억제세⁵⁾를 과세하였다. 지가가 안정되지 않고 주요 도시 지가 상승률이 80.7%를 기록하는 등 지가 상승이 1969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대도시의 과잉 확산을 억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⁶⁾를 도입하면서 지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국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공포되어 국토계획이 정착되어 나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1972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제1조 제2항에서 유한한 국토는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선언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였다. 1973년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1976년에 “도시재개발법” 등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에도 정책과세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즉 1960년대 말 급격한 지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세율(표준세율 0.4%, 제한세율 3%)을 적용하였고, 고급주택·별장·골프장·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대도시 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는 등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1974년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사치성 재산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5%로 인상하였고, 공한지에 대한 5%의 세율

3) 도시계획법과 건축법(1962),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 기계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지방공업개발법(1970) 등이 제정되었다.

4) 농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 鑛區, 家屋, 船舶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5)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양도 및 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과세하였으나,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1975년에 폐지되어 부동산양도소득세로 대체되었다.

6)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옹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로 증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1970년대 초 제1차 오일쇼크로 잠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였으나, 197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1978년에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49%에 달하여서 부동산 투기붐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우선 1974년 말의 세법 개정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제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양도소득을 분리과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되었고, 법인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도입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1978년 “부동산투기지역고시”라는 행정적 조치로 대응해서,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차익 계산시 국세청 고시의 “基準時價”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1978년 8월 8일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투기억제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未登記 轉賣시에 양도소득세를 100%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8·8투기억제책”과 경기침체로 1979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27%의 상승률을 보였으니, 이것이 제2차 상승기(1975~1980)이다.

이 기간 중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간의 지가 상승률 격차가 심했다⁷⁾. 이러한 지가 상승의 원인은 고도성장에 따른 개발축진 및 소득증대, 통화의 지나친 팽창, 중동지역의 건설경기로 인한 달러의 국내 유입에 있었다.

4. 1980년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부는 토지 투기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수급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해서, 토지공급의 촉진과 투기적 수요의 억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으로서 토지초과 보유분에 대한 부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해서 부과세하였다.

1980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경제침체와 1978년에 취해진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경기도 1982년까지 침체하였다⁸⁾. 이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1980년 9월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20%로 인하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제1단계(1981. 1)로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은 50%)하였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하였다. 제2단계(1981. 5)로 신규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50% 인하하였고, 25.7평 이하 주택 신축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였고, 취득세·등록세도 30% 감면하였다. 이어서 1982년 상반기까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고, 취득세·등록세도 30%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980년 12월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방식을 전환하였는데, 비록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지만 대도시 주변의 택지 조성 및 공급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8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어서 1983년~1986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지가가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것이 제3차 상승기(1981~1986)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억제 대책으로 분양가 차등화·전매금지 기간 2년으로 강화(1982. 12), 특정

7) 서울 135.7%, 대도시 79.1%, 중소도시 58.8%, 군지역 29.7%였다.

8) 최근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면 침체하였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1981년 7.5%, 1982년 5.4%) 침체라고 표현하였다.

지역 양도소득세 實去來 과세표준 적용·채권입찰제 시행(1983. 2) 등을 발표하였다.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의 하나로 택지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고(1983. 4),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개인별 토지보유 실태 조기 전산화(1984. 9)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합산 누진과세(1984. 9) 등을 발표하였다. 1986년 2월에는 주택경기 촉진 방안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1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즉 민간기업의 도심재개발 시행 요건을 완화하였고, 도심재개발구역 내 건축행위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1987년 이후 전 지역에 걸쳐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9년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32.0%로 급속히 상승하였으니, 이것이 제4차 상승기(1987~1991)이다. 이 기간 중의 지가 상승은 1987년의 大選과 무역역축자로 인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 증시 활황, 올림픽 特需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전후 베이비 붐 세대(1955~196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1980년대 후반부터 分家를 시작하여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은 부족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지가상승이 재발됨에 따라 정부는 1988년 5월에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 안정을 위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를 발표하고, 과다보유 부동산을 가진 매각토록 하였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매각처분토록 하였다. 1988년 8월에 “8·10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고, 양도소

득세의 세율을 누진과세체제로 개편하였다.

일부 개인과 법인의 토지독점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래의 재산세 중 토지분의 증과대상 토지를 분리하여 전국에 걸쳐 인별로 합산하여 10단계(0.5~5%)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도입하여 1988년 및 1989년 두 해 동안 시행하였다.

그러나 토지과다보유세의 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다양한 감면규정에 의해 과세베이스가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에서 토지분을 분리하고⁹⁾, 여기에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1989년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과세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1989년에 제정해서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토지의 수요 조절을 통해서 수급격차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리 전산화작업을 추진해서 1992년부터 토지대장발급이 온라인화되었다.

1989년 2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5개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확대 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자본이득의 私有化가 문제가 되면서¹⁰⁾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가 1989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¹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¹²⁾” 및 “토지초과이득세법¹³⁾”이 제정되었다.

1990년 4월에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증여세를 강화하고 토지신택제도를 도입하였다.

9) 재산세는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대로 잔존하였다.

10) 198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위 5%의 토지 소유자가 전체 민간 소유 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6.9%, 서울토지의 65.9%를 소유하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전 가구의 70% 정도는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였다.

11) 1가구당 200평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그 이상은 허가를 얻어서 소유하도록 하였다. 2002년 7월 위헌으로 판정되었다.

12) 개발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 과세하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1년 12월에 종료되었고, 수도권은 2003년 12월 말에 종료되었다.

13) 遊休地, 非業務用土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50% 세율로 과세하였다. 1994년 7월 위헌 판정되었다.

5. 1990년대

1988~1989년의 지가 급등세가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1990년에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20.6%로 다소 둔화되었다. 대부분의 비도시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지가가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나, 6대 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은 건축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축용 대지(주거·상업·공업지역)를 중심으로 지가의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1990년의 지가 상승세를 주도하였다. 1991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 부담금의 부과로 투기적 토지수요가 억제되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12.8%로 지가가 안정세에 들어섰다. 1992년에는 지가가 처음으로 1.3% 하락하였다 ([그림 1] 참조). 또한 1990년대 초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분가가 끝나면서 가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한 반면에 주택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던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가격 안정에 두고 공급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수단은 서서히 간접개입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1992년에 1.3% 하락했던 지가는 1993년에 그 하락 폭이 더 커서 7.4% 하락하였고, 1994년에는 0.6% 하락하였으며,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가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13.6% 하락하였던 지가는 2002년 전까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발표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 국토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다.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국토이용

계획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準農林地域制度를 도입하여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지역이 전 국토의 15%에서 42%로 증가되어 수급불균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1995년 3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서 名義信託을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부인하여 이를 무효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서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1995년 9월에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유희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997년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였고¹⁴⁾, 토지공개념으로 인한 규제가 토지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해서 경제위기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정책의 목표는 시장 실패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선계획 후개발을 모토로 한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다.

1998년 6월부터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규범으로 완화하고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 실수요자가 취득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국내 토지시장의 진출 입에 대한 내외국인 간의 차별은 사라졌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1998년 5월에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를 199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를 폐

14)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인질제 폐지 등의 조치가 있었고, 1999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발표하였다.

지하였다. 동년 8월에 건설 경기 및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감면하였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동년 12월에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 1999년(중산층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 주택건설 촉진대책 등), 2000년(주택시장 안정 대책, 주택공급제도 개선,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 등) 및 2001년(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 적정화 방안,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서민주거생활 안정 대책 등)에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외환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전의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초래되었다.

6. 2000년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 자금 증가를 배경으로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투기성 자금의 시장개입이 더욱 촉진되고, 나아가서는 신규 주택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것이 곧 제5차 상승기(2002~현재)이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오히려 정부는 2002년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동년 1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였다. 8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였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하였고, 9월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규칙을 제정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

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투기지역에서는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003년 1월에는 충청권을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는데, 주요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였다(2003. 4).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국민은행 조사기준)이 한 달간 1.5% 이상 상승하거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 넘는 지역과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심사대상이다. 계약 체결 후 15일 안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하였다.

둘째,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였고,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해서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였다.

셋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었다.

넷째,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서 매년 4월 말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형·지번별로 집값이 표준화·통계화되었다. 이로써 거의 대부분 유형의 주택 실거래가가 공개되었으며, 일반 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섯째, 2005년 5월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

라 양자를 합산해서 과세하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는데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과세 방법은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주택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개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일정액 이상의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세대별로 합산하여 전국 소유주택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였으며, 공시시가 기준 3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및 40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사업용 토지)에도 과세하였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였다.

7. 평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섯 번의 부동산 상승기를 경험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지만, 그 주안점은 가격 안정 및 투기억제 등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두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조세가 전면에 나와서 정책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정책적 기능 수행의 중심에 있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책 수행 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정책적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조세가 전면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 수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지만 그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본연의 성격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해당 시기의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운영하다가 보니 왜곡되고 복잡한 모습을 지닌 대표적인 세제가 되었다.

Ⅲ.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학자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의 세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취득 및 양도단계를 거대로 통합하여 보유단계 및 거래단계의 세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주요 세목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부동산 거래단계의 주요 세목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다. 附加稅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도 광의의 개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본장에서는 보유단계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거래단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1. 보유단계 세제의 현황

보유단계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상호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과세 물건에 중복과세되고 있다. 즉 동일과세물건(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1차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세대별로 소유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일정액 이상의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1차 과세(일반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2차 과

세(특별세)이다(〈표 2〉 참조).

재산세는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표 3〉~〈표 7〉 참조).

재산세액의 결정은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에 매년 변경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다. 이 때 주택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매년 변경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의 과표적용비율은 매년 5%p씩 인상되는데, 토지는 2015년, 주택은 2017년에 100%에 이르게 된다.

〈표 2〉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 체계

과세대상	1차 과세	2차 과세	2차 과세 기준
건물	사업용 건물	건물분 재산세	없음
	주택건물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		
토지	일반토지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사업용 토지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농지·공장용지	토지분 재산세	없음

주 : 본 표에는 본세만을 명시함.
 자료 : 김상겸,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CFE Report No. 28, 자유기업원, 2008. 1. 15.

〈표 3〉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5,000만원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표 4〉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표 5〉 토지(분리과세대상)

종류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0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4%
공장용지(군,공업지역), 주택공급용 토지 등	0.2%

〈표 6〉 건축물

종류	세율
일반건축물	0.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주거지역 내의 공장	0.5%

〈표 7〉 주택

시가표준액	세율
4,000만원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



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과세한다.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표 8〉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단위: %)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서비스업 등 제외)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1	-	17억원 이하	1	-	160억원 이하	0.60	-
14억원 이하	1.50	150만원	97억원 이하	2	1,700만원	960억원 이하	1	6,400만원
94억원 이하	2	850만원	97억원 초과	4	2억 1,100만원	960억원 초과	1.60	6억 4,000만원
94억원 초과	3	1억 250만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평가액이 6억원 이상이 되면 과세가 개시된다. 초과금액에 따라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과세가 개시된다. 초과금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분 별도부동산은 인별로 전국 합산한 평가액이 40억원 이상이 되면 과세가 개시된다. 초과금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표 8〉 참조).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가격에 해마다 변경되는 적용비율¹⁵⁾을 곱한 후,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산세에는 附加稅(Surtax)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가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附加稅(Surtax)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과세된다.

2. 거래단계 세제의 현황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시에 1회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최근 보유세 부담을 상향 조절할 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해서 현재는 1%이다. 附加稅(Surtax)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세율은 2.3%이다. 시치성 재산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요락장 및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5배 중과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 물건 취득시에 1회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최근 보유세 부담을 상향 조절할 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해서 현재는 1%이다. 附加稅(Surtax)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세율은 2.3%이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및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설치하는 경우에는 3배로 중과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증가된 자산증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단계에서 과세하는 국세이다. 즉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15) 주택과 토지 모두 매년 10%p씩 인상되어 2010년에 100%에 이르게 된다.

발생하는 소득 등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賣渡, 交換, 법인에 대한 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액과 자산의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표 9) 참조). 다른 자산과는 달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교적 무겁게 과세되고 있고, 특히 1년 미만의 단기거래, 1세대 3주택 및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표 9〉 양도소득세의 세율

자 산 구 분	적용세율(%)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9~36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60
미등기 자산	70
주권상장주식·코스닥 상장주식(단, 중소기업주식: 10%)	20
비상장주식(단, 중소기업주식: 10%)	20
중소기업 외의 상장주식·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식	30
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 없음)	9~36

한편 부동산투기지역¹⁶⁾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며, 필요시에 탄력세율(기본세율±15%)을 적용한다.

16) 주택과 토지 모두 매년 10%p씩 인상되어 2010년에 100%에 이르게 된다.

IV. 현행 부동산 관련 세수의 현황 및 분석

본장에서는 보유단계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거래단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附加稅(Surtax)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세수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과세당국의 세정 능력에도 영향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한국의 재산세는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 즉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서 과세하였다. 양자의 세액 자체는 비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재산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02)~3.8%(1999)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종합토지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989)~8.7%(1995)라는 비교적 큰 범위에서 움직였다. 이는 1990년 전반에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서 1995년에 8.7%까지 상승하였다가 지가 안정과 과표현실화 정책의 보류로 하락추세를 보여서 2002년에는 4.5%까지 하락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세수변화 추이

(단위: 10억원, %)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지방세 총액	4,961	8,035	11,026	15,316	18,406	18,586
취득세	633	1,260.4	1,771.3	2,321.9	2,955.8	2,754.6
등록세	785.2	1,319.5	1,763.0	2,614.6	3,146.3	3,370.3
공동시설세	74.5	106.0	162.9	211.0	276.1	337.1
재산세	197.2	269.8	398.7	475.3	588.8	702.8
종합토지세	179.9	531.4	891.1	1,330	1,346.5	1,330.2
도시계획세	91.1	181.7	298.9	433.2	438.5	450.9
소 계	1,961.7	3,668.8	5,285.9	7,386.0	8,752.0	8,945.9
비 중	39.3	45.7	47.9	48.2	47.5	48.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방세 총액	20,600.6	26,664.8	31,525.7	33,132.9	34,201.7	35,977.4
취득세	3,148.2	3,782.5	5,278.2	5,502.9	5,366.1	6,649.0
등록세	4,527.6	5,586.7	7,504.5	7,550.0	6,715.8	6,783.7
공동시설세	341.4	350.9	374.9	410.9	464.8	446.4
재산세	727.8	763.2	817.5	903.4	1,017.8	2,587.4
종합토지세	1,281.7	1,365.0	1,405.7	1,602.6	2,031.6	1.9
도시계획세	815.4	851.0	893.8	998.5	1,185.3	1,352.5
소 계	10,836.1	12,699.3	16,274.594	16,968.3	16,781.4	17,820.9
비 중	52.6	47.6	51.6	51.2	49.1	49.5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을 보면(〈표 11〉 참조), 총 납세인원이 신고기준으로 2005년 7만 1천세대, 2006에 34만 1천세대에 이르렀고, 2007년에는 50만 5천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은 2005년에 6,426억원, 2006년에 1조 7,179억원에 이르렀고, 2007년에는 2조 8,8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세액 및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였고, 과표적용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합 계	2005년 신고실적	2006년 신고실적(A)	2007년 전망(B)	B-A	증가율 (B-A)/A
인 원	71	341	505	164	48
세 액	6,426	17,179	28,814	11,635	68
주택(세액)	391	5,222	12,680	7,458	143
토지(세액)	6,035	11,957	16,134	4,177	35

주: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산한 숫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년판
 국세청 보도자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2007. 3. 16)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서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1989)~40.5%(2002)의 범위에서 움직였다(〈표 10〉 참조). 동 비중은 2002년 전까지 30% 중반에 머물다가 2002년부터

지가가 상승하자 30% 후반까지 상승하였다.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정책세제로 운영되었으며, 국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999)~4.9%(1997) 사이에서 움직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1999년에 국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까지 하락하였다.

〈표 12〉 양도소득세 세수변화 추이

(단위: 10억원)

연 도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국세총액	21,234	30,319	39,260	56,774	69,928	65,067
세 액	724.0	1,513.5	1,851.3	2,763.0	3,419.2	1,866.3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국세총액	81,985	86,419	94,286	104,926	108,170	
세 액	2,437.5	2,651.5	3106.7	3,658.6	4,417.8	

주: 세액은 부과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V. 시사점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기도 하고 기존 세목이 폐지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와 경제개발 과정 중에 지가가 상승하고, 상승한 지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동산 관련 세제가 도입되고, 변화 및 발전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조세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책적인 대응을 하였는데,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세목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도입 및 변천의 이유가 존재했고, 재원조달 및 조세정책적 기능의 수행이 기대되었으나, 조세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해당 세목이 제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분명하지 못하였고 세목 간의 유기적인 연계

도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는 과세대상 자산의 포착 및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적의 달성 및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복잡한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정책 수행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서 세제가 왜곡되고 복잡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많았다. **KIPF**

한상국·이성욱·최명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참고문헌]

곽태원,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변천과 향후의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5-1, 한국조세연구원, 1995.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96.

_____, 『세정 100년 약사』, 1996.

국세청 보도자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2007. 3. 16.

김상겸,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 CFE Report No. 28, 자유기업원, 2008. 1. 15.

법제처, 종합법령정보(<http://www.moleg.go.kr/>)

이영희, 「재산세제도의 개편방안」, 『부동산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9.

이진순,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8.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9.

최 광·현진권 편,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한국조세연구원, 정보광장(<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한·중 공동 심포지엄 토론 요약

세미나에서는 각 Session별로 중국측 발표자와 한국측 발표자가 주제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측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 세계개혁 방향도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 토지에 대해 개인 소유와 국가 소유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의 문제, 즉 향후 사용권이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한국의 경험처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제를 바꾸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중국의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가 소유권에 대한 과세인지, 사용권에 대한 과세인지 그리고 과세시 토지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국측

중국 헌법에 토지는 국가 소유와 집체 소유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개인은 건물에 대해 사용권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나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현재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하나 토지에 대한 과세는 일종의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건물의 증개축시에도 역시 과세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를 준비중이다.

과세대상은 조세제도와 관련이 많으며 특히 경제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사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부동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가격 방법, 노동가격법 등 일반적인 부동산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과세 당국이 직접 평가를 담당하며, 평가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각 지방마다 지방정부 기준지가를 마련하고 3~5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평가시 내용연수, 건물의 구조, 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납세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지가 상승시 토지세제 등을 가격 안정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 여부가 궁금하다.

한국측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전체 납세 가구 970만 가구 중 38만 가구로 약 2.6%에 해당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의 정착과는 별개로 아직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으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주택 거래시 개별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통합거래되는지 궁금하다.

중국측

중국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 사용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다. 통상 사용권은 50~70년 정도이다. 서울시의 고급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측

주택 가격은 변동이 커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서울 일부 핵심 주거지역의 경우 3.3㎡ 당 3천만~5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측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과세하는지, 가구당 집이 1채인 경우에도 징수하는지 궁

금하다. 또한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별도의 감면제도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3주택의 기준이 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지 전국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한국측

종합부동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며, 가구당 집이 1채인 경우에도 세금을 낸다. 한국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를 내고,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세는 공제되며, 별도의 감면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3주택의 기준은 전국 단위이다.

자료에서 중국은 납세기 대리 공제 및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가?

중국측

대리 공제 및 납부는 원천징수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세율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징수는 토지관리국이라는 기관에서 행한다. 따라서 징수를 대행한다는 의미로 대리 공제 및 납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대리납부라는 단어 자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측

부동산과 관련한 중국의 세제개혁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등기부등재, 시가평가 방법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

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방정부의 세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무관심한 것도 요인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자료를 보면 세제개혁시 비례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례세는 역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중국측

이는 중국의 토지 소유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토지는 국유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었다. 최근 시장경제하에서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조만간 등기제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한국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한 측면이 있다. 자료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는 이에 대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놓고 볼 때 가격 안정을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국측

중국 부동산 세제 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의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세제의 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세제 개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물업세 징수시 시장가격 불안정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수범위 및 징수율 등을 확정하고 있다.

한국측

자료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 “명목이 번다하고 규범

성이 낮은 수금조목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다. 세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국측

중국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결국 세금처럼 징수하는 ‘수금조목’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세 부담에 해당한다. 보통의 경우 수금조목은 세금보다 많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다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수금조목은 부동산 거래 및 개발과 관련된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보다 상회하는 70여 가지의 수금조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과열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측

중국은 가옥세를 역사가치, 평가가치, 임대료 수입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인지 과세관청인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는 가옥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범위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물업세의 정확한 의미도 궁금하다.

중국측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옥세는 가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옥세는 살 때 당시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하며, 만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근거로 과세한다.

개인의 경우 현행 법규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경우에도 영업용이라든지, 임대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물업세에 대한 개념은 중국 국내에서도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본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세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측

부동산세라고 하면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고유의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거래 및 양도 등과 관련된 세금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국측

보유 단계의 부동산세를 말한다.

한국측

가옥세 과세시 살 때 당시의 가격에 근거하고,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근거하여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평가가치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은가? 또 살 때 당시의 가격에 근거하여 과세한다고 할 경우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국측

현재 시행중인 가옥세는 살 때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는 현재 세제개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가가치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원가 확정이 어려운 경우 현재 평가가치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재산세를 지방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한다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중국의 토지증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세금 징수시 거래가격 중

한국조세연구원

원가를 제하고 징수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등기부 기록제도는 중국의 부동산 세제 개혁 과정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부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한국에서 이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때 이를 전달하여 국민에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부서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한국측

재산세는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세과와 재정과 등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운영중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액수는 양도가액에서 구입가격을 뺀 차액이며 여기에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등록세 및 취득세 거래비용을 제한 순수하게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원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개별 납세자들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토지공부의 경우 재산권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이 담당하지만 재산세 관련 과세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행하고 있다.

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공시지가, 기준지가, 개별지가 등을 발표하며, 납세자가 열람기간 중 이에 불복하여 재산정을 요구할 경우 공시지가산정위원회를 열어 재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중국측

등기부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법원이나 지방정부와 정보 공유가 가능한가?

한국측

가능하다. 한국은 비교적 등기부 등록제도가 잘 운

영되고 있지만,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일정 주기로 일제조사를 통해 자료를 갱신하며 완벽을 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일제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중국측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징수 후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도 징수하는가?

한국측

기업의 경우 부동산 거래로 얻은 소득과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측

주제 발표시 2005년 이후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4개 기관(국토해양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 4개 기관에서 공동 참여하여 기준을 확정할 때 각자의 목적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한국측

2005년 이후 부동산 평가의 목적에 따라 부동산 종류별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으며, 통합과세를 위해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인 표준지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가격을 산정하고 2월말 공시하여 기준지를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를 산정한다. 최종 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다.

**중국측**

국토해양부가 기준지가를 산정할 경우 감정원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평가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한 지자체의 개별지가 산정시 평가 담당 부서 및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한국측

국토해양부에서 평가비용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에서 평가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표준지를 기준으로 비준표에 근거하여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중국측

한국의 TIS(국세통합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다. TIS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 및 세무 관련 정보가 모두 함께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이러한 정보들을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있는지, 운영비용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한국측

한국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DB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 있다. 부동산 가격 정보, 개별 거래 가격 정보 등의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어, 납세자 데이터와 어긋날 경우 바로 검증이 가능하다. 한국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에 전산담당국을 두고 있으며, 지방청, 세무서별로 별도의 담당 조직 및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국세청 전체적으로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전산담당직이다.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은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처리된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 언급하면 특정 부처, 예를 들어 검찰 등에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

우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 담보 실행 주택 매입자 7,000달러 세금 공제
- 부동산 세금 납부자 1,000달러 세금 공제
- '무책임한 대출자 왜 지원하나' 비판도

미국 상원이 주택 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공제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담보 실행 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에게 일시적으로 7,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1,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택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 동안 총 250억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담보 실행에 대한 상담과 연방주택국(FHA)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1억 5,000만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상원은 이같은 결의안을 84 대 12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스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상원의 결의안이 일반 서민보다도 관련 산업을 더 지원하게 된다는 비판을

다. 이어 백악관은 “무책임한 대출자들에게 성실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신문 2008-04-11〉

中 세입, 5년간 연평균 23.8% 증가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세입이 연평균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세총국은 이날 2003~2007년 세입이 연평균 23.8% 늘어 5년간 총 16조 4,100억위안(약 2,290조 1,896억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007년만 해도 전년 대비 31.4% 증가한 4조 9,400억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투자 규모의 급팽창, 산업 개발 및 상업 분야의 눈부신 발전, 중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 중국 증시의 급성장을 세입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국제총국의 차관관련 대변인은 “세입 증가로 사회 공공시설 확충과 기본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시아경제 2008-04-03]

후쿠다, 휘발유특별세 연장 불허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일본이 총체적인 예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일본의 세수 감소 우려로 후쿠다 총리가 휘발유특별세 만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이 예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면서 2조 6,000억엔(26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 휘발유특별세 중단을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휘발유특별세 만료는 83조 일본 예산의 큰 구멍을 만들 것”이라면서 “휘발유특별세가 인하되면 적자 기금채권을 발행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잠정세율 적용기한이 끝나 휘발유 1당 25엔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저지한다면 반발이 예상된다.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후쿠다 총리가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장을 기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소비자의 반발을 이용해 후쿠다 진영을 비판하고 있고 여권은 세수 감소를 우려, 이 법안의 재가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후쿠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의 세수가 2조 6천억엔(약 26조 원) 줄어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고 사회복지프로그램 감축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행(BOJ)이 1일 발표한 3월 대기업 제조업 부문 단간지수(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는 지난해 12월 19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떨어져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대기업 비제조업 부문 단간지수는 지난해 12월 16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떨어져 3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04-02]

원자재 블랙홀 중국...자원 수출은 ‘자물쇠 통제’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원자재의 블랙홀 구실을 하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생산된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정책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희토류 등 110개 원자재에 대해 수출관세를 5~15%로 인상하거나 신규 도입했다. 그 중에는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에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까지 불리는 희토류는 중국이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찍이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 빚장 정책으로 희토류 수출은 2003년 연간 7만톤을 웃돌던 것이 지난해에는 4만톤으로 줄어들었고 4~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희토류가 수두룩할 만큼 가격도 급상승했다.

중국의 ‘자원수출 통제’는 무역 불균형 해소,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각종 자원개발에 외자기업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수출억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 정책은 어김없이 포함시키



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석영·규사·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놓아 국내 유리·전자재 업계에 파장을 몰고 왔고 올해 2월에는 유연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국내 전력산업에 파장을 미치기도 했다.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자원수출 통제로 지난해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량은 14% 감소했고 비금속광물 수출량도 20.4% 줄어들었다. 광물자원뿐 아니라 저부가가치형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면서 피혁 수출량은 지난해 37.9% 줄어들기도 했다.

[매일경제 2008-04-01]

한국조세연구원

[아시아경제 2008-03-21]

中, 증권거래세 조만간 인하할듯

중국이 지난해 5월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인상했던 증권거래세를 10개월 만에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권보는 20일 거래세 인하를 위해 증권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개장 후 장중 한때 6.13% 추락하며 급락세를 보였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장 후반 급반등세를 나타내며 1.13% 상승한 3804.05로 장을 마쳤다.

중국은 지난해 5월 0.1%이던 증권거래세를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0.3%로 인상했다. 이에 앞서 세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증권 관계자들은 “기업 실적 둔화와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로 주가가 급락한 만큼 투자심리 안정

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중앙재경대 증권선물연구소의 허창(賀強) 소장은 이른바 ‘단방향 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살 때와 팔 때 모두 매매금액의 0.3%를 내게 돼 있는 것을 살 때 혹은 팔 때 한번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0.1%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신파(張新法) 인허증권 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거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거래세 수입은 약 2,000억 위안으로 거래세 인상 전인 2006년의 10.8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거래세 인하는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져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 ·

미국 ‘큰 정부’ 부활한다

- 대선 후보들 “사회보장·탄소배출제 등 정부 역할 확대”
- ‘유에스뉴스’ 보도…세금·규제·재정지출 가장 많아질 듯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초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을 때, 미국에서 몇 세대에 걸쳐 진행돼 온 논쟁은 작은 정부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미 주간지 <유에스앤월드리포트>는 ‘큰 정부의 귀환’이란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선 미국에서 새로운 큰 정부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잡지는 “11월 대선에서 바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존 맥케인 셋 가운데 누구를 찍든지 2009년이 끝날 무렵에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과 규제, 재정지출을 하는 큰 정부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잡지는 이들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에서 정부의 구실을 늘리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게 될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기업들은 연간 1천억달러의 세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17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사회보장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2조달러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잡지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정부가 될 것인가가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클린턴과 오바마는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더 넓은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만들었다”는 야콥 핵커 예일대 교수와 맥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오바마는 근로소득세 인상이나 1993년에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 확대 등을 강조한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정부가 해결책은 아니다”고 선언한 이후, 줄곧 ‘작은 정부’의 길을 걸어왔다. 1983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이르렀던 국가 예산은 2000년 18.4%로 떨어져,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때 최고 70%였던 소득세율은 28%까지 떨어졌다. 자유시장주의와 작은 정부를 향한 파고의 정점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부시 대통령이라는 게 이 잡지의 진단이다.

지금 거대한 시계추는 큰 정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폴 리안 공화당 의원(위스콘신)은 “나는 시계추의 이동을 명확히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논리와 이성인 궁극적으로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꽤 빠른 속도로 (작은 정부쪽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2008-04-14〉

서브프라임 잠재적 손실 9,450억달러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이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장의 잠재적 손실이 9,450억달러(약 922조원)에 이른

다고 밝혔다.

IMF는 또 전체 손실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이 5,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앞서 잠재적 손실 규모를 8,000억달러로 잡았었다.

IMF가 이날 밝힌 전체 손실은 지난달 26일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1조 2,000억달러에는 못 미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자산 상각과 신용손실로 입은 손해는 모두 2,320억달러에 이른다.

IMF는 “이번 금융시장 위기는 유동성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허약한 상황이고 자금력도 부족해 파급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고 길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IMF는 따라서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보다 강도 높게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고 추가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IMF는 신흥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신용경색이 악화돼 달러화 가치가 추가로 떨어지면 신흥시장 경제도 신용경색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 2008-04-10〉

IMF · 세계銀, 물가급등 충격 세계빈곤 악화 우려

—“세계경제 진퇴양난..성장둔화-인플레이션 사이에 갇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수장들이 고유가에 이어 최근 쌀값 등 곡물가격까지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 물가급등의 충격이 세계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10일 IMF와 세계은행 봄 연차회의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6년 이후 곡물가격이 48%나 상승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그동안 거둔 빈곤퇴치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특히 “세계는 얼음과 불인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사이에 사로잡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이날 “물가상승은 어린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줄어들고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7년간 국제빈곤 축소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고 점점 더 위급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졸릭 총재는 곡물가격 상승은 33개국에 소요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다른 선진국가들이 유엔의 식량원조를 위해 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은행은 곡물가격이 적어도 2015년까지는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량원조를 2배로 늘려 8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미국이 IMF가 권고한 은행규제와 감독방안인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금융위기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FSAP에 명시된 조치들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진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2007년의 4.9%보다 1.2%포인트나 떨어진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9년의 세계경제 성장도 올해와 비슷한 3.8%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2008-04-11]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 폐지 권고 무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석유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세계은행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담당 요아킴 반 암스버그 이사의 말을 인용해 석유보조금이 빈민을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로 석유 소비량을 늘릴 뿐 빈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조금의 40%가 부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인도네시아가 석유보조금으로 사회개발예산보다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있어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가 인상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보조금도 급증하고 있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다른 지출을 줄이더라도 국내 유가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2008-03-27]

中, 에너지 절약 위해 6조원 투입

중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전년보다 78%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2006~2010년까지 1만위안당 국내총생산(GDP) 에너지 소비율을 약 20% 가량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전년 235억위안(약 3조 3,227억원)보다 78% 많은 418억위안(5조 9,101억원)을 올해 투입할 계획이다. 270억위안은 특별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148억위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예산 중 75억위안은 낙후된 공장을 첨단화하고 사용되는 전구를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전구로 교체하는 등 10가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40억위안은 효율성이 낮은 화력발전소와 시대에 뒤떨어진 철강공장 폐쇄에 이용하고 50억위안은 강이나 호수에 흘러드는 환경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중국의 GDP 에너지 소비율은 1.33% 감소해 연간 목표치인 4%의 3분의 1가량을 줄이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2.8% 감소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내 이산화황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아시아경제 2008-03-25]

日, 지방의회 일당제 도입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월급제를 폐지하고 일당제를 도입했다.

일본 가나자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본래의 봉사 정신을 되살리고 주민의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과감히 월급제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첫 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하루 3만 엔씩의 일당을 받게 된다. 연간 회의 일수가 30일 정도여서 의원 한 사람이 받는 보수는 1년에 90만엔에 불과해 월급제 당시 받던 돈의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KBS 2008-03-25]

중국인들 “高물가에 살기 힘들다”

올해 들어 급등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는 2분기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0개 도시에서 1·4분기 중국 경제와 관련해 예금주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소득은 현저히 늘었지만 물가상승 압력 탓에 생활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화통신이 20일(현지 시각) 전했다.

1분기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35.2%로 전 분기보다 6.7%포인트 늘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연초 정부가 민생 돌보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노인에게 대한 보조금을 늘린 것이 국민소득 증가에 크게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경제발전예 따라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민소득이 올해 폭증하리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인민은행은 국민소득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연중 1분기 소득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대다수는 1분기 물가가 너무 오른 나머지 2분기에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안

정책으로 2분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지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7%를 기록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 살기 힘들다’고 밝힌 응답자가 ‘물가가 높지만 생활에 큰 무리는 없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인민은행은 1월 중순 발생한 ‘폭설 대란’으로 급등한 식용유·채소·과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저축률은 네 분기 연속 높아지고 있다. 인민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방법 가운데 저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35.4%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저축률이 높아진 반면 증시·부동산 투자는 대폭 줄었다. 각종 긴축정책 탓이다. 향후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14.6%로 전 분기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인민은행이 지적했듯 관망세로 돌아선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주식·펀드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4분기 35.8%에서 올해 1분기 27.6%로 8.2%포인트 줄었다.

주요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었다. 주식·펀드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8%, 25.4%에서 올해 1분기 10.4%, 19.1%로 감소했다.

[아시아경제 2008-03-21]

그리스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교통·환경 대란

그리스 공공노조가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발해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그리스 전역의 교통, 환경, 전기 공급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그리스의 양대 공공노조가 실시한 전국적인 파업의 여파로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항공, 철도, 선박의 발이 묶였으며,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 은행, 병원들이 일제히 하루 동안 문을 닫았으며, 또 최근 2주간 계속된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거부로 아테네 도심의 거리 곳곳이 쓰레기 더미로 넘쳐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 개혁이 대부분 근로자들의 연금을 급격히 삭감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스 의회는 현재 연금개혁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치는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신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승리 이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한국조세연구원

[KBS 2008-03-20]

정책 흐름

한국조세연구원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발간
-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 이 자료는 2008년 3월 31일 국고국 결산과에서 발표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2008. 4. 1(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 동 결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43.6조원, 총지출 209.8조원('07 GDP 901.2조원 대비 23.3%)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8조원(GDP 대비 3.8%) 흑자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GDP 대비 0.4%)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 *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0.2조원, 관리대상수지는 14.4조원 각각 개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16.0조원, 총세출 196.9조원으로 19.1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차기이월액 2.6조원을 제외한 세잉여금은 16.5조원임(일반회계 15.3조원, 특별회계 1.1조원)
 - 5개 기업특별회계는 수익이 7.1조원, 비용이 7.2조원으로 0.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06년(당기순손실 0.5조원)에 비해 0.4조원 개선된 수준임
 - 60개 기금은 수익이 105.2조원, 비용이 85.3조원으로 19.9조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06년(당기순손실 5.7조원)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개

- 선(25.6조원) 되었음
- 국가채권(중앙정부)의 현재액은 184.0조원으로 '06년말 대비 46.9조원 증가하였으며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06년보다 5.8%(15.9조원) 증가한 289.1조원, GDP 대비 비중은 32.1%로 '06년(32.2%)에 비해 0.1%p 감소하였음
- * 지방채무 포함시 298.9조원, GDP 대비 33.2%
-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5.9조원(2.2%) 증가한 276.0조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9.6조원으로 전년의 8.9조원에 비해 0.6조원(6.9%) 증가하였음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1. '07년 결산의 특징

가. 결산체제 개편

- 국가재정법('07. 1 시행)을 적용한 첫 결산
 - 결산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조기결산 체제 도입
 - 결산서 국회 제출기한 : (중전) 9. 2일 → (변경) 5. 31일(3개월 단축)
 - 주요 결산항목별 명세서의 법정서류화로 결산서류 크게 증가

- 결산 제출서류 : (중전) 9종 → (변경) 21종(참고 1)
- 정부 전체예산을 16개 분야(68개 부문)로 분류하여 집행실적을 분석(참고 2)

- 각 중앙관서(60개)의 예산은 771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집행실적을 분석

* 재원배분 · 성과 등의 기본 관리단위로서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개개 사업들의 묶음

예 : (중전)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 비목별로 편성 집행
(개선) 단위사업별로 편성과 집행 → 사업별 추진실적 분석 가능

나. 결산 내용상 특징

-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 실현
 -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43.6조원, 총지출 209.8조원('07 GDP 901.2조원 대비 23.3%)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8조원(GDP 대비 3.8%) 흑자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GDP 대비 0.4%) 흑자

* 전년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0.2조원, 관리대상수지는 14.4조원 각각 개선

-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

- 일반회계 : 15.3조원, 06년 대비 14.0조원 증가
- 일시적인 세입증가(6조원)*와 경기회복 및 과표양성화 등으로 조세수입이 증가(예산대비 +14.2조원, 소득세 증가 6.1조원)

* '06년말일(공휴일) 일부 세수가 '07년으로 이월수납(3.1조원), '06년말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양도소득세(+3조원) 등 증가

- 예비비 미사용(1.2조원),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예년에 비해 불용액도 증가('06년 1.5조원 → '07년 2.6조원)
- 특별회계 : 1.1조원, 06년 대비 0.1조원(9.3%) 증가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일반회계	24,074	32,861	11,262	1,726	12,367	13,730	153,428*
(전년대비, %)	(Δ40.6)	(36.5)	(Δ65.7)	(Δ84.7)	(616.5)	(11.0)	(1017.5)
특별회계	1,685	14,925	2,063	6,768	17,399	10,438	11,411
(전년대비, %)	(Δ91.7)	(785.8)	(Δ86.2)	(228.1)	(157.1)	(Δ40.0)	(9.3)

* 세계잉여금 사용방법(국가재정법 §90)

-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 ③ 채무상환(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 ④ 추경편성
- ⑤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

2. 세입세출 결산

- 총세입 · 총세출 실적

- 총세입액은 216조 355억원으로 예산(200조 9,519억원) 대비 15조 835억원(예산 대비 증가율 7.5%) 증가

- 국세수입 : '07년 예산 147조 3,025억원 대비 14조 1,566억원* 증가

* 소득세(6조 753억원), 법인세(4조 9,216억원), 증권거래세(1조 1,444억원) 등

- 총세출액은 196조 9,047억원으로 예산현액(203조 9,375억원) 대비 96.6% 집행

(단위: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C=A-B)	다음연도 이월액(D)	세계잉여금(E=C-D)	불용액
일반회계	1,711,721	1,543,309	168,413	14,985	153,428	25,890
특별회계	448,633	425,738	22,895	11,484	11,411	17,969
합계	2,160,355	1,969,047	191,308	26,469	164,839	43,859

- 이월규모는 2조 6,469억원(외자구매 조달기간 소요, 공기 부족 등)으로 전년의 2조 9,155억원보다 2,686억원 감소

- 불용규모는 4조 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19억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1.2조원) 등으로 불용이 발생

- 일반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6조 8,41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 이중 차기 이월액 1조 4,985억원을 제외한 세계 잉여금은 15조 3,428억원임

3. 기업특별회계결산

- 5개 기업특별회계는 자산 52조 745억원, 부채 42조 4,817억원, 순자산은 9조 5,928억원으로
- '06년 대비 자산 1조 876억원, 부채 5,685억원, 순자산은 5,191억원 감소하였음

재정상태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A)	2006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520,745	531,621	△10,876	△2.0
부 채	424,817	430,502	△5,685	△1.3
순자산	95,928	101,119	△5,191	△5.1

- '07년도 기업특별회계의 운용결과 수익은 9,098억원 증가, 비용이 4,985억원 증가하여 1,16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이는 '06년도 당기순손실 5,276억원에 비해 4,113억원 축소된 것

운용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A)	2006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수 익	70,509	61,411	9,098	14.8
비 용	71,672	66,687	4,985	7.5
당기손익	(-)1,163	(-)5,276	4,113	78.0

4. 기금결산

- 60개 기금은 자산 722조 3,686억원, 부채 539조 1,920억원으로 순자산은 183조 1,766억원임

재정상태

(단위: 억원, %)

구 분	2007(A)	2006(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7,223,686	6,413,951	809,735	12.6
부 채	5,391,920	4,872,042	519,878	10.7
순 자 산	1,831,766	1,541,909	289,857	18.8

- '07년도 기금운용결과 총 19조 9,029억원의 당기 순이익 발생
- 국민연금기금 수입보험료 증가 등 15조 6,119억원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1조 9,454억원) : 우리금융지주 및 신한지주 지분매각이익 1.3조원, 배당금수익 0.7조원 등

운용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2007(A)	2006(B)	증 감(A-B)	
			금 액	비 율
수 익	1,051,568	929,694	121,874	13.1
비 용	852,539	986,610	△134,071	△13.6
당기손익	199,029	(-)56,916	255,945	흑자전환

5. 국가채권 결산

- '07년말 국가채권*은 184.0조원(GDP 대비 20.4%)으로 전년대비 46.9조원 증가
-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융자금, 예금·예탁금, 경상이전수입 등)을 의미
- 주요 증가요인은 '07년부터 결손처분*액을 국가채권에 포함(39.1조원)시키고, 국민주택기금 용자가 4.5조원 증가한 데 기인
- *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국제징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무재산, 거소불명 등 채권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회수 절차를 정지. 그동안 각주로 표시하던 조세채권 결손처분액을 '07년부터 채권현재액에 포함(조세채권 35.9조원+가산금 등 3.2조원=39.1조원)

- '07년도 종류별 국가채권증가 내역
 - 조세채권 결손처분액이 채권액에 포함되어 조세 채권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단위: 억원, %)

구 분	'06년말	'07년말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융자금	110.3	113.0	(61.4)	2.7 ³⁾	2.5
예금및예탁금	12.1	16.2	(8.8)	4.1 ⁴⁾	33.9
조세채권	7.5	44.0	(23.9)	36.5 ⁵⁾	484.0
경상이전수입 ¹⁾	5.0	8.0	(4.4)	3.1 ⁶⁾	61.8
사회보장기여금	0.6	0.7	(0.4)	0.1	15.2
기타채권 ²⁾	1.6	2.0	(1.1)	0.4	24.5
합 계	137.1	184.0	(100)	46.9	34.2

- 1) 경상이전수입 : 부담금, 기산금, 위약금, 변상금, 연체료 등
- 2) 기타채권 : 토지·건물대여료,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토지·건물매각대 등
-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4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 △0.1조원, 재정용자특별회계 △12.0조원(특별회계 폐지), 국민주택기금 4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9조원 등
- 4) 국민연금기금 0.4조원, 산재보상보험기금 0.4조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2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6조원
- 5) 내국세 35조 8,780억원, 관세 414억원
- 6) 기산금 2.9조, 환경개선특별회계 0.1조, 정보통신진흥기금 △0.2조원

6. 국가(중앙정부)채무 결산

- 국가채무는 289조 1,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15조 8,881억원) 증가(GDP 대비 '06년 32.2%→'07년 32.1%)
 - * 지방채무 포함시 298.9조원으로 전년 대비 16.1조원 증가 (GDP 대비 '06년 33.4%→'07년 33.2%), GDP : '06년 848.0조원→'09년 901.2조원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2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6.7조원) 등에 사용

국가채무 규모의 변동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 중앙정부채무	1,588,247	1,960,865	2,387,660	2,732,137	2,891,018
(GDP대비, %)	22.0	25.2	29.5	32.2	32.1
• 국 채	1,406,332	1,829,316	2,290,018	2,643,174	2,804,655
- 국고 채권	814,833	1,230,613	1,704,752	2,067,984	2,273,733
- 외평 채권	284,880	274,699	214,293	146,541	97,440
- 국민주택채권	300,506	323,891	370,860	428,535	433,369
- 출자재정증권 등	6,113	113	113	113	113
• 차입금	157,501	106,549	76,253	64,361	57,242
- 국내 차입금	31,700	20,400	20,550	21,572	21,672
- 해외 차입금	125,801	86,149	55,703	42,789	35,570
• 국고채무부담행위	24,414	25,000	21,388	24,602	29,121

- 국가채무 중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59.4%(171.9조원)이며,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6%(117.3조원)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잠정)

(단위: 조원)

국가채무 289.1조원 (100%)	적자성 채무 117.3조원 (40.6%)	일반회계 적자보전 : 55.6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 52.7조원(이자 등 포함) 기타 : 9.0조원
	금융성 채무 171.9조원 (59.4%)	서민 주거 안정 : 43.6조원 외환시장 안정 : 89.7조원 기타 : 38.6조원

7. 국유재산 결산

- 국유재산 현재액은 276.0조원으로 06년 대비 5.9조원(2.2%) 증가
 - 건물은 국방부의 군부대 시설 신축,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 신·증축 등으로 전년 대비 2조 7,676억원 증가
 - 유가증권은 전년 대비 1조 6,260억원 증가
 - 증가요인 : 토지공사 이익잉여금 전입(1.9조원), 물납주식(0.5조원) 출자(주공 1.0조, 도공 0.9조,

- 석유공사 0.7조 등
- 감소요인 : 주택기금수익증권 감소 2.7조원, 보험 적립금채권 매각 등에 따른 감소 0.7조원 등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06년도말(구성비)	07년도말(구성비)	증감액(증감률)
토지	1,065,739(39.5)	1,070,274(38.8)	4,535(0.4)
(면적)	(16,166km ²)	(16,316km ²)	(151km ²)
건물	290,160(10.7)	317,836(11.5)	27,676(9.5)
공작물	205,108(7.6)	212,212(7.7)	7,104(3.5)
입목축	52,367(1.9)	53,600(1.9)	1,232(2.4)
선박·항공기	10,534(0.4)	11,900(0.4)	1,366(13.0)
기계기구	2,399(0.1)	2,409(0.1)	11(0.4)
유가증권	1,068,466(39.6)	1,084,726(39.3)	16,260(1.5)
무체재산	6,033(0.2)	6,979(0.3)	946(15.7)
계	2,700,805(100.0)	2,759,935(100.0)	59,130(2.2)

한국조세연구원

8. 통합재정수지

- '07년 결산결과(잠정),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23.3%인 209.8조원으로 '06년 205.9조원에 비해 3.9조원 증가
- 통합재정수지는 33.8조원 흑자(GDP의 3.8%)로서 전년(3.6조원)보다 30.2조원 증가
-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 흑자(GDP의 0.4%)로서 전년(△10.8조원)보다 14.4조원 증가

'07년 통합재정수지 증감내역

(단위: 조원, %)

구분	'06년(A)	'07년(B)	증감(B-A)	증가율
1. 수입	209.6	243.6	34.1	16.3
2. 지출및순용자	205.9	209.8	3.9	1.9
3. 통합재정수지(1-2)	3.6	33.8	30.2	-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6.4	30.2	3.8	14.4
5. 공적자금원금상환	12.0	0	△12.0	상환종료
6. 관리대상수지(3-4-5)	△10.8	3.6	14.4	-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는 수입측면에서 조세수입 증가('06년 대비+23.4조원) 등에 따른 총수입의 증가와

- 지출 측면에서 '07년 공적자금 원금상환 완료에 따른 지출소요의 감소*로 지출이 소폭 증가('06년 대비+3.9조원)한 데 기인

* '03년~'06년간 원금 총 49조원 지출('03년 13조원, '04~'06년 12조원)

[참고 1] 정부결산서류 개편

'06회계연도까지(예산회계법)	'07회계연도부터(국가재정법)
▷ 예산회계법 1. 세입세출결산(42조) 2.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 국가채무계산서() 4. 예비비사용명세서(40조)	▷ 국가재정법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58조제1항제1호) 2. 계속비결산보고서() 제2호)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3호) 4. 성인지 결산서() 제4호, 2010년) 5. 통합재정수지보고서() 제5호) 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제6호) 7.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제7호) 8. 명시이월비실적보고서() 제8호) 9. 사고이월명세서() 제9호) 10.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 제10호) 11. 총액계상사업실적보고서() 제11호) 12. 현물출자실적보고서() 제12호) 13.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명세서() 제13호) 14. 통합계정자금실적보고서() 제1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15호) 15. 예비비사용명세서(58조제2항) 16. 예비비사용명세서(53조제1항) 17. 기금결산보고서(73조제1항) 18. 성과보고서(8조제3항, 2008년)
▷ 국가채권관리법 제37조 5.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6. 기금결산보고서	
▷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7. 기업회계결산보고서	▷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19. 기업회계결산보고서
▷ 물품관리법 제21조 8. 물품증감및현재액총계산서	▷ 물품관리법 제21조 20. 물품증감및현재액총계산서
▷ 국유재산법 제48조 9.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총계산서	▷ 국유재산법 제48조 21.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총계산서

[참고 2] 예산편성체계 개편

- 개편 배경
 - 종전 투입·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관리에서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 위주의 예산구조로 개편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도입('04년도 예산)

- 개편 내용
 -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협의하여 정부예산을 분야, 부문,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 단위사업(일부는 재정당국 지정)은 각 부처가 자율 편성후 재정당국이 조정

종전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비교

2006		2007		
①	장 (28개) * 회계 28개 * 기금 15개	대기능	①	분야 (16개) (현행) 장·관·항 → (개편) 분야·부문
②	관 (76개) * 회계 76개 * 기금 26개	중기능	②	부문 (68개)
③	항 (963개) * 회계 509개 * 기금 454개	소기능	③	프로그램 (771개) * 회계 584개 * 기금 282개 (현행) 항·세항→ (개편) 프로그램
④	세항 (2,413개) * 회계 1,421개 * 기금 992개	실·국	④	단위사업 (3,431개) * 회계 3,044개 * 기금 728개 • 현행 세세항을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
⑤	세세항 (8,041개) * 회계 6,294개 * 기금 1,747개	개별사업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발간

* 이 자료는 2008년 4월 8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발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2008 OECD 통계연보(Factbook) 개요

◇ OECD는 4.8(화) 「2008년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8)」를 발간(2005년 첫 발간 이후 네 번째)

* OECD 국가의 2006년 기준 통계 비교

■ 「OECD 통계연보(Factbook)」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가간 수평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보고서

* 각 지표별 정의, 장기추세, 회원국간 비교, 그림 등을 포함

* 지표에 따라서는 OECD 회원국(30개) 외 BRICS 국가 통계도 포함

■ 「2008년 OECD 통계연보」는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총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

•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부문 이외에 각국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부문을 금년도 특집(Focus)으로 게재

* 2007년에는 국가별 세계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주(Migration)' 부문을 특집으로 게재

※ 주요부문 및 수록지표 목록(상세내용 첨부)

부 문	주 요 지 표
1. 인 구	인구규모·증가율, 합계 출산율, 고령인구, 외국인 인구
2. 거시경제	GDP,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부가가치증가율
3. 경제 세계화	상품·서비스 교역 비중·교역량, 국제수지, FDI
4. 물 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구매력평가환율, 장기금리
5. 에너 지	에너지 생산량·공급량, 전력·원자력생산, 원유생산·가격
6. 노동시장	고용률,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근로시간
7. 과학·기술	국제특허건수, PC 보유가구비율, ICT 투자
8. 환경	CO ₂ 배출량, 물소비량, 폐기물배출량
9. 교육	국제학력평가, 공공·민간 교육지출, 고등교육 비율
10. 공공재정	재정수지, 총정부부채, 사회적 공공지출, 조세수입
11. 삶의 질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비만을, 문화·여가지출, 보건지출
<특집> 생산성	고용인구당 부가가치 증가율,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및 노동생산성

2. 우리나라 관련 통계의 주요내용

◇ 경제·재정·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 및 환경 관련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다소 미흡

*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지출, 자동차 사고, CO₂ 배출량, 어업 양식량 등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지표는 국제학력평가(읽기), 연평균 근로시간,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 최하위 수준 지표는 합계출산율,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비중 등 2개임

① (거시경제) 1인당 GDP(23위), GNI(21위), 경제성장률(7위) 등 대다수 거시경제 지표는 05년도 수준을 유지

- 투자율은 05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3위)이며, 가계 저축률 역시 상위권
- * 1인당 GDP(ppp 기준) : 05년 \$21,342(23위) → 06년 \$23,038(23위)
- * 1인당 GNI(ppp 기준) : 05년 \$21,310(23위/29) → 06년 \$23,038(21위/26)
- * 경제성장률 : 05년 4.2%(7위) → 06년 5.0%(7위)
- * 투자율 : 05년 29.3%(1위) → 06년 29.0%(3위)
- * 가계저축률 : 05년 4.7%(8위/21) → 06년 3.9(7위/13)
- 소비자물가 수준 자체는 OECD 평균에 비추어 낮은편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편
- * 소비자물가 수준(OECD 평균=100) : 05년 75(24위) → 06년 78(24위)
- * 소비자물가지수(2000년=100) : 05년 117.8(8위) → 06년 120.5(9위)

② (인구) 총인구(9위)는 05년과 동일하나 인구증가율(24위 → 19위)은 다소 상승하였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

- * 총인구 : 05년 48,138천명(9위) → 06년 48,297천명(9위)
- * 인구증가율 : 05년 0.21%(25위) → 06년 0.33%(19위)
- * 합계출산율 : 04년 1.16(30위) → 05년 1.08(30위)

③ (경제 세계화) 교역규모(GDP 대비 수출입 비중 : 12위)는 05년과 동일

-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05년에 이어 계속 하위권 기록
- * GDP 對 수출입 비중 : 05년 41.1%(12위) → 06년 42.7%(12위)

*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 : 05년 \$232억(6위) → 06년 \$161억(7위)

* 서비스수지 : 05년 △\$137억(28위) → 06년 △\$188억(28위)

④ (노동시장) 실업률(26위/28), 장기실업자 비율(29위/29)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나, 고용률은 낮은편(20위)

- 고용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4위)이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24위/29)이 낮음
- 한편, 연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
- * 실업률 : 05년 3.7%(27위/28) → 06년 3.5%(27위/28)
- * 장기 실업자 비율 : 05년 0.8%(30위) → 06년 1.1%(29위/29)
- * 고용률 : 05년 63.7%(20위) → 06년 63.8%(20위/29)
- * 파트타임 비중 : 05년 9.0%(25위/29) → 06년 8.8%(24위/29)
- * 자영업자 비중 : 05년 33.6%(4위) → 06년 32.8%(4위)
- * 연평균 근로시간 : 05년 2,354시간(1위) → 06년 2,357시간(1위)

⑤ (재정) 정부부채(26위) 및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 부담(29위)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재정수지(6위)도 양호

- 지출 측면에서는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 비중(3위)이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28위/29)은 아직 낮은 수준
- * 재정수지(對 GDP 비율) : 05년 3.0%(5위) → 06년 3.0%(6위)
- * 정부부채(對 GDP 비율) : 05년 24.7%(26위/28) → 06년 27.7%(26위/28)
- * 조세수입(對 GDP 비율) : 05년 25.5%(29위) → 06년 26.8%(25위/26)
- * 법·질서관련 지출(對 GDP 비율) : 04년 3.8%(3위) → 05년 4.3%(3위/29)
- * 사회복지 지출(對 GDP 비율) : 02년 5.4%(28/29위) → 03년 5.7%(28/29위)

⑥ (교육·과학기술) 학생들의 PISA 평가 결과는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분야도 대부분의 지

표가 양호한 수준

- 학생들의 읽기(1위), 과학(5위), 수학(2위) 실력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3위)이 높음
-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의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하며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은 측정되지 않음
- * PISA 국제학력평가 결과 : 읽기 556(1위), 과학 522(5위), 수학 547(2위)
- * 교육기관 지출(對GDP 비율, 04) : 전체 7.2%(3위/26), 공공 4.4%(18위/28), 민간 2.8%(1위/26)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국제특허건수가 최상위 수준
- * PC 보유 가구 비중 : 05년 78.9(5위/25)→06년 79.6(5위/24)
- *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 05년 92.7(1위/27)→06년 94.0(1위/26)
- * 국제특허건수 : 05년 2,583건(4위)→06년 3,158건(4위)

⑦ (삶의 질 및 환경) 비만을 등을 제외한 삶의 질 및 환경과 관련된 많은 지표가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미흡

- 1인당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27위/28)등이 하위권이며 자동차 사고건수(2위), CO₂ 배출량(7위), 어업 양식량(2위)이 높음
- * 비만율(15세이상 인구 중) : 04년 3.2%(29위)
- * 1인당 보건지출(PPP \$ 기준) : 04년 전체 \$1,149(26위), 공공 \$591(26위)
- * 문화여가비 지출(對 GDP 비율) : 04년 4.4%(29위)→05년 4.5%(27위/28)
- * 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 04년 518.0(2위)→05년 491.2(2위)
- * CO₂ 배출량(백만톤) : 04년 464(6위)→05년 449(7위)
- * 어업 양식량(천톤) : 04년 938(2위/20)→05년 1,057(2위/25)

⑧ (생산성) 노동시간당 GDP성장률이 높은 편이고

비즈니스 분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은 편, 동 분야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낮은 편

- *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 : 05년 4.5%(2위/29)→06년 3.4%(3위/29)
- * 노동생산성 증가율 : 05년 5.9%(2위/26)→06년 4.6%(4위/19)
-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05년 Δ0.1(20위/25)→06년 Δ1.1(16위/19)

〈참 고〉 OECD Factbook 2008 세부내용

- ◇ 본 통계연보의 지표는 원칙적으로 OECD 회원국 30개국의 2006년까지의 통계를 수록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 일부 국가 누락, BRICS 국가 포함, 06년 이전 통계수록
- ◇ OECD는 회원국의 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며, 본 자료의 순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성격과 관계없이 절대치가 큰 순서임
- * 더하여 '2위/23'인 경우, 대상국가 23개국 중 2위를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거시 경제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GDP 규모 (ppp기준)	십억달러	1,027.4 (10위)	1,112.7 (10위)	1168.6
1인당 GDP (ppp기준)	US달러	21,342 (23위)	23,038 (23위)	31,469
1인당 GNI (ppp기준)	US달러	21,310 (23위/29)	23,038 (21위/26)	-
실질 GDP 성장률	%	4.2 (7위)	5.0 (7위)	2.9
가계 저축률	%, 가처분 소득 대비	4.7 (8위/21)	3.9 (7위/13)	-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 GDP대비	29.3 (1위)	29.0 (3위)	21.0
• 설비투자	%, GDP대비	9.0 (7위/26)	8.9 (3위/19)	-
• 주택건설투자	%, GDP대비	5.8 (12위/27)	5.6 (12위/20)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	△0.2 (28위)	△0.4 (29위)	2.5
철강 생산량	Mtpe (석유환산 백만톤)	47.8 (2위/20)	48.5 (2위/20)	17.5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농업 및 공업	%, 총부가 가치 대비	31.1 (3위/27)	30.5 (3위/23)	-
• 건설업	%, 총부가 가치 대비	9.2 (4위/27)	9.1 (3위/23)	-
• 운수, 무역, 호텔, 음식	%, 총부가 가치 대비	17.0 (27위/27)	17.0 (21/23)	-
• 금융, 보험업 등	%, 총부가 가치 대비	20.9 (18위/27)	21.2 (16위/23)	-
• 재정, 보건, 교육 등	%, 총부가 가치 대비	18.3 (23위/27)	18.9 (18위/23)	-
분야별 성장률				
• 농림어업	%	0.7 (12위/29)	△2.6 (15위/23)	-
• 공업	%	5.7 (4위/29)	6.5 (8위/23위)	-
• 서비스업	%	3.4 (11위/29)	4.2 (6위/23)	-

경제의 세계화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GDP대비	41.1(12위)	42.7(12위)	26.3
상품 수출입차 (통관기준)	십억달러	23.2(6위)	16.1(7위)	△29.2
• 수입 규모	십억달러	261.2(11위)	309.4(11위)	279.4
• 수출 규모	십억달러	284.4(10위)	325.5(10위)	250.2
서비스 수지	십억달러	△13.7(28위)	△18.8(28위)	6.3
• 수취	십억달러	45.1(13위)	51.9(14위)	69.2
• 지급	십억달러	58.8(11위)	70.6(11위)	62.9
경상수지 비중	%, GDP대비	1.9(13위)	0.7(13위)	-

물가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소비자물가 지수	2000년 =100	117.8(8위)	120.5(9위)	116.6
• 음식료품	2000년 =100	127.6(4위)	128.2(6위)	116.5
• 에너지	2000년 =100	119.1(18위)	127.5(20위)	145.0
생산자물가 지수 (제조업)	2000년 =100	108.8(17위)	112.0(16위)	115.9
장기금리(10년만기 국채)	%	4.95(5위)	5.15(5위)	-
소비자물가 수준	OECD=100	75(24위)	78(24위)	100
구매력 평가 환(PPP)	원	789	762	-
환율	원	1024.12	954.79	-

인구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총인구	천명	48,138(9위)	48,297(9위)	39,173.2
인구증가율	%	0.21(25위)	0.33(19위)	0.6
합계출산율	명	1.16 (30위, 04년)	1.08 (30위, 05년)	1.63
외국인 인구	%, 총인구 대비	0.4 (25위/26, 00년)	1.0 (20위/21, 05년)	-

에너지, 환경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총에너지 공급량 (TPES)	Mtoe(석유환산 백만톤)	213.8 (7위)	218.5 (7위)	184.5
• 1인당 총에너지 공급량	toe(석유환산톤)	4.43 (11위)	4.50 (11위)	4.70
전력 발전량	Twh (조wh)	387.9 (7위)	405.6 (6위)	344.5
원자력 발전량	Twh (조wh)	-	141.2 (5위/17)	75.9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비중	%, TPES대비	1.2 (30위)	1.3 (30위)	6.5
총에너지 생산량	Mtoe	42.9 (12위)	43.7 (12위)	128.4
원유 생산량	Mt (백만톤)	0.5 (19위/22)	0.6 (18위/22)	30.5
원유 수입 가격	US달러, 배럴당	50.19 (21위/24)	62.82 (13위/24)	-
CO2 배출량	백만톤	464 (6위, 04년)	449 (7위, 05년)	430.3(05년)
물 소비량	백만 m ³	26,020 (9위/27,00년)	26,193 (10위, 05년)	33,590 (05년)
어업 양식량	천톤	938 (2위/20, 04년)	1,057 (2위/25, 05년)	173.5 (05년)
폐기물 배출량	천톤	16,950 (10위, 00년)	18,252 (10위, 05년)	20466.7 (05년)

재 정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재정수지	%, GDP대비	3.0 (5위)	3.0 (6위)	△1.18
정부부채	%, GDP대비	24.7 (26위/28)	27.7 (26위/28)	77.1
사회적 공공지출	%, GDP대비	5.4 (29위/29,02년)	5.7 (29위/29,03년)	20.7
법·질서·방위 지출	%, GDP대비	3.8 (3위, 04년)	4.1 (3위/29,05년)	-
총 조세수입	%, GDP대비	25.5 (29위)	26.8 (25위/26)	36.2(05년)
• 소득, 자산세	%, GDP대비	7.5 (25위)	7.9 (23위/27)	13.0(05년)
• 소비세	%, GDP대비	8.8 (25위)	8.7 (23위/27)	11.4(05년)
• 근로자 1인당 세 부담	%, 노동비용 대비	17.3 (29위)	18.1 (29위)	37.5

노동시장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고용률	%	63.7 (20위)	63.8 (20위/29)	66.1
• 남성 고용률	%	75.0 (17위)	74.6 (17위/29)	75.6
• 여성 고용률	%	52.5 (22위)	53.1 (22위/29)	56.8
• 15~24세 고용률	%	29.9 (21위)	27.2 (23위/29)	42.9
• 25~54세 고용률	%	73.4 (26위)	73.9 (25위/29)	76.5
• 55~64세 고용률	%	58.7 (9위)	59.3 (9위/29)	53.0
파트타임 비중	%	9.0 (24위/29)	8.8 (24위/29)	16.1
자영업자 비중	%, 취업자 대비	33.6 (4위)	32.8 (4위)	16.0
근로시간	연간	2,354 (1위)	2,357 (1위)	1,777
실업률	%	3.7 (27위/28)	3.5 (27위/28)	6.1
• 남성 실업률	%	4.0 (25위/27)	3.8 (21위/26)	5.9
• 여성 실업률	%	3.4 (27위/27)	2.9 (26위/26)	7.1
장기실업자 비중	%	0.8 (30위)	1.1 (29위/29)	32.2

삶의 질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평균 수명	나이	78.0 (18/27위, 04년)	78.5 (20위/28, 05년)	78.6 (05년)
• 남자의 수명	나이	74.5 (21/27위, 04년)	75.1 (21위/28, 05년)	75.7 (05년)
• 여자의 수명	나이	81.4 (16/27위, 04년)	81.9 (19위/12, 05년)	81.4 (05년)
영아 사망률	명, 천명당	-	5.3 (9위, 02년)	6.1 (02년)
비만율 (15세 이상 인구)	%		3.2 (29위, 04년)	
1인당 총 보건지출	US달러 (PPP)	778 (26위, 00년)	1,149 (26위, 04년)	2,560 (04년)
• OECD 평균 대비	%	40 (26위, 00년)	45 (26위, 04년)	100
1인당 공공 보건지출	US달러 (PPP)	359 (28위, 00년)	591 (26위, 04년)	1,844 (04년)
• OECD 평균 대비	%	25 (28위, 00년)	32 (26위, 04년)	100
전체 문화·여가 지출 비중	%, GDP대비	4.4 (29위, 04년)	4.5 (27위/28, 05년)	-
• 정부의 문화·여가 지출 비중	%, GDP대비	0.8 (26위, 04년)	0.8 (25위/29, 05년)	-
•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 비중	%, GDP대비	3.7 (25위/27)	3.7(16위 /17)	-
재소자	명, 인구십 만명당	133.0 (7위, 01년)	121.0 (13위, 04년)	132.4 (04년)
도로	km	3,415 (9위)	3,415 (9위)	-
자동차 수	대, 천명당	269 (28위)	268 (28위)	-
• 자동차 사고 (백만명당)	건수	136 (4위, 04년)	132 (4위, 05년)	-
• 자동차 사고 (백만대당)	건수	518.0 (2위, 04년)	491.2 (2위, 05년)	-

교육 및 과학·기술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PISA 국제학력평가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읽기	평균 점수	534 (2위/29, 03년)	556 (1위/29)	492
• 과학	평균 점수	538 (3위/29, 03년)	522 (5위)	500
• 수학	평균 점수	542 (2위/29, 03년)	547 (2위)	498
고등교육 받은 비율				
• 25~64세 인구 중	%	30.5 (10위, 04년)	31.6 (8위, 05년)	26.0
• 55~64세 인구 중	%	9.7 (25위, 04년)	10.0 (26위, 05년)	18.6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 GDP대비	7.5 (2위, 03년)	7.2 (3위/26, 04년)	5.7
• 공공	%, GDP대비	4.6 (17위, 03년)	4.4 (18위/28, 04년)	5.0
• 민간	%, GDP대비	2.9 (1위, 03년)	2.8 (1위/26, 04년)	0.7
국제특허(미·일·EU)	건수	2,583 (4위)	3,158 (4위)	1712.9
PC 보유가구 비중	%	78.9 (5위/25)	79.6 (5위/24)	-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	92.7 (1위/27)	94.0 (1위/26)	-
ICT 장비 수출	백만불	87,163 (4위)	88,544 (4위)	31,062.7

생산성

지 표	단위	우리나라		OECD 평균
		05년	06년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	%	4.5 (2위/29)	3.4 (3위/29)	1.4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비즈니스분야)	%	△0.1 (20위/25)	△1.1 (16위/19)	-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즈니스분야)	%	5.9 (2위/26)	4.6 (4위/19)	-
고용된 인구당 부가가치증가율				
• 서비스업	%		8위 (00~05평균/28)	-
• 제조업	%		3위 (00~05평균/23)	-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이 자료는 2008년 4월 4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4.4일 오전 10:00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 4. 4(금) 10:00/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1차관(팀장),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토해양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중기청 차관보급
- 안건 :
 - 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기획재정부)
 - ②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 납입금, 학원비 등 교육비(교육과학기술부)
 - 원유 및 국내 석유제품(지식경제부)
 - 곡물,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농림수산식품부)
 -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 등(행정안전부 등)

I. 최근 물가 동향 및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①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전월비 0.9%) 상승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연초 가격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 지속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 대비, %)

구분	04	05	06	07.1~9	10	11	12	08.1	2	3
소비자물가	3.6	2.8	2.2	2.3	3.0	3.5	3.6	3.9	3.6	3.9
근원물가	2.9	2.4	1.8	2.3	2.4	2.4	2.4	2.8	2.8	3.3

※ 참고 1 :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전망치

① 부문별 동향

- 신학기 납입금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의 연초 가격조정 등으로 서비스 요금이 크게 상승
 - * 납입금 상승률(전월비, %) : 국공립대(9.2), 전문대(7.7), 사립대(7.4)
- 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전년 동월비 18.8%(전월비 1.8%) 상승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도 크게 상승

* 전월비 상승률(%) : 국수(35.0), 라면(12.8), 스낵과자(9.1)

부문별 물가동향

(단위: %)

구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요금			
				석유류	집세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전월비(%)	0.9	△2.4	1.2	1.8	0.3	0.2	1.9
기여도(%p)	(0.93)	△0.21	0.37	0.11	0.05	0.02	0.67
전년동월비(%)	3.9	△1.3	6.3	18.8	3.3	2.0	3.9
기여도(%p)	(3.9)	△0.11	1.92	1.01	0.55	0.19	1.35

③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 전월대비로 15개 품목이 소비자물가 전체 품목의 상승률(0.9%)을 초과하였고,
- 10개 품목이 0.9% 미만이었으며, 13개 품목이 동결, 14개 품목이 하락하였음

52개 품목별 상승률

(단위: 전월비 상승률, %)

구분	0.9% 이상 상승(15개)	0.9% 미만 상승(10개)	동결 또는 하락(27개)
국제유가 관련	등유(7.1), 경유(3.9), 휘발(1.2), 목욕료(1.2)		LPG(△3.2), 도시가스료(△0.1), 전기료(0.0), 전철료(0.0), 시내버스료(0.0), 시외버스료(0.0)
국제곡물가 관련	라면(12.8), 스낵과자(9.1), 빵(6.3), 달걀(2.3), 콩나물(1.8), 자장면(1.7)	쌀(0.6), 두부(0.7), 밀가루(0.3), 식용유(0.2), 우유(0.2)	
계절적 요인	납입금(6.7), 보육시설이용료(6.6), 학원비(3.1)	이미용료(0.6)	배추(△12.1), 무(△12.4), 양파(△3.2), 사과(△2.0), 마늘(△1.4), 쇠고기(△1.0), 돼지고기(△0.7)
기타	파(6.4), 세제(1.9)	상수도료(0.4), 고추장(0.4), 화장지(0.3), 주거비(0.2), 외래진료비(0.1)	고등어(△2.2), 설탕(△0.3), 샴푸(△0.1), 유아용품(△0.3), 공동주택관리비(△0.5), 멸치(0.0), 소주(0.0), 바지(0.0), 위생대(0.0), 가정학습지(0.0), 쓰레기봉투료(0.0), 이동전화통화료(0.0), 방송수신료(0.0)

II. 이미 발표된 안정대책의 추진상황

■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점검결과 ‘서민생활안정대책(3.3 국무회의 보고) 과 ‘생활필수품 집중점검 및 대응계획(3.25 국무회의 보고)’은 정상 추진중

- 총 17개 과제 중 8건이 조치완료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유류세 10% 인하, 곡물·농자재·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옥수수·대두 등 시장접근물량 확대
- (공공요금 관련) 중앙공공요금 동결,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철근 매점매석 고시 및 단속

- 9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택시LPG 유류세 면제 및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대형마트의 석유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쌀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
- (공공요금 관련)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차상위 가구에 대해심야전력 요금 인상분(08.1월) 환원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점검,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점검 등 교육비 관리

※ 참고 2 : 기추진 대책 점검결과

III. 4월중 중점 추진 추가대책

■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 참고 3 : 4월 중 조치 필요사항

(1)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세부대책 보완후 경제정책조정회의(4. 11, 금)에 안건상정 예정

- 석유제품의 상표표시 규제 개선(공정위)
 - 신규 판매업자(예 : 대형할인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고시* 유권해석
 - *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위)
- 정유사의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공정위)
 -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결정 예정(4월)
-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 금지 제도개선(지경부)
 -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평거래 제도개선 및 보완 대책 강구
-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지경부)

(2)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지경부)

-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4월중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 저소득층 및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사업 예산 조기 집행
 - *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 지원(150억원) 및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사업 예산(190억원) 08. 4. 20일까지 대상자 선정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용자사업 08. 5월 중 지원대상 선정 완료
 - * 08. 3. 26일 에너지특별회계 용자금(250억원)지원 지침 확정

(3) 가격정보 제공 강화

-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소비자원을 통하여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 발생원인 분석(6월)
-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 제고(공정위)
-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관세청, 5월)
-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근절(기표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합동, 4월)
 -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정을 명령하고 허용오차 초과시 고발조치
 - *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 초과시 사법고발조치(1년이 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계량에관한법률 §48조)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비교, 대형할인점간 가격비교 및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 실시(08. 4~12월)후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유통업체에 대해 산정근거 요구 후 필요시 소비자행동 실시 예정

(4) 관세 인하 효과 모니터링 및 통관지원 등을 통한 수입물품 가격안정 지원

- 곡물·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4. 1)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 실시
-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의 생필품을 수입

할 경우 담보물 제공 없이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 허용(4월)

-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해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4월)

* 월별 납부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매월말 일괄 납부하는 제도

(5) 수급애로 해소, 세제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공공비축 산물벼(94천톤) 매각, 정부비축물량·농협중앙회 보유물량 공매(4월)

* 전체 비축물량(94만톤) 중 5.3%(5만톤) 수준 공매 → 시장공급량 1.4% 확대

-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08.12월 종료) 연장 검토

-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 확대대책 마련

* 자급률 향상 목표 : '12년까지 식용수요의 2.5%('07년 0.7만톤 → '12년 5)

IV.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서민생활 안정 T/F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참고 1]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전망치

국가	'06	'07	'08			정부전망치
	연간	연간	1	2	3	
미국*	2.2 (CPI : 3.2)	2.1 (2.9)	2.0 (4.3)	2.0 (4.0)	-	FRB는 근원 PCE 1~2%를 comfort zone으로 봄
유로	2.2	2.1	3.2	3.3	3.5	ECB의 중기 물가안정수준 : CPI 2%
일본	0.3	0.0	0.7	1.0	-	반기별 추정 예상물가를 근거로 통화정책 운용 '08년 예상물가상승률('07. 10) : 0.2~0.4%
중국	1.5	4.8	7.1	8.7	-	매년 전인대에서 경제운용방향 발표 '08년 물가 목표('08. 3) : 4.8%
싱가포르	1.0	2.1	6.6	6.5	-	싱가포르 통화청 '08년 예상물가상승률('08. 2) : 4.5~5.5%
홍콩	2.1	2.0	3.2	6.3	-	-
대만	0.6	1.8	3.0	3.9	-	-

* 미국은 근원 PCE 지수(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나머지국가들은 CPI(소비자물가상승률)

[참고 2]

기추진 대책 점검결과

과 제 명	점검결과	세부 추진실적
유류세 10% 인하	조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3일 관련법 일괄 개정 • 3. 10일 공포 · 시행완료 • 3. 10일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정상추진	• 경제정책 조정회의 상정(4. 11일)
주유소 판매 가격공개	정상추진	• 실시간 공개 시스템 가동(4.15일부터)
택시LPG 유류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LPG 면세업무 대행사업자 선정(3. 4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4. 1일)
곡물 · 농자재 · 석유 제품 82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조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관련 32개 품목 무세화(4. 1일) • 니켈 등 원자재 37개 품목 무세화 • 석유제품 등 기타 13개 품목 할당 관세 인하
옥수수 · 대두 등 시장접근물량 확대	조치완료	• 14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확대(3. 28일)
쌀면 보급 확대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기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3. 20일) • 합동조사 실시(3. 24~28일)
교육비 관리 강화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수강료 표시제 특별 지도 · 점검 실시 - 2,430개 학원 점검, 125개 학원 적발
모기저금리 동결	조치완료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현 5.2%) 동결
중앙공공요금 동결	조치완료	•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 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여 인상 동결 완료(3. 3일)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조치완료	• 시 · 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의를 통해 협조요청(3. 10일)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정상추진	• 전산시스템 개발(3. 15일부터)
심야전력 요금 인상분 환원	정상추진	• 세부시행 방안 검토(4. 30일까지)
생활필수품 선정 및 가격동향 점검	정상추진	• 52개 생활필수품 선정(3. 25일)
철근 매점매석 고시	조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점매석 행위 고시 완료(3.11) • 1차 단속(3. 12~13), 2차 단속(3. 26~28) 실시
합동점검반 구성	조치완료	• 쏠지자체(246개)에 합동점검반 구성완료(3월)
통행료 50% 인하	정상추진	•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처협의 · 입법 예고(3. 11~ 31일)를 거쳐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

[참고 3]

4월중 조치 필요사항

순번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1	곡물, 원자재, 석유제품 등 할당관세 인하	재정부	4.1부터
2	실제량과 표시량 비교 조사	기표원	4.2~3
3	석유제품유통시장 개선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표시 제도 개선 검토 •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 조사 • 수평거래 금지 제도개선 •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개선 •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지경부 공정위	4.11
4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제공시스템 가동	지경부	4.15까지
5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마련	지경부	4.30까지
6	공공비축 산물벼 매각, 비축물량 공매	농식품부	4.30까지
7	주요생활품 국제 소비자물가 조사	소비자 단체	4.30까지
8	할당관세 인하 효과 점검	재정부	4.30까지
9	생활품 수입시 신용담보 통관 허용	재정부 관세청	4.30까지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 이 자료는 2008년 3월 25일 관세정책관실 산업관세과에서 발표한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밀·옥수수 등 가공용 곡물, 요소·대두박 등 농축산업 원재료, 페로실리코 망간 등 산업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4.1일)하고,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 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 시행

- 국내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3.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시장접근물량 증량 : UR협상 결과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한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수요가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한하여 매년 한도를 증량하는 제도 (증량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율로 수입)

■ 『긴급할당관세』 주요 내용

- (대상품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모두 발굴, 총 82개 품목(신규 36개 포함) 선정하여,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

* 할당관세 품목 수 (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간급) 82

- (세율 인하폭) 대상품목을 원칙적 모두 무세화(69

개)하되,

-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품목(휘발유 등 석유제품),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큰 품목(원유·LNG)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 (할당물량)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양의 물량을 배정

*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0.1%, 수입물가 0.27%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시장접근물량 증량』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
- (증량 규모) '07년 증량 규모(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 증량

- 특히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소맥 등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용 옥수수 물량을 대폭 증량

* 사료용 옥수수 증량 : ('07) 328만톤→('08) 628만톤

- 이번 조치로 생필품 가격 안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08년 긴급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시행 내용

2008년도 긴급할당관세 시행

I. 추진 배경

- 현재 『'08년 상반기 할당관세』를 시행 중 (관세법 71조 근거)
 - 46개 품목에 대해 연간 기준 1조 3천억원 지원
- '08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 이후 수입 곡물,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 * '08 상반기 할당관세 가격적용 기준 : '07. 9월 평균 수입가격
 - 밀·옥수수 등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 등 기존 할당관세 품목 가격 급등
 - * 주요 품목 수입 단가 인상률 ('07. 9~'08. 3 상반기) : (가공용 밀) 59.7%, (가공용 옥수수) 54.2%, (겉보리) 115.8%, (면실박) 55.8%
 - 할당관세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품목의 가격도 급등
 - * 주요 품목 수입 단가 인상률 ('07. 9~'08. 3 상반기) : (요소) 32.2%, (무수 암모니아) 68.7%, (면실피) 32.2%, (펄박) 23.0%
- 3. 10일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운용방향』대통령 보고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자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방침 보고
- 3. 20일 기획재정부,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82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방안 보고

II. 시행 방안

기본 방향

- 대상 품목: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포괄(82개)
- 관세 인하폭: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무세화(69개)
- 할당물량 배정: 국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총분히 배정

1. 대상 품목

-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할당관세 목적(관세법 71조)인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할당관세 시행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모두 발굴, 총 82개 품목(신규 36개 포함) 선정
 - ⇒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
 - * 할당관세 품목 수 (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82

2. 세율 인하폭

- 세율인하 기준
 - ① 할당관세 대상인 품목은 원칙적 모두 무세화 추진
 -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곡물, 사료용 원료 등은 모두 무세화
 -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대상품목(32개)은 모두 무세화 단행
 - ② 경쟁촉진, 국내산업 보호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세율 유지가 필요한 품목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무세화 품목 (69개)
 - 가공용 밀·옥수수, 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품목 : 밀·옥수수(0.5), 밀 전분(8), 매니옥 전분(9), 요소(2)

※ () 내는 현행 실행관세율(%)

•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 주요품목 : 생사(1), 금지금(3), 니켈분(3), 니켈괴(1), 주석괴(3), 철분(5)

※ () 내는 현행 실행관세율(%)

■ 비무세화 품목 (13개)

• 원유·LNG(1% 유지) :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와, 관세율 인하의 가격효과에 비하여 세수감소*가 큼

* 원유·LNG에 대한 관세율 1% 인하시 연간 약 5천억원의 세수 감소 추정

• 석유화학제품(6개)* : 지식경제부가 석유화학업계와 완성품 업계(중소기업)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요청한 관세율 수준을 수용

* 대상품목 (현행 실행세율→조정 할당세율, %) : 저밀도폴리에틸렌(4→4), 고밀도폴리에틸렌(3→3), 아크릴로니트릴(3→3), 폴리프로필렌(5→4), ABS합성수지(6.4→4), 폴리스티렌(6.5→4)

• 설탕(35% 유지) :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여 현행 관세율 유지

설탕 관세율 및 수입량 추이

기간	'05	'06	'07 1/4	'07 2/4	'07 3/4	'07 4/4	'08 1/4*
관세율	50%	40%	35%				
수입량 (톤)	4,346 (1.2)	2,579 (0.7)	1,982 (2.2)	5,572 (6.3)	9,317 (10.5)	11,191 (12.6)	13,123 (14.8)

* () 내는 가공원료용 설탕 기준 수입점유율(%)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 (3% → 1%)

-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4개 정유사에 의한 과점적 구조이며, 국제 제품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제품 수입실적이 저조

* '07 하반기 석유제품 수입점유율(%) : (휘발유) 0, (등유) 2.1, (경유) 0.3, (B-C유) 2.7

- 이번 관세율 인하는 외국제품의 국내 도입가격을 낮추어,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데 목적

• 관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

* '08. 1월 현재 국내외 휘발유가 격차는 45~50원 수준이나, 관세율 2%p 인하는 17원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옴

- 향후 석유제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될 경우 외국제품 국내유입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구도 조성 기대

※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구조 조성과 함께 석유제품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

- 단기대책 : 주유소 실시간 가격조회 시스템 조기 가동 등

- 구조적 대책 : 대형할인점의 자사상표 석유제품 판매 촉진, 복수상표제 활성화, 석유제품의 선물 시장 상장 등

3. 할당물량 배정

■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충분한 양의 할당물량을 배정

•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관세율을 인하여 국내산업과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량 제한 없이 허용

(수입되는 전량이 한계수량, 42개 품목)

* 휘발유·등유·경유·중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설탕 등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한계수량을 제한하는 품목 (40개)

- 국내 생산농가 생산분을 우선 확보한 후 추가 소요량을 한계수량으로 설정

* 가공용 밀·옥수수, 맥주보리, 맥아, 대두, 대두박, 전분 등

III. 지원 효과

- 금번 긴급할당관세를 통하여 약 6천억원 추가 지원 효과(현행 할당관세 지원을 포함할 경우 총 1조 9천억원 수준)
- 전체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0.1% 수준 추정
 - 수입물가는 0.27%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IV. 시행관련 조치계획

- 시행 시기 : '08. 4. 1일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 시행 (당초 4,30일까지 시행 예정)
- 사후관리 관련 조치계획
 - 금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에 따른 관세인하가 관련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업계에 협조 요청
 -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매월 관련 제품의 가격상황을 점검

08년 긴급할당관세 조정결과

(총 82개 품목, 69개 품목 무세화)

구분	기 존 (46개 품목)	신 규 (36개 품목)
무세화 (생필품, 비경쟁 원자재)	유장(실행 20→08할당 2), 매니 옥칩 (사료용) (20→10), 매니 옥펠리트 (사료용) (3→0), 밀(제분용) (1.8→0.5), 겔보리(사료용) (20→2), 옥수수 (사료용) (1.8→0), 옥수수 (가공용) (3→0.5), 대두(채유및탈지) (5→0), 사료용근채류 (5→2), 동식물성유지 (8→6), 유당 (20→5), 대두박 (1.8→1), 면실박 (2→1), 야자박 (2→1), 향료 (8→5), 매니 옥칩 (주정용) (20→10), 유연처리가족 (5→2.5), 맥주맥 (30→20), 맥아 (30→10), 브라 인슈림프알 (8→4), LPG (3→1.5), 폴리락트산 (6.5→4), 생사 (8→1), 귀금속회 (2→1), 페로니켈 (3→1), 니켈분 (5→3), 산화코발트 (4→3), 코발트분 (3→1), 납사제 조용 원유 (3→0), 페로실리코망간 (5→3), 동박 (8→4), 니켈괴 (3→1), 건식식각기 (8→2.5), 증착기 (8→2.5), 금지금 (3→0)	당밀(실행 3), 밀기울 (2), 팜박 (2), 면실피 (5), 커피크림 용 카세인산염 (8), 밀전분 (8), 옥수수전분 (8), 매니 옥 전분 (9), 대두유 (5.4), 농약 원제 (2), 요소 (2), 무수암모 니아 (1), 파라베이스 (6.5), 페로실리콘 (3), 주석괴 (3), 마그네슘인곳 (3), 오산화바 나뭇 (2), 재생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 (2), 재생 스테이플섬유 (리오셀) (4), 백금괴 (3), 로듐 (3), 철분 (5), 전극봉 (5), 코크스 (3), 페로크롬 (3), 알루미늄박 (8), 정제 동관 (8), 석영유리 (3), 막성장 장치 (OLED 용) (8), 도포기 (8), 원피 (1), 합판제조용 단판 (8), 무늬목 (3), 판유리제조용 성형기 (8)
[69개]	* () 내는 실행세율 → 08 할당세율 【35개 품목】	* () 내는 실행세율 【34개 품목】
경쟁촉진, 산업보호 등 품목 (적정한 수준으로 주무부와 협의 조정)	아크릴로니트릴 (실행 6.5→08할당 3→긴급 할당 3), 저밀도 폴리에틸렌 (6.5→4→4), 고밀도 폴리에틸렌 (6.5→3→3), 폴리프로필렌 (6.5→5→4), 설탕 (40→35→35), 원유 (3→1→1), LNG (3→1→1), 휘발유 (5→3→1), 등유 (5→3→1), 경유 (5→3→1), 중유 (5→3→1)	ABS 합성수지 (실행 6.5→긴급할당 4), 폴리스티렌 (6.5→4)
[13개]	* () 내는 실행세율→08할 당세율→긴급할당세율 【11개 품목】	* () 내는 실행세율→긴급 할당세율 【2개 품목】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

I. 시장접근물량(MMA*) 증량 제도 개요

* Minimum Market Access

- UR협상 결과('95년) MMA가 설정된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수요가 MMA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매년 증량

* MMA 물량만큼은 저세율, 초과분은 고세율 적용 (대두 : 5% → 487%)

II. 08년 증량 기준

기본 방향

- MMA가 설정된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 부족 등으로 추가

- 수입이 불가피 한 품목에 대해 적정수요량을 증량

* 적정수요량은 전년도 증량,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농림수산물부가 요청해온 내용을 최대한 반영

- 물가안정(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기초농산물

- 대상품목 (3개) : 팥, 참깨, 대두
⇒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량 증량

-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한 농축산 원자재

- 대상품목 (6개) : 옥수수, 유장, 보조사료, 사료용 근채류, 종계, 종돈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소요량 증량

-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품목

- 대상품목 (5개) : 감자분, 감자·밀·매니옥·고구마전분
⇒ 국내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량을 증량

III. 08년 MMA 증량 내용

- 옥수수,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해 총 910만톤 증량

* 증량물량은 '07년 총 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

-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¹⁾ 소맥 등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료용 옥수수 MMA를 대폭 증량²⁾

1) 주요 곡물 '06년말 대비 '08. 2월 가격상승률 (%) : (옥수수) 52, (소맥) 172, (매니옥 팰리트) 116, (대두박) 85, (밀기울) 76

2) 사료용 옥수수 증량 : ('07) 328만톤 → ('08) 628만톤

주요 농산물 08년 MMA 증량 내용

(단위: 천톤)

품목	당초물량 (A)	07증량	08증량 (B)	08물량 (A+B)	08년 추가 증량 사유
사료용 옥수수	4,721	3,279	6,279	11,000	밀 등 가격이 급등한 사료 대체
대두	1,033	416	677	1,710	가격이 급등한 사료 대체
감자전분	46	136	126	172	-
팥	15	2	2	17	-
참깨	7	68	68	75	-

* 이번 증량조치는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수산물부 「농축산물 무역정책협의회」의 의결을 얻었음

IV. 증량 효과

- 증량물량만큼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물가안정, 농가 경비절감 및 식품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특히, 가격이 급등한 밀 등 사료용 곡물의 대체 사료인 옥수수의 한계수량을 대폭 증량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

[참고 1] 시장접근물량(MMA) 증량의 개념

- 수입수요가 MMA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한해 매년 증량

* MMA 한도는 UR협상 당시 88~90년 평균 소비량·수입량에 근거하여 기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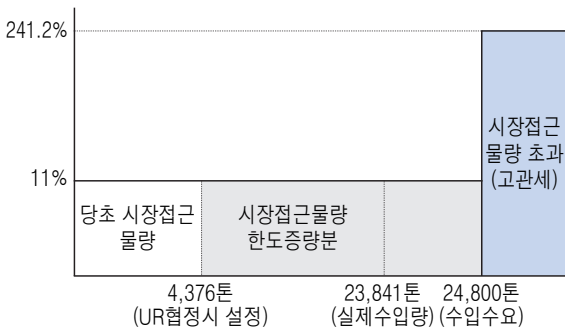
* 품목별 실제 수입량은 총 수입수요의 80~98% 수준이며, '07년 실제 수입량은 당초 수입수요의 평균 83.5%였음

〈사례 : '07년 고구마전분 시장접근물량 한도 설정〉

* 예를 들어, 고구마전분은 UR협상시 시장접근물량이 4,376톤으로 책정되었으나, '07년 수입수요 조사시 24,800톤으로 조사되어 국내 공급 부족분인 20,424톤을 증량시켜 주었음

- 수입 고구마전분에 대해 시장접근물량까지는 11%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분은 241.2%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올려주지 않았다면 4,376톤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은 241.2%의 높은 관세율을 물었어야 했을 것임

* '07년 실제 수입량은 당초 수입수요의 96%인 23,841톤이었음



[참고 2] 08년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단위: 톤)

품명	관세율(%)		08년 시장접근물량			
	시장접근물량 이 내	시장접근물량 초과	현행	증량	합계	
유장	20	49.5	54,233	12,000	66,233	
보조사료	5	50.6	4,171	85,829	90,000	
사료용 근채류	5	46.4 ~ 100.5	32,133	824,867 (391,867)	857,000	
종돈(두)	0	18	1,850	1,150	3,000	
종계(천수)	0	9	461	100	561	
팔	30	420.8, 607.5	14,694	2,056	16,750	
참깨	40	630	6,731	68,269	75,000	
옥수수	1.8, 3	162.9~630	6,102,100	7,251,815 (587,900)	13,353,915	
대두	탈지·사료용	5	487	846,365	568,635	1,415,000
	가공용	5	487	185,787	109,218	295,005
변성전분	8	201.2~455	45,692	125,945	171,637	
고구마전분	11	241.2	4,376	20,124	24,500	
매니옥전분	9	455	2,400	31,490	33,890	
밀전분	8	50.9~800.3	227	808	1,035	
감자분	5.4	304	10	50	60	
합계	-	-	7,298,920	9,101,105	16,400,025	

* ()내는 '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에 따른 기 증량분 ('08년 증량에 포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 이 자료는 2008년 3월 26일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에서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추진배경

- 최근 1~2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상승
 - * 로이터 상품지수 : (05말)1,797→(06말)2,229→(07말)2,593
→ (08. 2말)3,004
 -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구입가격은 '08. 2월 말 현재 '06. 12월말보다 평균 36.5% 상승*
 - * 철강류(고철 46.6%, 선철 46.9%, 형강류 48.6%), 골재 40.2%, 니켈 42.5%, 목재 44.0%, 구리 44.3%, 금 60.0% 등('08. 2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를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 중소기업 50% 이상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 * 자체 흡수가 가능한 원자재 가격상승폭은 대부분 10% 이내에 불과(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의 생산 및 가동률 등이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으며 주물 등 일부 업종은 납품가 인상을 위한 조업중단까지 발생한 상황
 - *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 (07. 10)72.1→ (11)72.4→(12)71.8
→(08. 1)70.6
 - * 일부 주물업체는 2차례 조업중단(3. 7일 및 3. 17일), 레미콘 업체도 3. 19일부터 생산중단하였으나 3. 22일부터 생산재개

- 최근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 필요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방안'(3. 3일, 3. 25일)에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 애로해소방안'을 마련

II. 애로해소 방안

기본방향

- ◇ 시장경제 및 경쟁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 제도개선도 병행
- ◇ 이를 위해
 - 원자재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 강화
 - 원자재 구매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하고 관세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완화
 - 원자재 가격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부담 흡수능력 제고

-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한 외국의 정책사례
 - (일본) [07.8월 일본 중소기업청 대책 등]
 - 에너지절약 설비도입에 대한 보조 및 세제조치 활용강화, 민·관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대출확대, 장기적으로 제철원료·비철금속 등에 대한 비축제도 방안 연구 등
 - * 투기적 거래 감시, 원자재 확보대책, 해외 자원개발 문제를 협의
 - (대만)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캐나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철회(반덤핑 조치 억제) 등

1. 원자재의 수급안정 지원

① 정부비축 원자재 방출 규모·품목 확대(조달청)

-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週間 방출량을 기존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 조정(3월)

* 週당 80억원 상당의 물량을 추가로 방출하는 효과('08. 3월 가격 기준)

- 공동구매* 대상 품목을 현행 6개(알루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에서 희소금속류(例 : 망간, 코발트) 등 보유 품목 전체로 확대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 요청하면, 조달청이 구매적기 포착 및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려 구매대행·공급하는 제도

- 정부비축제도 활용 제고방안 강구
 - 성수기 공급 부족으로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철근* 등 건축 기초 자재의 경우 수급상황 및 가격추이,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비축품목으로 추가

* 철근은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고, 비수기에는 수요가 급감하는 계절성 상품(성수기 3~5월, 9~11월) : 100~110, (비수기) 70~80 만톤/월]

- 조달청 비축규모를 '07년말 국내수입수요의 18일분에서 '12년 60일분까지 확대하여 유사시 방출할 수 있는 재고 확충

② 철강설비 추가증설 추진(지식경제부)

- 철강의 장기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12년까지 1,400만톤/년(열연 900+후판 500) 신·증설 추진

철강설비 확충현황

업 체 명	생산품목	건설기간	투자비(억원)	생산능력(만톤/년)
현대제철(당진)	열연650 후판150	'06~'11	50,000	800
동부제강	열연관판	'07~'09	6,200	250
동국제강	후판	'07~'09	7,600	150
포스코	후판	'08~'10	17,910	200

③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 구축(중기청)

- 중기청에서 추진중인 원자재수급정보망 구축사업(08년 1.5억원)을 9월까지 조기에 완료
- 포털시스템을 통해 원·부자재 수급상황, 구매정보 등 제공
- 원자재 애로신고 및 상담센터 구축·운영

④ 해외 자원확보 강화(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 정부예산·수은·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 정부예산 : ('08)9,097억원→('12)1.4조원

* 수출입은행 용자 : ('08)6,000억원→('12)2조원

* 국민연금 : 매년 2조원 투자 예정

-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협상 추진을 통해 안정적 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자원 부국인 호주와의 FTA 추진도 검토

*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6개국

- GCC와의 FTA는 '08. 6~7월 중 협상개시 추진
- 호주와의 FTA는 민간공동연구 종료에 따른 라운드테이블 개최(08.4월중)를 통해 후속조치 논의

2.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강화

①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기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용자사업인 '원자재구매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여타 예산절감 등을 통해 연간 자금규모도 1,200억원(1,750 → 2,950억) 추가 조성
- * 원자재구입자금 지원조건 : 5억원 한도, 금리 5.1%,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 * 2월말 현재 1,750억원의 29.3%인 513억원 지원결정(자금접수 1,379억, 78.8%)

② 국책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 자금규모 확대(금융위, 기획재정부)

- 신용보증기금의 원자재구매자금 보증확대 등
- 최근 신규 조성한 중소기업은행의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이용시 동 대출금액의 80% 이상 보증(6월까지 방안마련)
- *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은 금년 3. 6일부터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대비 50bp 금리 우대, 총 5,000억원(기업별 5억원) 한도이며 3. 18일까지 34억원 既지원
- 아울러 원자재 구매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율 우대 및 심사방법 간소화* 추진(6월까지)
- * 예) 전결권 및 심사요건 완화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구매자금 관련 금융도 한도 소진시 추가공급
- * 산은 「중소기업 우대운영자금(일반 운영자금 대출 대비 50bp 금리감면, 기업별 20억원 한도)」은 연초 2조원 한도 책정(3. 18일 현재 2,562억원)
- * 수은 「원자재 수입자금(중소기업에 대해 20bp 금리감면)」은 금년중 6천억원 한도 소진시 추가조성(3.19일 현재 1,799억원)

③ 긴급 할당관세 인하(기획재정부)('08. 3. 25일 기 발표, '08. 4. 1일 시행)

- 석유제품, 곡물, 농업용 원자재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
- 가공용·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주요 무세화 대상 품목 : () 내는 현행 실행관세율, %]

- 가공용 원료 : 밀·옥수수(0.5), 밀전분(8), 유당(5) 등
- 사료용 원료 : 매니옥칩(10), 당밀(3), 대두박(1) 등
- 농업용 원자재 : 요소(2), 농약원제(2), 무수암모니아(1) 등
- 산업용 원자재 : 주석괴(3), 동박(4), 철분(5), 니켈분(3), 원피(1) 등

-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할당관세를 2%p(3%→1%) 인하시어 국내제품 가격인하 유도

※ 금번 긴급 할당관세를 통하여 약 6천억원 추가 지원 효과(현행 할당관세 지원을 포함할 경우 총 1조 9천억원 수준)가 기대

3. 납품단가 반영시스템 개선 및 시장왜곡 감시강화

① 정부 납품가격 현실화

- 정부납품 신규계약시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조사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3월, 조달청 기조치)
-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기획재정부)
- 계약체결후 90일 이내*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 90일이 경과한 계약은 3% 이상 원가부담 상승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 회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조정기준을 구체화(5월)
- 특정 자재가 15% 이상 급등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기준(회계예규) 마련(4월)

② 민간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가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공정위)
-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공정위)
- 불공정행위 상시감시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11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당 납품단가인하 혐의기업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준약정서의 활용을 적극 유도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R&D 지원시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6월)(중기청)

③ 매점매석 단속강화(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 1차 매점매석 합동단속('08. 3. 11~12) 이후 안정되고 있는 철근, 고철에 대해 금일(3. 26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장 안정세를 공고화
- * 단속반 구성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합동
- * 단속기간 : '08. 3. 26~28 (3일간)
- * 단속대상 : 철근, 고철 제조·유통·수요업체 중 제보업체 등 18개사

④ 업종별 협의체 구성 지원(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 등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체 구성을 유도

<예시>

- 건설자재 상생협의회 : 건설업종 원재료·생산·수요업체
- 석유화학·플라스틱 상생협의회 : 합성수지 생산·수요업체

4. 생산성 향상 추진

① 희소금속 대체기술 개발(지식경제부)

- 대상 : PDP, LCD, 항공기부품 등 국내 주력·첨단산업에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대체를 위한 기술
- 추진계획 : '08. 7월까지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9월부터 기술개발 착수('08년도 20억원)
- * 희소금속은 일반적으로 인듐, 텅스텐, 망간 등 31개 금속으로 분류되며 리튬과 같은 9개 희소 금속의 매장량은 70% 이상이 상위 5개국에 편중

②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대응할 수 있도록
- R&D개발 자금지원, 경영혁신 지도 및 교육 등 실시(중기청)
- * 신규 PPM 품질혁신시스템구축지원(기술지도, 교육, 시설개선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 생산설비정보화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6월) (지식경제부, 중기청)
- * 중소기업 생산성(대기업 대비, '02년) : (韓)34.5%, (美)58.3%, (日)53.2%, (獨)63.1%

5. 모니터링 시스템 지속 가동

- 원자재 가격 및 수급상황,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점검체계 지속 가동
- 구성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간사),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국장급, 산업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 시장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동향 및 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참고 1]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월평균)

품목	단위	가격 기준	07. 3월	07. 12월	08. 2월	08.3월 (3.25일 까지 평균)	증 감		
							전년동월 대비	전년말 대비	전월 대비
Dubai	\$/B	-	58.92	85.66	90.2	96.6	64.0%	12.8%	7.2%
Brent	\$/B	IPE	62.28	90.99	95.4	104.4	67.7%	14.8%	9.4%
WTI	\$/B	NYMEX	60.6	91.29	95.4	105.5	74.1%	15.6%	10.6%
전기동	달러/톤	LME	6,453	6,684	7,894	8,326	29.0%	24.6%	5.5%
알루미늄	달러/톤	LME	2,765	2,438	2,817	3,069	11.0%	25.9%	8.9%
니켈	달러/톤	LME	43,670	26,451	28,286	31,717	△ 27.4%	19.9%	12.1%
아연	달러/톤	LME	3,278	2,388	2,474	2,586	△ 21.1%	8.3%	4.5%
연	달러/톤	LME	1,886	2,608	3,074	3,060	62.2%	17.3%	△ 0.5%
주석	달러/톤	LME	13,784	16,485	17,320	19,714	43.0%	19.6%	13.8%
옥수수	센트/부셸	CBOT	407	432	520	552	35.7%	27.6%	6.1%
소맥(밀)	센트/부셸	CBOT	465	927	1,060	1,130	142.9%	21.9%	6.5%
대두(콩)	센트/부셸	CBOT	760	1,155	1,388	1,378	81.3%	19.4%	△ 0.7%
원당	센트/파운드	CSCE	10.4	10.4	13.3	13.1	26.4%	25.5%	△ 1.7%
원면	센트/파운드	NYCE	53.7	65.5	72.2	79.4	47.9%	21.2%	10.1%
커피원두	센트/파운드	CSCE	112.0	132.9	153.3	148.0	32.2%	11.3%	△ 3.4%
금	\$/온스	LBMA	655	805	922	976	49.0%	21.2%	5.8%
천연고무	엔/kg	TOCOM	271	290	306	292	8.0%	0.8%	△ 4.3%
나프타	달러/톤	C&F	637	860	866	895	40.5%	4.0%	3.4%
펠프	달러/톤	FOEX	671	763	790	800	19.3%	4.9%	1.3%
고철	달러/톤	CIF	340	356	356	356	4.7%	0.0%	0.0%
로이터지수	17개 주요 국제원자재 가중평균지수		2,266	2,557	2,831	2,946	30.0%	15.2%	4.1%

LME : London Metal Exchange

CSCE : Coffee, Sugar & Cocoa Exchange

NYCE : NewYork Cotton Exchange

CBOT : Chicago Board of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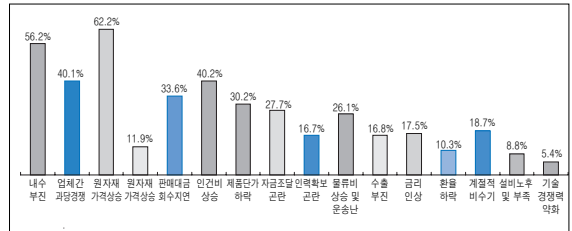
LBMA :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FOEX : Finnish Options Exchange

NYMEX : NewYork Merchant Exchange (자료: 코리아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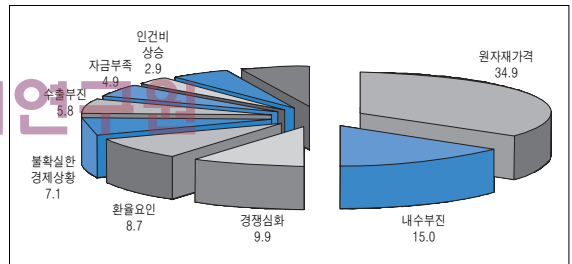
[참고 2] 경영상 애로요인 조사결과

-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요인('08. 2월, 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주: 복수응답 결과이므로 100% 초과

- 제조업 경영애로사항('08.2월, 한은 기업경기조사)



(단위: %, %p)

	07.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1월(A)	2월(B)	차이(B-A)
원자재가격 상승	17.8	16.4	18.8	22.9	24.3	27.4	31.0	34.9	+3.9
내수부진	17.5	18.3	19.2	18.3	16.5	16.9	16.1	15.0	-1.1
경기침화	11.0	10.3	11.0	10.6	10.3	9.4	9.8	9.9	+0.1
환율요인	18.9	16.7	12.7	16.3	19.7	16.2	10.6	8.7	-1.9
불확실한 경제상황	5.8	7.6	8.1	6.9	6.4	6.5	8.0	7.1	-0.9
수출부진	5.0	6.2	6.9	6.0	4.9	5.2	6.5	5.8	-0.7
자금부족	4.8	4.9	5.7	3.8	4.3	5.2	4.3	4.9	+0.6
인건비상승	3.5	3.2	3.9	3.2	3.7	2.8	3.2	2.9	-0.3
기타 ¹⁾	7.1	7.3	6.6	5.6	4.4	7.3	6.3	5.9	-0.4
없음	8.6	9.1	7.1	6.4	5.5	3.1	4.2	4.9	+0.7

주: 1) 생산설비 노후, 노사분규, 정부규제, 계절적 요인 등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 국세청 고위직 성과평가에 국민 신뢰도 반영 -

* 이 자료는 2008년 4월 3일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국세행정의 성과를 국민이 평가한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국세청장과 지방청장간 성과계약 체결식 가져

- 국세청은 2008. 4. 3(목)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 국세청장 등 고위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 국세청 산하 기관장들이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음
 - 이날 체결식에서는 6개 지방청장이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지방청별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함
 - 한편, 이번 성과계약의 내용은 국세청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 6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누적관리하여 향후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임
- ※ 참고 : 성과와 역량 중심의 국세청 평가제도 개요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 최초 도입

- 이날 체결된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였고,
 -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됨
- * 지방청장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
- * 2008년도 신뢰도 지수를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킨다는 도전적 목표를 정하고, 최소목표치(5%P)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함
- 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세금신고·민원·조사 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함
- *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평가
- 이는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가 국세행정 최대의 성과’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가 전제될 때 성실도가 높아져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성과계약 체결식에 이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이 자리에서 6개 지방청장은 지속가능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하였으며,
-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짐

성과 없으면 도태, 성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 조성

- 국세청은 금일 성과계약 체결식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원(383명)에 대해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성과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 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 국세공무원 모두가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임

[참 고] 성과와 역량중심의 국세청 평가제도 개요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쟁원리를 공직에 도입
-연공과 서열 중심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의 틀을 전면 전환-

1 도입배경

-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정부 역량과 경쟁력

이 필요

- 평가를 통해 창의·열정·혁신·경쟁의 문화를 이끌어 내고 '성과 없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조성할 필요
- 세정성과를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

2 성공적 시행기반 마련

- 성공의 4대 요건 구축
 - ① 공정한 게임의 규칙(평가방법)
 - ② 피평가자 경쟁참여 수용
 - ③ 공정한 심판(평가관리)
 - ④ 낙오자 배려
-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타운미팅, 오픈 화상회의, pilot 평가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평가시스템을 고공단 스스로 합의
 - 국세공무원의 변화에 대한 공감과 의지
 -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도약하고 성장하겠다'는 국세청 전 직원의 공감과 변화의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체제 마련

3 평가절차

- ① 연초/보직발령시 국세청장과 성과계약 체결
 - 일대일 면담을 통해 비전·가치를 공유하고, 성과지표 적합성, 고객관점 지표 개발, 도전적 목표 설정 여부 등을 상호 확인
 -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 ② 성과평가, 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평가의 특징

- 입체적 평가: 계약된 성과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 중요도와 본인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
- 합의형 평가: 피평가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한 후, 평가자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확정

- 성장형 평가 : 멘토링(mentoring)과 코칭(coaching)을 통해 피평가자 역량개발과 조직 성과 증진 도모

역량평가의 특징

- 평가요소 : 리더십, 청렴성, 창의와 혁신마인드, 열정과 헌신, 고객지향성, 문제해결 능력
 - 다면평가 : 청장(30%), 상호간(30%), 하급자(40%)
- ③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인사에 활용
- 성과점수(50%)와 역량점수(50%)를 기준으로 3그룹 구분
 - Top 20%: 승진,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성과급 우대
 - Vital 70%: 멘토링을 통해 상위 20% 진입 유도
 - Bottom 10%: 성과증진계획서 제출, 재교육 대상

④ **시행시기** :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2009년 초 인사에 반영

⑤ 기대효과

- 연공과 서열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 중심의 경쟁문화 조성
- 경직된 관료제조직을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통계

한국조세연구원



■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단위: 십억원, %)

연 도	1980		1981		1982		1983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세수입	5,896.9	100.0	7,364.4	100.0	8,529.9	100.0	10,207.4	100.0
1. 소득 및 이익세	1,504.0	25.5	1,958.5	26.6	2,357.0	27.6	2,609.1	25.6
1.1 개인	766	13.0	1,024.5	13.9	1,229.7	14.4	1,404.2	13.8
소득세	661.4	11.2	886.2	12.0	1,005.5	11.8	1,136.1	11.1
동방위세	104.6	1.8	138.3	1.9	162.0	1.9	184.0	1.8
교육세(이자배당분)	-	-	-	-	62.2	0.7	84.1	0.8
소득세 ¹²⁾	-	-	-	-	-	-	-	-
동방위세	-	-	-	-	-	-	-	-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	-
근로소득세	-	-	-	-	-	-	-	-
양도소득세 ¹³⁾	-	-	-	-	-	-	-	-
기타	-	-	-	-	-	-	-	-
1.2 법인	737.8	12.5	934	12.7	1,127.3	13.2	1,204.9	11.8
법인세	485.2	8.2	594.1	8.1	781.3	9.2	863.7	8.5
동방위세	252.6	4.3	339.9	4.6	320.7	3.8	306.3	3.0
교육세(금융보험분)	-	-	-	-	25.3	0.3	34.9	0.3
1.3 기타 소득 및 이익세	0.2	0.0	-	-	-	-	-	-
부당이득세	0.2	0.0	-	-	-	-	-	-
사업소득세 ¹⁴⁾	-	-	-	-	-	-	-	-
부동산소득세 ¹⁵⁾	-	-	-	-	-	-	-	-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2. 사회보장기여금	72.9	1.2	87.2	1.2	109.6	1.3	131.4	1.3
2.1 피고용주부담금	0.3	0.0	0.4	0.0	2.0	0.0	3.2	0.0
보훈특별회계	0.3	0.0	0.4	0.0	-	-	-	-
국민연금기금	-	-	-	-	-	-	-	-
사회복지사업기금	-	-	-	-	-	-	-	-
보훈기금	-	-	-	-	2.0	0.0	3.2	0.0
진폐기금	-	-	-	-	-	-	-	-
2.2 고용주부담금	72.9	1.2	86.8	1.2	107.6	1.3	128.2	1.3
화재보험특별회계	69.4	1.2	81.3	1.1	103.1	1.2	125	1.2
직업훈련촉진기금	3.2	0.1	5.5	0.1	4.5	0.1	3.2	0.0
국민연금기금	-	-	-	-	-	-	-	-
진폐기금	-	-	-	-	-	-	-	-
2.3 개인기업자, 미취업자	-	-	-	-	-	-	-	-
2.4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	-	-	-	-	-	-	-
3. 급여 및 인력세	-	-	-	-	-	-	-	-
4. 재산세	36.5	0.6	77.2	1.0	104.9	1.2	106.0	1.0
4.1 부동산세	-	-	-	-	-	-	-	-
4.2 순자산세	-	-	-	-	-	-	-	-
4.2.1 개인	-	-	-	-	-	-	-	-
4.2.2 법인	-	-	-	-	-	-	-	-
4.3 상속및증여세	11.5	0.2	31.6	0.4	42.7	0.5	50.9	0.5
상속세	2.9	0.0	12.0	0.2	17.9	0.2	18.1	0.2
방위세(상속세분)	1.9	0.0	2.4	0.0	3.7	0.0	3.4	0.0
증여세	6.7	0.1	14.2	0.2	17.6	0.2	24.5	0.2
방위세(증여세분)	-	-	3.0	0.0	3.5	0.0	4.9	0.0
4.4 자산거래세	2.6	0.0	5.4	0.1	4.6	0.1	4.8	0.0
등록세	-	-	-	-	-	-	-	-
방위세(등록세분)	-	-	-	-	-	-	-	-
증권거래세	2.6	0.0	5.4	0.1	4.6	0.1	4.8	0.0
4.5 임시재산세	22.4	0.4	40.2	0.5	57.6	0.7	50.3	0.5
자산재평가세	22.4	0.4	40.2	0.5	57.6	0.7	50.3	0.5
4.6 기타 경상재산세	-	-	-	-	-	-	-	-
5. 재화 및 용역세	3,092.6	52.4	3,814.0	51.8	4,395.2	51.5	5,220.7	51.1
5.1 일반매상세·거래세	1,471.2	24.9	1,804.8	24.5	2,094.4	24.6	2,559.3	25.1
영업세	-	-	-	-	-	-	-	-
부가가치세	1,471.2	24.9	1,804.8	24.5	2,094.4	24.6	2,559.3	25.1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1984		1985		1986		1987		1988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1,077.3	100.0	12,105.1	100.0	13,882.2	100.0	16,689.7	100.0	20,389.4	100.0
2,866.8	25.9	3,474.6	28.7	3,967.6	28.6	5,295.4	31.7	6,844.1	33.6
1,522.2	13.7	1,845.0	15.2	2,236.4	16.1	2,856.8	17.1	3,681.3	18.1
1,229.1	11.1	1,481.6	12.2	1,784.6	12.9	2,321.0	13.9	2,964.1	14.5
209.2	1.9	259.6	2.1	315.0	2.3	373.7	2.2	515.4	2.5
83.9	0.8	103.6	0.9	136.8	1.0	162.1	1.0	201.8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4.6	12.1	1,629.7	13.5	1,731.2	12.5	2,438.6	14.6	3,162.8	15.5
923.5	8.3	1,126.7	9.3	1,191.4	8.6	1,682.4	10.1	2,247.4	11.0
377	3.4	447.5	3.7	474.3	3.4	694.4	4.2	838.7	4.1
44.1	0.4	55.5	0.5	65.5	0.5	61.8	0.4	76.7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4	1.4	207.1	1.7	249.4	1.8	314.1	1.9	863.0	4.2
5.7	0.1	4.3	0.0	5.4	0.0	6.7	0.0	266.5	1.3
-	-	-	-	-	-	-	-	-	-
-	-	-	-	-	-	-	-	254.4	1.2
-	-	-	-	-	-	-	-	3.3	0.0
5.7	0.1	4.3	0.0	5.4	0.0	6.7	0.0	8.8	0.0
-	-	-	-	-	-	-	-	-	-
151.6	1.4	202.8	1.7	244	1.8	307.4	1.8	596.5	2.9
147.9	1.3	193.2	1.6	231.4	1.7	295.2	1.8	325	1.6
3.7	0.0	9.6	0.1	12.6	0.1	12.2	0.1	12.6	0.1
-	-	-	-	-	-	-	-	254.4	1.2
-	-	-	-	-	-	-	-	4.5	0.0
-	-	-	-	-	-	-	-	-	-
-	-	-	-	-	-	-	-	-	-
97.8	0.9	80.1	0.7	102.3	0.7	175.6	1.1	413.0	2.0
-	-	-	-	-	-	-	-	-	-
-	-	-	-	-	-	-	-	-	-
56.3	0.5	56.1	0.5	77.3	0.6	83.7	0.5	130.3	0.6
20.0	0.2	17.8	0.1	33.4	0.2	32.7	0.2	36.0	0.2
3.8	0.0	3.9	0.0	6.7	0.0	6.6	0.0	6.9	0.0
27.1	0.2	28.6	0.2	30.9	0.2	36.9	0.2	73.2	0.4
5.4	0.0	5.8	0.0	6.3	0.0	7.5	0.0	14.2	0.1
6.5	0.1	7.3	0.1	18.9	0.1	78.4	0.5	250	1.2
-	-	-	-	-	-	-	-	-	-
-	-	-	-	-	-	-	-	-	-
6.5	0.1	7.3	0.1	18.9	0.1	78.4	0.5	250	1.2
35.0	0.3	16.7	0.1	6.1	0.0	13.5	0.1	32.7	0.2
35.0	0.3	16.7	0.1	6.1	0.0	13.5	0.1	32.7	0.2
-	-	-	-	-	-	-	-	-	-
5,629.3	50.8	5,933.6	49.0	6,708.6	48.3	7,242.9	43.4	8,410.8	41.3
2,704.3	24.4	2,901.2	24.0	3,272.2	23.6	3,605.5	21.6	4,205.2	20.6
-	-	-	-	-	-	-	-	-	-
2,704.6	24.4	2,901.2	24.0	3,272.2	23.6	3,605.5	21.6	4,205.2	20.6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1989		1990		1991		199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세수입	22,393.6	100.0	28,362.6	100.0	32,195.5	100.0	37,751.4	100.0
1. 소득 및 이익세	8,863.8	39.6	10,643.5	37.5	11,235.2	34.9	14,071.2	37.3
1.1 개인	4,490.3	20.1	5,986.0	21.1	6,459.4	20.1	8,008.4	21.2
소득세	3,556.9	15.9	4,723.1	16.7	6,459.4	20.1	8,008.4	21.2
동방위세	690.9	3.1	937.6	3.3	-	-	-	-
교육세(이자배당분)	242.6	1.1	325.3	1.1	-	-	-	-
소득세 ¹²⁾	-	-	-	-	-	-	-	-
동방위세	-	-	-	-	-	-	-	-
배당및이자소득세	-	-	-	-	-	-	-	-
근로소득세	-	-	-	-	-	-	-	-
양도소득세 ¹³⁾	-	-	-	-	-	-	-	-
기타	-	-	-	-	-	-	-	-
1.2 법인	4,373.4	19.5	4,657.5	16.4	4,585.5	14.2	5,941.1	15.7
법인세	3,107.9	13.9	3,226.1	11.4	4,585.5	14.2	5,941.1	15.7
동방위세	1,177.0	5.3	1,323.4	4.7	-	-	-	-
교육세(금융보험분)	88.5	0.4	108	0.4	-	-	-	-
1.3 기타 소득 및 이익세	-	-	-	-	190.3	0.6	121.8	0.3
부당이득세	-	-	-	-	95.2	0.3	121.8	0.3
사업소득세 ¹⁴⁾	-	-	-	-	-	-	-	-
부동산소득세 ¹⁵⁾	-	-	-	-	-	-	-	-
토지조과이득세	-	-	-	-	95.1	0.3	-	-
2. 사회보장기여금	1,112.4	5.0	1,450.5	5.1	1,798.3	5.6	2,417.1	6.4
2.1 피고용주부담금	347.1	1.5	440.9	1.6	516.5	1.6	634.8	1.7
보훈특별회계	-	-	-	-	-	-	-	-
국민연금기금	333.7	1.5	429.5	1.5	500.7	1.6	-	-
사회복지사업기금	3.1	0.0	-	-	-	-	-	-
보훈기금	10.3	0.0	11.4	0.0	15.8	0.0	-	-
진폐기금	-	-	-	-	-	-	-	-
2.2 고용주부담금	765.3	3.4	1,009.6	3.6	1,281.8	4.0	1,782.3	4.7
화재보험특별회계	410.6	1.8	550.3	1.9	720.9	2.2	-	-
직업훈련촉진기금	16.0	0.1	29.4	0.1	60.2	0.2	-	-
국민연금기금	333.7	1.5	429.5	1.5	500.7	1.6	-	-
진폐기금	5.0	0.0	-	-	-	-	-	-
2.3 개인기업자, 미취업자	-	-	-	-	-	-	-	-
2.4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	-	-	-	-	-	-	-
3. 급여 및 인력세	-	-	-	-	-	-	-	-
4. 재산세	676.7	3.0	673.9	2.4	521.4	1.6	668.0	1.8
4.1 부동산세	-	-	-	-	-	-	-	-
4.2 순자산세	-	-	-	-	-	-	-	-
4.2.1 개인	-	-	-	-	-	-	-	-
4.2.2 법인	-	-	-	-	-	-	-	-
4.3 상속및증여세	171.5	0.8	354.6	1.3	326.2	1.0	433.3	1.1
상속세	39.5	0.2	71.0	0.3	104.4	0.3	175.0	0.5
방위세(상속세분)	8.3	0.0	14.5	0.1	-	-	-	-
증여세	103.5	0.5	224.9	0.8	221.8	0.7	258.3	0.7
방위세(증여세분)	20.2	0.1	44.2	0.2	-	-	-	-
4.4 자산거래세	415.5	1.9	224	0.8	129.3	0.4	165.8	0.4
등록세	-	-	-	-	-	-	-	-
방위세(등록세분)	-	-	-	-	-	-	-	-
증권거래세	415.5	1.9	224.0	0.8	129.3	0.4	165.8	0.4
4.5 임시재산세	89.7	0.4	95.3	0.3	65.9	0.2	68.9	0.2
자산재평가세	89.7	0.4	95.3	0.3	65.9	0.2	68.9	0.2
4.6 기타 경상재산세	-	-	-	-	-	-	-	-
5. 재화 및 용역세	8,051.7	36.0	10,880.6	38.4	11,955.9	37.1	14,834.4	39.3
5.1 일반매상세·거래세	5,260.2	23.5	6,964.4	24.6	8,252.6	25.6	10,076.3	26.7
영업세	-	-	-	-	-	-	-	-
부가가치세	5,260.2	23.5	6,964.4	24.6	8,252.6	25.6	10,076.3	26.7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43,547.9	100.0	51,836.8	100.0	62,209.8	100.0	72,835.6	100.0	78,433.8	100.0
15,647.8	35.9	18,651.4	36.0	22,308.8	35.9	24,136.7	33.1	24,291.7	31.0
9,462.9	21.7	11,207.7	21.6	13,618.2	21.9	14,766.9	20.3	14,867.9	19.0
9,462.9	21.7	11,207.7	21.6	13,618.2	21.9	14,766.9	20.3	14,867.9	1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62.3	13.5	7,387.6	14.3	8,662.6	13.9	9,356.1	12.8	9,424.7	12.0
5,862.3	13.5	7,387.6	14.3	8,662.6	13.9	9,356.1	12.8	9,424.7	12.0
-	-	-	-	-	-	-	-	-	-
322.6	0.7	56.1	0.1	28	0.0	13.7	0.0	-0.8	0.0
-	-	-	-	-	-	-	-	-	-
-	-	-	-	-	-	-	-	-	-
322.6	0.7	56.1	0.1	28.0	0.0	13.7	0.0	-0.8	0.0
4,149.6	9.5	4,575.1	8.8	5,435.3	8.7	7,425.4	10.2	8,506.2	10.8
1,394.1	3.2	1,694.6	3.3	2,159.8	3.5	2,804.6	3.9	4,177.9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5.5	6.3	2,880.5	5.6	3,275.5	5.3	4,620.8	6.3	4,328.3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2.6	2.5	1,677.8	3.2	1,621.1	2.6	1,472.8	2.0	1,590.2	2.0
-	-	-	-	-	-	-	-	-	-
-	-	-	-	-	-	-	-	-	-
667.2	1.5	907.4	1.8	1,029.4	1.7	966.5	1.3	1,161.1	1.5
346.4	0.8	523.6	1.0	605.6	1.0	565.8	0.8	604.6	0.8
-	-	-	-	423.7	0.7	-	-	-	-
320.8	0.7	383.8	0.7	-	-	400.7	0.6	556.5	0.7
-	-	-	-	-	-	-	-	-	-
306.9	0.7	684	1.3	502.6	0.8	289.6	0.4	261.9	0.3
-	-	-	-	-	-	-	-	-	-
-	-	-	-	-	-	-	-	-	-
306.9	0.7	684	1.3	502.6	0.8	289.6	0.4	261.9	0.3
98.5	0.2	86.4	0.2	89.1	0.1	216.7	0.3	167.2	0.2
98.5	0.2	86.4	0.2	89.1	0.1	216.7	0.3	167.2	0.2
-	-	-	-	-	-	-	-	-	-
17,061.7	39.2	19,965.2	38.5	22,993.3	37.0	27,477.6	37.7	30,649.9	39.1
11,687.5	26.8	13,058.0	25.2	14,636.9	23.5	16,789.5	23.1	19,488.0	24.8
-	-	-	-	-	-	-	-	-	-
11,687.5	26.8	13,058.0	25.2	14,636.9	23.5	16,789.5	23.1	19,488.0	24.8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세수입	78,310.0	100.0	87,666.0	100.0	107,732.6	100.0	113,331.2	100.0
1. 소득 및 이익세	27,974.9	35.7	25,220.0	28.8	35,387.4	32.8	35,638.0	31.4
1.1 개인	17,194.0	22.0	15,854.6	18.1	17,508.9	16.3	18,662.9	16.5
소득세	17,194.0	22.0	15,854.6	18.1	17,508.9	16.3	18,662.9	16.5
동방위세								
교육세(이자배당분)								
소득세 ¹²⁾								
동방위세								
배당및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¹³⁾								
기타								
1.2 법인	10,775.8	13.8	9,365.4	10.7	17,878.4	16.6	16,975.1	15.0
법인세	10,775.8	13.8	9,365.4	10.7	17,878.4	16.6	16,975.1	15.0
동방위세								
교육세(금융보험분)								
1.3 기타 소득 및 이익세	5.1	0.0	-	-	-	-	-	-
부당이득세	-	-	-	-	-	-	-	-
사업소득세 ¹⁴⁾								
부동산소득세 ¹⁵⁾								
토지초과이득세	5.1	0.0	-	-	-	-	-	-
2. 사회보장기여금	10,512.2	13.4	12,008.0	13.7	14,797.9	13.7	17,538.3	15.5
2.1 피고용주부담금	4,326.6	5.5	4,186.1	4.8	6,943.0	6.4	8,280.1	7.3
보훈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보훈기금								
진폐기금								
2.2 고용주부담금	6,185.7	7.9	7,821.9	8.9	7,854.9	7.3	9,258.2	8.2
화재보험특별회계								
직업훈련축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진폐기금								
2.3 개인기업자, 미취업자								
2.4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3. 급여 및 인력세								
4. 재산세	1379.3	1.8	3,272.2	3.7	4,262.0	4.0	1,919.8	1.7
4.1 부동산세								
4.2 순자산세								
4.2.1 개인								
4.2.2 법인								
4.3 상속및증여세	679.6	0.9	901.2	1.0	988.9	0.9	948.4	0.8
상속세	309.5	0.4	480.7	0.5	448.7	0.4	430.0	0.4
방위세(상속세분)								
증여세	370.1	0.5	420.5	0.5	540.2	0.5	518.4	0.5
방위세(증여세분)								
4.4 자산거래세	242.5	0.3	1,353.7	1.5	2,735.9	2.5	1,797.9	1.6
등록세								
방위세(등록세분)								
증권거래세	242.5	0.3	1,353.7	1.5	2,735.9	2.5	1,797.9	1.6
4.5 임시재산세	457.2	0.6	1,017.3	1.2	537.2	0.5	173.5	0.2
자산재평가세	457.2	0.6	1,017.3	1.2	537.2	0.5	173.5	0.2
4.6 기타 경상재산세								
5. 재화 및 용역세	27,158.6	34.7	33,607.4	38.3	38,020.1	35.3	43,817.6	38.7
5.1 일반매상세·거래세	15,706.8	20.1	20,369.0	23.2	23,212.0	21.5	25,834.7	22.8
영업세								
부가가치세	15,706.8	20.1	20,369.0	23.2	23,212.0	21.5	25,834.7	22.8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23,690.3	100.0	135,367.2	100.0	140,643.2	100.0	152,371.1	100.0	165,358.9	100.0
38,403.6	31.0	46,420.0	34.3	48,112.3	34.2	54,456.0	35.7	60,366.6	36.5
19,160.5	15.5	20,787.3	15.4	23,434.0	16.7	24,650.5	16.2	31,004.3	18.7
19,160.5	15.5	20,787.3	15.4	21,600.5	15.4	24,650.5	16.2	31,004.3	18.7
19,243.1	15.6	25,632.7	18.9	24,678.3	17.5	29,805.5	19.6	29,362.2	17.8
19,243.1	15.6	25,632.7	18.9	24,678.3	17.5	29,805.5	19.6	29,362.2	17.8
	0.0		0.0		0.0		-		-
	-		-		-		-		-
	0.0		0.0		0.0		-		-
19,722.6	15.9	20,703.0	15.3	22,847.5	16.2	24,905.3	16.3	27,314.6	16.5
9,530.2	7.7	10,178.3	7.5	10,971.7	7.8	11,800.8	7.7	12,731.6	7.7
10,192.4	8.2	10,524.7	7.8	11,875.8	8.4	13,104.5	8.6	14,582.9	8.8
2,893.9	2.3	2,921.1	2.2	2,996.2	2.1	4,683.0	3.1	6,280.9	3.8
						441.3	0.3	1,327.5	0.8
856.2	0.7	1,315.1	1.0	1,708.2	1.2	1,872.8	1.2	2,389.3	1.4
397.8	0.3	485.3	0.4	588.3	0.4	702.0	0.5	867.7	0.5
458.3	0.4	829.8	0.6	1,119.9	0.8	1,170.9	0.8	1,521.6	0.9
2,035.8	1.6	1,606.5	1.2	1,301.6	0.9	2,370.5	1.6	2,525.7	1.5
2,035.8	1.6	1,606.5	1.2	1,301.6	0.9	2,370.5	1.6	2,525.7	1.5
1.9	0.0	-0.4	0.0	-13.7	0.0	-1.7	0.0	38.5	0.0
1.9	0.0	-0.4	0.0	-13.7	0.0	-1.7	0.0	38.5	0.0
48,047.3	38.8	50,906.3	37.6	51,800.3	36.8	53,400.7	35.0	54,996.2	33.3
31,608.8	25.6	33,447.0	24.7	34,571.8	24.6	36,118.6	23.7	38,092.9	23.0
31,608.8	25.6	33,447.0	24.7	34,571.8	24.6	36,118.6	23.7	38,092.9	23.0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1980		1981		1982		1983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5.2 선별재화세	1,028.1	17.4	1,218.0	16.5	1,288.7	15.1	1,516.4	14.9
물품세	-	-	-	-	-	-	-	-
방위세(물품세분)	-	-	-	-	-	-	-	-
주세	297.7	5.0	374.8	5.1	394.7	4.6	441	4.3
방위세(주세분)	77.8	1.3	88.9	1.2	95.5	1.1	108.7	1.1
교육세(주세분)	-	-	-	-	27.5	0.3	35.3	0.3
직물류세	-	-	-	-	-	-	-	-
유류세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특별소비세	582.5	9.9	665.2	9.0	664.9	7.8	793.3	7.8
방위세	70.1	1.2	89.1	1.2	106.1	1.2	138.1	1.4
교통세	-	-	-	-	-	-	-	-
교육세(특소비분)	-	-	-	-	-	-	-	-
5.3 전매익세	510.0	8.6	680.0	9.2	842.8	9.9	938.7	9.2
전매익세	510.0	8.6	680.0	9.2	760	8.9	830.0	8.1
교육세(담배판매분)	-	-	-	-	82.8	1.0	108.7	1.1
5.4 선별용역세	83.3	1.4	111.2	1.5	169.3	2.0	206.3	2.0
전화세	50.0	0.8	66.7	0.9	101.6	1.2	123.8	1.2
방위세(전화세분)	33.3	0.6	44.5	0.6	67.7	0.8	82.5	0.8
유흥음식세	-	-	-	-	-	-	-	-
방위세(유흥음식세분)	-	-	-	-	-	-	-	-
교통세	-	-	-	-	-	-	-	-
입장세	-	-	-	-	-	-	-	-
방위세	-	-	-	-	-	-	-	-
5.5 재산이용영업활동허가세	-	-	-	-	-	-	-	-
영업허가세	-	-	-	-	-	-	-	-
차량세	-	-	-	-	-	-	-	-
기타	-	-	-	-	-	-	-	-
5.6 기타 재화 및 용역세	-	-	-	-	-	-	-	-
6. 국제무역거래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6.1 수입관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6.1.1 관세	1,013.6	17.2	1,189.8	16.2	1,316.4	15.4	1,798.4	17.6
관세	782.3	12.9	880.3	12.0	1,102.6	12.9	1,463.2	14.3
방위세(관세분)	247.5	4.2	299.2	4.1	303.8	3.6	335.2	3.3
특별관세	-	-	-	-	-	-	-	-
교육세	-	-	-	-	-	-	-	-
과년도수입	3.8	0.1	10.3	0.1	-	-	-	-
6.1.2 기타수입부과금	-	-	-	-	-	-	-	-
톤세	-	-	-	-	-	-	-	-
6.2 수출관세	-	-	-	-	-	-	-	-
6.3 수출전매이익세	-	-	-	-	-	-	-	-
6.4 외환거래이익세	-	-	-	-	-	-	-	-
6.5 외환세	-	-	-	-	-	-	-	-
6.6 기타 무역거래세	-	-	-	-	-	-	-	-
7. 기타 조세	177.3	3.0	237.3	3.2	246.8	2.9	341.8	3.3
7.1 인두세	-	-	-	-	-	-	-	-
7.2 인지세	33.9	0.6	49.9	0.7	54.2	0.6	64.2	0.6
인지세	33.9	0.6	49.9	0.7	54.2	0.6	64.2	0.6
7.3 기타	143.4	2.4	188	2.6	192.6	2.3	277.6	2.7
과년도수입	59.1	1.0	82.6	1.1	56.4	0.7	109.3	1.1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3.1	0.1	1.2	0.0	1.8	0.0	1.5	0.0
기타 내국세	-	-	-	-	-	-	-	-
방위세(내국세분)	-	-	5.8	0.1	7.0	0.1	11.2	0.1
방위세(지방세분)	64.9	1.1	79.1	1.1	103.6	1.2	130.3	1.3
가산금	16.3	0.3	19.3	0.3	23.8	0.3	25.3	0.2
교육세 ⁴⁾	-	-	-	-	-	-	-	-
기타지방양여세	-	-	-	-	-	-	-	-
지방교육양여세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1989		1990		1991		199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5.2 선별재화세	2,666.2	11.9	3,602.3	12.7	3,391.9	10.5	4,397.7	11.6
물품세	-	-	-	-	-	-	-	-
방위세(물품세분)	-	-	-	-	-	-	-	-
주세	893	4.0	1,022.4	3.6	1,145.4	3.6	1,329.1	3.5
방위세(주세분)	221.7	1.0	250.5	0.9	-	-	-	-
교육세(주세분)	71.3	0.3	80.6	0.3	-	-	-	-
직물류세	-	-	-	-	-	-	-	-
유류세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특별소비세	1,257.0	5.6	1,911.8	6.7	2,246.5	7.0	3,068.6	8.1
방위세	-	-	-	-	-	-	-	-
교통세	223.2	1.0	337.0	1.2	-	-	-	-
교육세(특소세분)	-	-	-	-	-	-	-	-
5.3 전매익세	17.3	0.1	-	-	-	-	-	-
전매익세	1.5	0.0	-	-	-	-	-	-
교육세(담배판매분)	15.8	0.1	-	-	-	-	-	-
5.4 선별용역세	308.0	1.4	313.8	1.1	311.4	1.0	360.4	1.0
전화세	237.4	1.1	261.5	0.9	311.4	1.0	361.4	1.0
방위세(전화세분)	70.6	0.3	52.3	0.2	-	-	-	-
유흥음식세	-	-	-	-	-	-	-	-
방위세(유흥음식세분)	-	-	-	-	-	-	-	-
교통세	-	-	-	-	-	-	-	-
입장세	-	-	-	-	-	-	-	-
방위세	-	-	-	-	-	-	-	-
5.5 재산이용영업활동허가세	-	-	-	-	-	-	-	-
영업허가세	-	-	-	-	-	-	-	-
차량세	-	-	-	-	-	-	-	-
기타	1950.2	16.1	2,349.1	16.9	-	-	-	-
5.6 기타 재화 및 용역세	2,349.1	16.9	3,204.8	19.2	-	-	-	-
6. 국제무역거래세	3,204.8	19.2	3,167.8	15.5	3,294.0	10.2	3,128.5	8.3
6.1 수입관세	2,573.6	12.6	2,117.7	9.5	3,294.0	10.2	3,128.5	8.3
6.1.1 관세	654.4	2.9	-	-	3,294.0	10.2	3,118.8	8.3
관세	-	-	-	-	3,398.2	10.6	3,118.8	8.3
방위세(관세분)	217.4	1.6	313.3	1.9	△141.5	0.4	△24.7	0.1
특별관세	-	-	-	-	-	-	-	-
교육세	-	-	-	-	-	-	-	-
과년도수입	-	-	-	-	37.3	0.1	34.4	0.1
6.1.2 기타수입부과금	-	-	-	-	-	-	-	-
톤세	-	-	-	-	-	-	-	-
6.2 수출관세	-	-	-	-	-	-	-	-
6.3 수출전매이익세	690.7	3.4	717.0	3.2	-	-	-	-
6.4 외환거래이익세	-	-	75.7	0.6	-	-	-	-
6.5 외환세	75.7	0.6	83.5	0.6	-	-	-	-
6.6 기타 무역거래세	421.7	3.0	357.1	2.1	-	-	-	-
7. 기타 조세	89.8	0.5	213.8	1.0	3,390.7	10.5	2,632.3	7
7.1 인두세	-	-	-	-	-	-	-	-
7.2 인지세	-	-	9.8	0.1	224.2	0.7	215	0.6
인지세	155.6	1.3	189.1	1.4	224.2	0.7	215	0.6
7.3 기타	26.4	0.2	31.9	0.2	3,166.5	9.8	2,417.3	6.4
과년도수입	-	-	-	-	146.8	0.5	291.5	0.8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	-	-	-	-	-	-	-
기타 내국세	-	-	-	-	-	-	-	-
방위세(내국세분)	-	-	-	-	5.7	0	-	-
방위세(지방세분)	-	-	-	-	1,404.5	4.4	2,009.9	5.3
가산금	-	-	-	-	82.6	0.3	115.9	0.3
교육세 ⁴⁾	-	-	-	-	1,526.9	4.7	-	-
기타지방양여세	-	-	-	-	-	-	-	-
지방교육양여세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4,974.5	11.4	6,448.5	12.4	7,813.4	12.6	10,027.1	13.8	10,373.3	13.2
-	-	-	-	-	-	-	-	-	-
1,367.6	3.1	1,545.8	3.0	1,824.5	2.9	2,083.9	2.9	1,789.8	2.3
-	-	-	-	-	-	-	-	-	-
-	-	-	-	-	-	-	-	-	-
3,606.9	8.3	2,445.6	4.7	2,617.1	4.2	3,119.3	4.3	3,036.4	3.9
-	-	-	-	-	-	-	-	-	-
-	-	2,457.1	4.7	3,371.8	5.4	4,823.9	6.6	5,547.1	7.1
-	-	-	-	-	-	-	-	-	-
-	-	-	-	-	-	-	-	-	-
399.7	0.9	458.7	0.9	543.1	0.9	661	0.9	788.6	1.0
399.7	0.9	458.7	0.9	543.1	0.9	661	0.9	788.6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85.2	6.6	3,452.8	6.7	4,633.2	7.4	5,309.5	7.3	5,797.6	7.4
2,883.9	6.6	3,452.8	6.7	4,633.2	7.4	5,309.5	7.3	5,797.6	7.4
2,883.9	6.6	3,452.8	6.7	4,633.2	7.4	5,309.5	7.3	5,797.6	7.4
2,885.9	6.6	3,448.9	6.7	4,633.2	7.4	5,309.5	7.3	5,797.6	7.4
△2.0	0.0	3.9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0.9	6.3	3,514.5	6.8	5,218.1	8.4	6,563.7	9.0	7,598.1	9.7
-	-	-	-	-	-	-	-	-	-
242.6	0.6	275.3	0.5	319.8	0.5	356	0.5	390.1	0.5
242.6	0.6	275.3	0.5	-	-	356	0.5	390.1	0.5
2,488.3	5.7	3,239.2	6.2	4,898.3	7.9	6,207.7	8.5	7,208.0	9.2
149.8	0.3	336.4	0.6	508.7	0.8	626.2	0.9	778.2	1.0
-	-	-	-	-	-	-	-	-	-
123.2	0.3	72.8	0.1	63.1	0.1	14.3	0.0	-8.5	0.0
-	-	-	-	-	-	-	-	-	-
136.4	0.3	-	-	-	-	-	-	-	-
2,078.9	4.8	2,539.6	4.9	2,993.1	4.8	4,081.3	5.6	5,398.5	6.9
-	-	-	-	2.0	0.0	-	-	-	-
-	-	290.4	0.6	1,331.3	2.1	1,486.0	2.0	1,039.8	1.3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5.2 선별재화세	10,529.9	13.4	12,046.9	13.7	13,350.7	12.4	16,636.7	14.7
물품세								
방위세(물품세분)								
주세	1,814.5	2.3	2,078.0	2.4	1,962.5	1.8	2,468.2	2.2
방위세(주세분)								
교육세(주세분)								
직물류세								
유류세								
전기가스세								
특별소비세	2,211.5	2.8	2,713.3	3.1	2,984.6	2.8	3,633.6	3.2
방위세								
교통세	6,503.9	8.3	7,255.7	8.3	8,403.6	7.8	10,534.9	9.3
교육세(특소세분)								
5.3 전매익세								
전매익세								
교육세(담배판매분)								
5.4 선별용역세	921.9	1.2	1,191.4	1.4	1,457.4	1.4	1,346.2	1.2
전화세	921.9	1.2	1,191.4	1.4	1,457.4	1.4	1,346.2	1.2
방위세(전화세분)								
유흥음식세								
방위세(유흥음식세분)								
교통세								
입장세								
방위세								
5.5 재산이용영업활동허가세								
영업허가세								
차량세								
기타								
5.6 기타 재화 및 용역세								
6. 국제무역거래세	3,836.0	4.9	4,687.3	5.3	5,799.7	5.4	5,923.4	5.2
6.1 수입관세	3,836.0	4.9	4,687.3	5.3	5,799.7	5.4	5,923.4	5.2
6.1.1 관세	3,836.0	4.9	4,687.3	5.3	5,799.7	5.4	5,923.4	5.2
관세	3,836.0	4.9	4,687.3	5.3	5,799.7	5.4	5,923.4	5.2
방위세(관세분)								
특별관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6.1.2 기타수입부과금								
톤세								
6.2 수출관세								
6.3 수출전매이익세								
6.4 외환거래이익세								
6.5 외환세								
6.6 기타 무역거래세								
7. 기타 조세	7,448.9	9.5	8,871.2	10.1	9,465.5	8.8	7,494.1	6.6
7.1 인두세								
7.2 인지세	303.5	0.4	370.9	0.4	387.6	0.4	476.6	0.4
인지세	303.5	0.4	370.9	0.4	387.6	0.4	476.6	0.4
7.3 기타	7,145.4	9.1	8,500.2	9.7	9,077.9	8.4	7,017.5	6.2
과년도수입	925.4	1.2	1,177.0	1.3	1,452.5	1.3	1,707.6	1.5
과년도수입(지방세분방위세)								
기타 내국세								
방위세(내국세분)	1.4	0.0	1.6	0.0	-2.9	0.0	-10	0.0
방위세(지방세분)								
가산금								
교육세 ⁴⁾	5,203.1	6.6	5,298.1	6.0	700	0.6	3,785.2	3.3
기타지방양여세								
지방교육양여세								
농어촌특별세	1,015.4	1.3	2,023.4	2.3	6,928.4	6.4	1,525.7	1.3

한국조세연구원

1.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계속>

(단위: 십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6,420.7	13.3	17,457.9	12.9	17,227.9	12.2	17,282.4	11.3	16,902.8	10.2
2,655.0	2.1	2,726.2	2.0	2,588.8	1.8	2,595.1	1.7	2,405.6	1.5
4,288.2	3.5	4,733.0	3.5	4,574.0	3.3	4,399.5	2.9	4,903.5	3.0
9,477.5	7.7	9,998.7	7.4	10,065.1	7.2	10,287.8	6.8	9,593.8	5.8
17.8	0.0	1.4	0.0	0.6	0.0	-0.3	0.0	0.5	0.0
17.8	0.0	1.4	0.0	0.6	0.0	-0.3	0.0	0.5	0.0
6,601.3	5.3	6,847.3	5.1	6,796.5	4.8	6,317.7	4.1	6,858.4	4.1
6,601.3	5.3	6,847.3	5.1	6,796.5	4.8	6,317.7	4.1	6,858.4	4.1
6,601.3	5.3	6,847.3	5.1	6,796.5	4.8	6,317.7	4.1	6,858.4	4.1
6,601.3	5.3	6,847.3	5.1	6,796.5	4.8	6,317.7	4.1	6,858.4	4.1
8,021.7	6.5	7,569.5	5.6	8,090.4	5.8	8,608.3	5.6	9,542.2	5.8
482.2	0.4	456.5	0.3	435.8	0.3	500	0.3	588	0.4
482.2	0.4	456.5	0.3	435.8	0.3	500	0.3	588	0.4
7,539.5	6.1	7,113.0	5.3	7,654.6	5.4	8,108.3	5.3	8,954.2	5.4
1,873.8	1.5	1,518.1	1.1	1,990.8	1.4	2,117.2	1.4	2,569.1	1.6
0.8	0.0	2,256	0.0	60	0.0	-8,551	0.0	0,838	0.0
3,531.6	2.9	3,661.0	2.7	3,529.5	2.5	3,526.6	2.3	3,424.5	2.1
2,128.9	1.7	1,931.7	1.4	2,071.1	1.5	2,473.0	1.6	2,959.7	1.8

한국조세연구원

- 주: 1) 현행 종합소득세제 실행 이전의 세목
2) 현행 종합소득세제 실행 이전의 부분적 종합소득세
3) 부동산투기억제세 포함
4) 2001년 이전 및 2004년에는 지방교육양여세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육세로 편재됨
1. 2006은 결산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조세연구원 “상대빈곤율도 상승세”

가구주가 일년 내내 취업해 있는 완전취업 근로자 가구도 열 중 한 가구는 지난 2006년 소득이 ‘중위수소득’ (소득 순위가 한가운데인 사람의 소득)의 절반에 못미치는 상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빈곤 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전취업 근로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1998년 3.82%에서 2005년 7.67%, 2006년에는 9.29%로 상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상대빈곤율은 1999년 7.76%에서 2003년 10.45%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2005년 11.0%, 2006년 16.22%로 높아졌다.

성 연구위원은 “2006년의 상대빈곤율은 가계조사 표본에 1인 가구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좀더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게 최근 빈곤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절대빈곤율)은 2001년 3.12%에서 2005년 5.41%, 2006년 7.41%로 높아졌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1999~2004년 사이 가구별 소득을 추적한 결과에선, 상대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거두던 가구의 7~9%가 이듬해에 상대빈곤 가구로 떨어지

고, 빈곤가구 가운데서는 42~54%가 빈곤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신문 4월 8일자〉

세계 상속세 폐지 주장에 정부 “고민되네”

2006년 2,221명 7,575억원에 불과...8월까지 세계개편 검토

지난 4일 대한상회가 상속세 폐지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하면서 상속세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를,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부유층 특혜를 거론하며 이견이 팽팽하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세계실은 상속세 개선을 8월 세계개편방안에 포함시켜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세 폐지=부유층 세금면제라는 여론의 시각이 아무래도 부담스런 눈치다.

현행 국내 상속세제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세액공제 제도	기납부증여세, 외국납부세액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자 수와 금액 미미

상속세는 실제 내는 사람과 세금납부액은 매우 적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06년 납세분을 기준으로 실제 상속세를 낸 사람은 납부사유가 생긴 30만4215명 중 2221명에

불과하다. 1000명당 7명만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가.

또 상속세 납부액은 과세대상 재산가액 4조7363억원 중에 7575억원에 머물러 1조원에도 못 미친다. 이미 작년 3조원에 육박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세금 폐지의 실익이 일부 계층에만 간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상속세 부담자가 받은 재산은 △토지 45.7% △건물 17.6% △유가증권 14.3% △금융자산 16.1% △기타 6.3% 등으로 부동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기획실장은 “기업의 기업승계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범위에서 조건을 달아 (상속세 완화·폐지)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재계-주식, 땅 팔아 세금낼 판

정부는 여기에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 기업상속에 대해선 감면혜택도 내놓은 상황이다. 종전 1억원에 머물렀던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대신 기업상속의 요건을 △동일사업을 15년간 영위할 것 △상속에 신고기한 내 상속인이 해당기업 대표로 취임할 것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을 것 등 공제인정 조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 조치는 2세에서 3세대체제로 전환을 앞둔 대기업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때문에 대부분 국내 대기업은 상속재산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에 달하는 세금을 물 것 인지, 경영권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3월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상무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를 세금으로 현물 납부한 전례가 있다. 당시 납부주식은 시가 3500억원어치로 증여세 납부 사상 최대 규모였다.

만약 이 같은 경영승계가 상속으로 발생할 경우 상속받은 2세나 3세는 세 부담 해결을 위해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 정부-8월 세제개편시 검토대상

재계가 다시 상속세 이슈를 들고 나오자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바빠졌다. 해외 각국이 상속세를 다시 보는 것도 상속세 논의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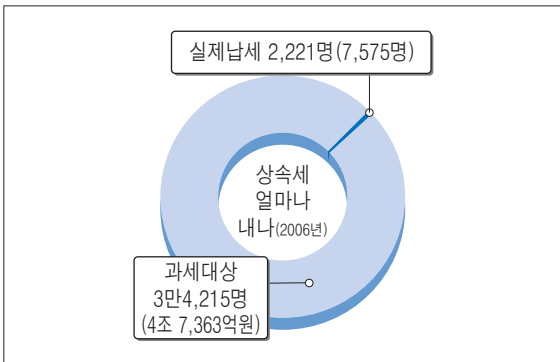
재정부는 일단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질 8월까지 상속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에서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라며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심도있게 고민할 부분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폐지 논의가 주로 재벌 등 대기업 혜택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령 상속세를 없앤다 해도 이는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과세제도를 통해 보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 폐지를 정부의 과세포기로 몰아가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매일경제신문 4월 7일자〉

한국조세연구원



※ 팔호 안은 과세금액. 자료: 국세청

‘경유의 반란’ 휘발유값 턱밑 추격

국제시세 최고치 행진...휘발유값 92% 수준으로 이달안 추월 가능성...정부 “세금 못내려” 난색

일선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맞먹거나 더 비싸질 수도 있게 됐다. 최근 경유의 국제시세가 크게 오른 반면, 휘발유 시세는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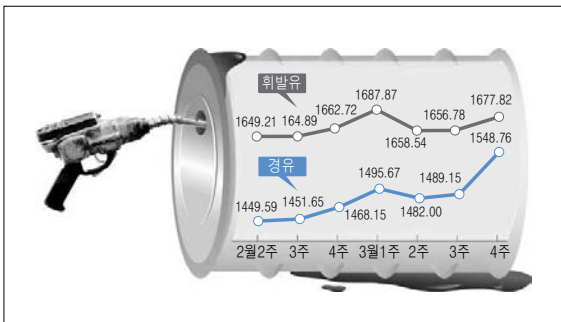
국내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공장 도가격)을 정할 때 싱가포르 등 국제시장의 2~3주 전 거래시세를 반영한다. 국제시장에서 경유값은 지난 3월28일 배럴당 135.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 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이번달 중순쯤에는 경유와 휘발유 값이 비슷하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게 정유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경유의 국제가격을 환율을 고려해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3월 첫째주는 730원, 둘째주와 셋째주는 각각 807원과 852원 정도다. 3월 넷째주 들어 경유값과 환율이 다소 내렸지만 역시 환산가격은 820원에 이른다. 반면 휘발유의 국제가격은 3월 둘째주 694원, 셋째주 689원, 넷째주 685원으로 약간 하락하고 있다. 국내 경유와 휘발유의 리터당 소비자 판매가격 차이는 3월 첫째주 192원이던 것이 점차 줄어 넷째주에는 129.06원에 불과하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유값은 국제시세가 배럴당 120달러대 때 반영가격”이라며 “환율변동이나 시장경쟁 상황을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경유와 휘발유 값이 같아지거나 역전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석유공사

실제 국제 시세로는 경유가 휘발유 값보다 싸며, 국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가격 역시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53원(2월 기준)이 높다. 다만 세율이 달

라 실제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더 비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우에 따라 소비자 가격마저 경유가 휘발유를 앞지르게 된다면 경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에너지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의 비율은 100대 85인데, 이는 진작 무너졌다. 3월 넷째주에는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의 92.3% 수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5%로 한 것은 국제 수준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내 경유 가격을 내리기 위해 세제를 손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세제개편 당시 100대 85를 ‘세금 비중’이 아닌 ‘소비자 가격 비중’으로 정하다보니 국제제품 가격변화에 일일이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도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세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8년 4월 4일자)

인구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

조세연구원 보고서 지적

인구 고령화가 소득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인란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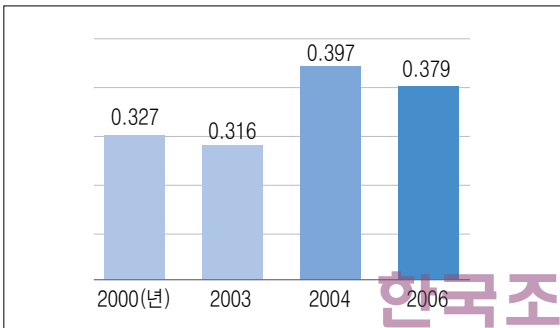
조세연구원은 2일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2006년 도시가계의 소득분배 격차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인구 고령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상승이 전체 소득 불평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3분의 1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요인이란 생산성 격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중 등의 변

화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7년간 연령집단 간 소득 지니 계수 상승폭은 0.02316포인트, 연령집단 내 소득 지니 계수 상승폭은 0.01267포인트로 각각 추정됐다. 전자가 전체 지니계수 변화폭의 3분의 2, 후자가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0~1로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65세 노년층의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이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연령집단을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41개 집단으로 세분화해 연령집단별로 지니 계수를 추정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니 계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6년의 경우 30세와 40세의 지니 계수는 0.263과 0.285인 데 비해 50세와 60세는 0.31과 0.351이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0년 5.1%에서 2005년에는 9.1%로 높아진 데 이어 2020년에는 15.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앞으로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되도록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8년 4월 3일자〉

“공무원 단체교섭, 예산과 분리해야”

조세연구원 “연금개혁등에 노조개입 우려…재정건전성 위협”
“美·日처럼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약할 필요”

현행 공무원 임금교섭제도가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단체교섭을 예산에서 분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도 적절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일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제도’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최근 국가재정법 도입으로 개편된 새 재정 운용체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결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예산 운용과 상충됨으로써 국정 운영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개시된 공무원 단체교섭은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 법률 개정 수반 사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가 개입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임금교섭제도는 5년 단위로 총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물론이고 각 부처가 예산 당국이 부여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임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도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고 단체교섭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예산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연방공무원에게는 임금 교섭과 관련된 일체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은 주로 근무환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영국도 예산과 단체교섭의 부분적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아예 공무원 단체교섭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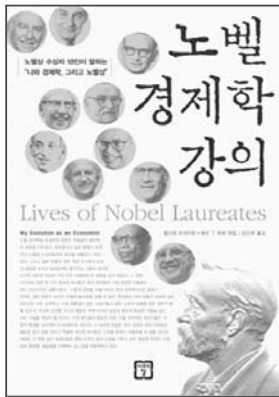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예산-단체 교섭 분리	제도적으로 완전분리	제도적으로 거의분리	부분적 분리 (공무원은 무교섭, 공공 근로자는 교섭)	부분적 분리 (교섭력 제한적)	완전 분리
단체교섭 실질 영향	없음 -법·제도 통해 원천적 배제	낮음 -예산총액, 부처간 배분, 부처운영비 총액에는 영향없음	낮음 -임금교섭 (공공근로자)은 재무부가 제시하는 인상을 상한 이내	낮음 -정부는 교섭의무나 결과 수용의무 없음. 교섭은 예산장관 지정한도 이내	없음 -제도상 원천적 배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독일·프랑스·일본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일부 제약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법으로 공무원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금 교섭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등 중기 예산 운용과 단체교섭의 제도적 분리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적절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2008년 3월 21일자)

한국조세연구원



노벨 경제학 강의

윌리엄 브레이크, 배리 T. 허쉬 지음/김민주 옮김
미래의 창 발행

노벨상 수상자 18인이 말하는 나와 경제학, 그리고 노벨상

미국 샌 안토니오의 트리니티대학교에서 행해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강연 모음집인 이 책은 198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그 당시 제임스 토빈까지 총 7명의 수상자 강연록을 담아 출간한 이후, 제2판에서는 프랑코 모딜리아니와 제임스 뷰캐넌, 로버트 솔로우가 추가되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노벨상 수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제3판에는 다시 윌리엄 사프와 로널드 코스, 더글라스 노스가 수록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4판에는 루카스와 헤크먼 등 5명의 수상자가 더 추가되어 총 18인의 노벨상 수상자 강연록을 담게 되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강연 주제는 '경제학자로서 나의 진화'였다. 이 강연 주제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인생과 경제학 이론에 대해 풀어나갔다. 어떤 학자는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반면에 어떤 학자는 자신의 이론 설명에 초점을 두었다.

18인의 학자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떻게 그들이 경제학에 눈뜨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경제학을 선택한 주된 동기는 현실세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토빈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대공황은 이들을 경제학으로 끌어들이는 동기가 되었다. 케리 베커는 사회의 불평등과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목격한 뒤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스승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강연 시리즈에 나온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시카고대학의 전설적인 교수인 프랭크 나이트와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을 언급하고 있다. 위대한 스승들은 경제학 주변을 표류하고 있던 이들을 경제학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한 가지는 지적 발견과 창의력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시카고대학은 모든 도전과 비판에 열려 있는 '지식의 용광로'로 그런 역할을 자처하였고,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미국 유수의 대학들은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양성하기 위해 최고의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랜드 코퍼레이션과 국립경제연구원(NBER) 등은 경제학자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풍부한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또 이구동성으로, 이들은 '행운'의 역할을 들고 있다. 그들이 경제학을 발견하고, 경제학을 선택하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경제이론을 개발하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탄 모든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간 중간마다 이들은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행운이 작용했는지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 책은 현대 경제사상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심오함을 훌륭하게 전해주고 있다.

한국주세연연구원



한국경제의 도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휴먼앤북스(Human&Books) 발행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2월까지)을 체계적으로 엮은 책으로 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론의 허와 실

제1부 '경제성장과 개혁'에서는 경제성장과 개혁이라는 과제가 과연 국민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과연 7% 성장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값 폭등, 달러 약세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 등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에서 우리 경제가 그러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양적인 성장률이 한국경제의 여러 주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장률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설사 성장률이 달성된다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 성장의 수혜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빈곤문제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빈곤과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과 미국의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정책이 어떠한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시그널

이 책의 2부는 투기와 버블의 세계경제를 논하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 내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김광수연구소는 경고한다. 이런 위기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는 우선 무엇보다도 거품을 빼야 하고 그리고 은행은 투기적 다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대출상환 강화를 통해 과다 대출을 적극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를 보면 서브프라임 문제와 금융동향 분석, 고유가 문제, 달러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온다.

기업 M&A

이 책의 3부는 기업 M&A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업 M&A는 이제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된 시점에서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제 어디서 고단수의 적대적 기업 M&A에 의해 우리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환경과 기업 M&A에 대한 조건을 적시하면서 기업 M&A에 대한 스탠다드한 시각을 던져준다.

재정포럼

2008년 4월호 통권 제14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4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4호(통권 제14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